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는 등 소관 고시(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등 22개)를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조번호	행정규칙 명	개정 내용
제1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명 변경 ○ 문화재 → 국가유산/문화유산,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매장문화재 → 매장유산, 문화재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
제2조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제3조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조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조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	
제7조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제8조	문화재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위탁 지정	
제9조	문화재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제10조	문화재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제11조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12조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3조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제14조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15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 추가	

제16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
제17조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18조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9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0조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1조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2조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나. 오탈자 등의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예산에 기반영 되었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생략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등 22개 문화재청고시 일괄개정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등 22개 문화재청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의 개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를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로 한다.

제1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호가목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관련근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다. 적용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조사지표 및 실기 지표에 대해 고시하는 사항임

별첨 1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를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로 한다.

별첨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사회문화적 가치(20점)의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5점)를 다음과 같이 한다.

무형유산 형태의 지속성 정도(5점)	○ 현재의 무형유산 형태의 지속성 정도	정성
------------------------	-----------------------	----

별첨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전승활동(25점)의 전승활동 실적(10점)의 측정기준란 중 “문화재수리복원”을 “국가유산수리·복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전승활동의 전승활동 실적(25점)의 측정기준란 중 “문화재수리복원”을 “국가유산수리·복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전승활동(15점)의 전승활동 실적(5점)의 측정기준란 중 “문화재수리 복원”을 “국가유산수리·복원”으로 한다.

별첨 2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을 “국가무형유산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으로 한다.

별첨 2 가목 [전통 공연·예술]의 <종묘제례악>의 기호(*) 중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같은 목 [전통 기술] <단청장>의 단청의 예술적·기능적 완성도 및 기능의 숙련도의 문화재 수리·복원 실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산수리·복원 실적	고건축물 등 국가유산수리·복원에 참여한 실적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법의 전통성, 완성도 확인	15
--------------	--	----

별첨 2 가목 [전통 기술] <대목장>의 전통 건축의 예술적·기능적 완성도 및 기능의 숙련도의 문화재 수리·복원 실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산수리·복원 실적	고건축물 등 국가유산수리·복원에 참여한 실적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법의 전통성, 완성도 확인	15
--------------	--	----

별첨 2 가목 [전통 기술] <제와장>의 기와 제작의 예술적·기능적 완성도 및 기능의 숙련도의 문화재 수리·복원 실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산수리·복원 실적	고건축물 등 국가유산수리·복원에 참여한 실적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법의 전통성, 완성도 확인	15
--------------	--	----

별첨 2 가목 [전통 기술] <배첩장>의 배첩의 예술적·기능적 완성도 및 기능의 숙련도의 문화재 수리·보존 실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산수리·보존 실적	국가유산수리·보존에 참여한 실적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법의 전통성, 완성도 확인	15
--------------	---	----

별첨 2 가목 [전통 기술]<불화장>의 불화 제작의 예술적·기능적 완성도 및 기능의 숙련도의 문화재 수리·복원 실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산수리·복원 실적	탱화 등 국가유산수리·복원에 참여한 실적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법의 전통성, 완성도 확인	15
--------------	--	----

별첨 2 가목 [전통 기술]<석장>의 석 조각, 석 구조물의 예술적·기능적 완성도 및 기능의 숙련도의 문화재 수리·보존 실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산수리·보존 실적	국가유산수리·보존 결과물의 전통양식 적합 여부 및 보존성과	15
--------------	----------------------------------	----

별첨 2 가목 [전통 기술]<번와장>의 번와의 예술적·기능적 완성도 및 기능의 숙련도의 문화재 수리·보존 실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산수리·보존 실적	국가유산 등 고건축물 수리·보존 현장의 전통양식 적합 여부 및 보존성과	15
--------------	---	----

제2조(「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의 개정)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2호가목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로 하고, 같은 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호가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호가목 중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목 중 “문화재 보존·관리를”을 “문화유산 보존·관리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호사목 중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을 “관계전문가(문화유산위원)”으로 한다.

제3조(「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의 개정)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을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

무수행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는 문화재수리”를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을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로서 해당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서 해당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전반”을 “국가유산수리 전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해당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 현장의”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문화재수리시방서”를 “국가유산수리시방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란”을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단서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후단 중 “문화재수리기간이”를 “국가유산수리기간이”로,

“문화재수리기간을”을 “국가유산수리기간을”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전단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같은 조 제16호 전단, 같은 조 제18호 전단 및 같은 조 제19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전단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에 나타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 나타난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3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의 계획·설계·발주·감리·문화재수리·사후평가”를 “국가유산수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수리·사후평가”로, “문화재수리 계약”을 “국가유산수리 계약”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문화재수리일정”을 “국가유산수리일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문화재수리방법”을 “국가유산수리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계약조건”을 “국가유산수리계약조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착수”를 “국가유산수리 착수”로, “문화재수리 관련자”를 “국가유산수리 관련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문화재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를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8조 중 “문화재수리시방서, 산출내역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산출내역서,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착수”를 “국가유산수리 착수”로,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문화재수리 관계자”를 “국가유산수리 관계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문화재수리 범위”를 “국가유산수리 범위”로, “문화재수리 전”을 “국가유산수리 전”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문화재수리 관련자 회의)”를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문화재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를 “국가유산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문화재원형의 확인)”을 “(국가유산원형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문화재수리와”를 “국가유산수리와”로, “문화재수리 기록”을 “국가유산수리 기록”으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원형”을 “국가유산원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가목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문화재수리 현황(문화재수리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다목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문

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수리 착수”를 “국가유산수리 착수”로, “문화재수리 과정”을 “국가유산수리 과정”으로, “문화재수리 내용”을 “국가유산수리 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 현황”을 “국가유산수리 현황”으로, “문화재수리 전·중·후”를 “국가유산수리 전·중·후”로, “문화재수리 과정”을 “국가유산수리 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과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법령”을 “국가유산수리법령”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법령”을 “국가유산수리법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 현장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로, “문화재수리 현장 외”를 “국가유산수리 현장 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매장문화재를”을 “매장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1)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하고, 같은 목 (2) 및 같은 호 나목(1)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문화재수리의 추진”을 “국가유산수리의 추진”으로,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국가유산수리의 부실”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하고, 같은 목 (4), (5) 및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진도 관리)”를 “(국가유산수리진도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진도”를 “국가유산수리진도”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한다.

제27조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 원형”을 “국가유산 원형”으로, “문화재

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비”를 “국가유산수리비”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마목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1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12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13과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3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2. 시범시축 계획(필요시)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내용”을 “국가유산수리 내용”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14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15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 16과 같이 한다.

별첨 1을 별지 17과 같이 한다.

별첨 2를 별지 18과 같이 한다.

제4조(「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의 개정)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을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상주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는 문화재수리”를 “상주 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상주문화재감리원”을 “상주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로서 해당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서 해당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전반”을 “국가유산수리 전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해당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 현장의”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문화재수리시방서”를 “국가유산수리시방서”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란”을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단서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5호 전단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같은 조 제19호 전단, 같은 조 제2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2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6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14. “감리기간”이란 감리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수리업자 또는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국가유산수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국가유산수리기간이 포함된 감리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23. “검사”란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 나타난 국가유산수리 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리업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감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리업자가 시행한 국가유산수리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감리원이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의 계획·설계·발

주·감리·문화재수리·사후평가”를 “국가유산수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수리·사후평가”로, “문화재수리 계약”을 “국가유산수리 계약”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문화재수리일정”을 “국가유산수리일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문화재수리방법”을 “국가유산수리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계약조건”을 “국가유산수리계약조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을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상세도면”을 “국가유산수리상세도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착수”를 “국가유산수리

착수”로, “문화재수리 관련자”를 “국가유산수리 관련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문화재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를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시방서, 산출내역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산출내역서,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와”를 “국가유산수리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시방서”를 “국가유산수리시방서”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착수”를 “국가유산수리 착수”로,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문화재수리 관계자”를 “국가유산수리 관계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문화재수리안내판 등의 설치)”를“(국가유산수리안내판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1. 국가유산수리 개요(국가유산수리명, 국가유산수리내용, 국가유산수리기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수리계약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유산수리기간(착수~완료)

제11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수리비”를 “국가유산수리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 예정공정표”를 “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로, “문화재수리 전·후간”을 “국가유산수리 전·후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 전”을 “국가유산수리 전”으로, “문화재수리 대상”을 “국가유산수리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 계약조건”을 “국가유산수리 계약조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한다.

가. 현장대리인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제12조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 범위”를 “국가유산수리 범위”로, “문화재수리 전”을 “국가유산수리 전”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문화재수리비”를 “국가유산수리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문화재수리 관련자 회의)”를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 및 유구의 보호대책”을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대책”으로, “문화재 및 유구의 관람”을 “국가유산 및 유구의 관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수리용”을 “국가유산수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안내판”을 “국가유산수리안내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수리용”을 “국가유산수리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착수”를 “국가유산수리 착수”로, “문화재수리 추진”을 “국가유산수리 추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 및 유구의 보호대책”을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대책”으로, “문화재 및 유구의 관람방안”을 “국가유산 및 유구의 관람방안”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문화재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를 “국가유산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문화재원형의 확인)”을 “(국가유산원형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문화재수리와”를 “국가유산수리와”로, “문화재수리 기록”을 “국가유산수리 기록”으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원형”을 “국가유산원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문화재수리 현황(문화재수리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

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다목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21조제11호 중 “문화재수리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및 제15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중 “문화재 또는”을 “국가유산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제8호, 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

으로, “문화재수리와”를 “국가유산수리와”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수리 착수”를 “국가유산수리 착수”로, “문화재수리 과정”을 “국가유산수리 과정”으로, “문화재수리 내용”을 “국가유산수리 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 현황”을 “국가유산수리 현황”으로, “문화재수리 전·중·후”를 “국가유산수리 전·중·후”로, “문화재수리 과정”을 “국가유산수리 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과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9조제2항제7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

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법령”을 “국가유산수리법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중”을 “국가유산수리 중”으로, “문화재수리계획”을 “국가유산수리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6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법령”을 “국가유산수리법령”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 현장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로, “문화재수리 현장 외”를 “국가유산수리 현장 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문화재수리기간”을 “국가유산수리기간”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매장문화재를”을 “매장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

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1)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으로 하고, 같은 목 (2) 및 같은 호 나목(1)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문화재수리의 추진”을 “국가유산수리의 추진”으로,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국가유산수리의 부실”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하고, 같은 목 (4), (5) 및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가 정해진 문화재수리기간”을 “국가유산수리가 정해진 국가유산수리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 조건”을 “국가유산수리 조건”으로, “문화재수리 또는”을 “국가유산수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기간”을 “국가유산수리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진도 관리)”를 “(국가유산수리진도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진도”를 “국가유산수리진도”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한다.

제42조 중 “문화재수리진도율”을 “국가유산수리진도율”로 한다.

제43조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

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문화재 수리가 중지”를 “국가유산수리가 중지”로, “문화재수리가 중단된”을 “국가유산수리가 중단된”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 원형”을 “국가유산 원형”으로, “문화재 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비”를 “국가유산수리비”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비”를 “국가유산수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 추진 상”을 “국가유산수리 추진 상”으로, “문화재수리 추진에”를 “국가유산수리 추진에”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시행”을 “국가유산수리 시행”으로, “문화재수리 관계자간”을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 관계자”를 “국가유산수리 관계자”로, “문화재수리비”를 “국가유산수리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 시행”을 “국가유산수리 시행”으로, “문화재수리 관계자간”을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간”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6조제2항제2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불합격 문화재수리에 대한 재시행 명령)”을 “(불합격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재시행 명령)”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문화재수리 완료”를 “국가유산수리 완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9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20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21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22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23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24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25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26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27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28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29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30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3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제3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32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작성요령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내용”을 “국가유산수리 내용”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각각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 33과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 34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 35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 36과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 37과 같이 한다.

별첨 1을 별지 38과 같이 한다.

별첨 2를 별지 39와 같이 한다.

제5조(「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의 개정)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을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로서 해당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서 해당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문화재수리 기간”을 “국가유산수리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문화재수리관리관”이란”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이란”으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해당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 현장의”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문화재수리시방서”를 “국가유산수리시방서”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란”을 ““국가유산수리 계약문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단서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후단 중 “문화재수리기간이”를 “국가유산수리기간이”로, “문화재수리기간을”을 “국가유산수리기간을”로, “문화재수리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전단 중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발주자(문화재수리관리관)”를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발주자(국가유산수리관리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문화재수리관리관”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관리관에게, 문화재수리관리관”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게,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전단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문화재수리관리관”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1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 전단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에 나타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 나타난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5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발주자·문화재수리관리관·감리업자·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발주자·국가유산수

리관리관·감리업자·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의 계획·설계·발주·감리·문화재수리·사후평가”를 “국가유산수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수리·사후평가”로, “문화재수리 계약”을 “국가유산수리 계약”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문화재수리일정”을 “국가유산수리일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 착수”를 “국가유산수리 착수”로, “문화재수리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문화재수리방법”을 “국가유산수리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계약조건”을 “국가유산수리계약조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을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 수리상세도면”을 “국가유산수리상세도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수리관리관”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 “문화재수리 시행상태”를 “국가유산수리 시행상태”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문화재수리관리관의 업무범위)”를 “(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의 업무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착수”를 “국가유산수리 착수”로, “문화재수리 관련자”를 “국가유산수리 관련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문화재수리 특성”을 “국가유산수리 특성”으로, “문화재수리관리관으로”를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로, “문화재수리관리관을”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을”로 한다.

제6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관리관은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수리기간”을 “국가유산수리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항 중 “문화재수리관리관”을 각각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문화재수리관리관”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관리관은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6조제16항 중 “문화재수리 관리관”을 “국가유산수리 관리관”으로, “문화재수리와”를 “국가유산수리와”로,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중 “문화재수리관리관”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 “문화재수리와”를 “국가유산수리와”로, “문화재수리 및”을 “국가유산수리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 중 “문화재수리관리관은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 및 제20항 중 “문화재수리관리관”을 각각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문화재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를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수리관리관)”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시방서, 산출내역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산출내역서,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와”를 “국가유산수리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시방서”를 “국가유산수리시방서”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착수”를 “국가유산수리 착수”로,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문화재수리 관계자”를 “국가유산수리 관계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안내판 등의 설치)”를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1. 국가유산수리 개요(국가유산수리명, 국가유산수리내용, 국가유산수리기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수리계약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유산수리기간(착수~완료)

제11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수리비”를 “국가유산수리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 예정공정표”를 “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로, “문화재수리 전·후간”을 “국가유산수리 전·후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 전”을 “국가유산수리 전”으로, “문화재수리 대상”을 “국가유산수리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 계약조건”을 “국가유산수리 계약조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한다.

가. 현장대리인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제12조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범위”를 “국가유산수리 범위”로, “문화재수리 전”을 “국가유산수리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완료”를 “국가유산수리 완료”로, “문화재수리 도중”을 “국가유산수리 도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기간”을 “국가유산수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문화재수리비”를 “국가유산수리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문화재수리 관련자 회의)”를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관련자”를 “국가유산수리 관련자”로, “(문화재수리관리관)”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 및 유구의 보호대책”을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대책”으로, “문화재 및 유구의 관람”을 “국가유산 및 유구의 관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용”을 “국가유산수리

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안내판”을 “국가유산수리 안내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용”을 “국가유산수리 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규모”를 “국가유산 수리규모”로, “문화재수리 전구간”을 “국가유산수리 전구간”으로, “문 화재수리 중”을 “국가유산수리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 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 산수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착수”를 “국가유산수리 착수”로, “문화재수리 추진”을 “국가유산수리 추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 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 및 유구의 보호대책”을 “국가 유산 및 유구의 보호대책”으로, “문화재 및 유구의 관람방안”을 “국가 유산 및 유구의 관람방안”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문화재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를 “국가유산수리 시행 단계 감리업무”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문화재원형의 확인)”을 “(국가유산원형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문화재수리와” 를 “국가유산수리와”로, “문화재수리 기록”을 “국가유산수리 기록”으 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 화재원형”을 “국가유산원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

은 호 라목 중 “문화재수리 현황(문화재수리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
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
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호 아
목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문화
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다목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문
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문
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
다.

제21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자 제출서류의 검토)”를 “(국가유산수리
업자 제출서류의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문화재수리보고
서”를 “국가유산수리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및 제15호 중 “문
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관리관)이”를 “(국가유산수리
관리관)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
수리”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
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
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중 “문화재 또는”을 “국가유산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제8호 및 제9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관리관”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문화재수리와”를 “국가유산수리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관리관”을 각각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수리 착수”를 “국가유산수리 착수”로, “문화재수리 과정”을 “국가유산수리 과정”으로, “문화재수리 내용”을 “국가유산수리 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 현황”을 “국가유산수리 현황”으로, “문화재수리 전·중·후”를 “국가유산수리 전·중·후”로, “문화재수리 과정”을 “국가유산수리 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과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계약문서”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 품질시험·검사”를 “국가유산수리 품질시험·검사”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9조제2항제7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법령”을 “국가유산수리법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중”을 “국가유산수리 중”으로, “문화재수리계획”을 “국가유산수리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6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법령”을 “국가유산수리법령”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 현장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로, “문화재수리 현장 외”를 “국가유산수리 현장 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문화재수리기간”을 “국가유산수리기간”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매장문화재를”을 “매장유산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호 가 목(1)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하고, 같은 목 (2) 및 같은 호 나목(1)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문화재수리의 추진”을 “국가유산수리의 추진”으로,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국가유산수리의 부실”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하고, 같은 목 (4), (5) 및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가 정해진 문화재수리기간”을 “국가유산수리가 정해진 국가유산수리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 조건”을 “국가유산수리 조건”으로, “문화재수리 또는”을 “국가유산수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기간”을 “국가유산수리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진도 관리)”를 “(국가유산수리진도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진도”를 “국가유산수리진도”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진도율”을 “국가유산수리진도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문화재수리가 중지”를 “국가유산수리가 중지”로, “문화재수리가 중단된”을 “국가유산수리가 중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문화재수리관리관”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 원형”을 “국가유산 원형”으로, “문화재 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비”를 “국가유산수리비”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비”를 “국가유산수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 추진 상”을 “국가유산수리 추진 상”으로, “문화재수리 추진에”를 “국가유산수리 추진에”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시행”을 “국가유산수리 시행”으로, “문화재수리 관계자간”을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 관계자”를 “국가유산수리 관계자”로, “문화재수리비”를 “국가유산수리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 시행”을 “국가유산수리 시행”으로, “문화재수리 관계자간”을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간”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가목, 바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불합격 문화재수리에 대한 재시행 명령)”을 “(불합격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재시행 명령)”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문화재수리 완료”를 “국가유산수리 완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문화재수리보고서 검토·확인)”을 “(국가유산수리보고서 검토·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보고서”로, “문화재수리 완료일”을 “국가유산수리 완료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보고서”로, “문화재수리 완료일”을 “국가유산수리 완료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보고서”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보고서”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

다.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문화재수리관리관”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40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41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42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43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44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45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46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47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48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49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50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5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52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제3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53과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작성내용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내용”을 “국가유산수리 내용”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각각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 54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 55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 56과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 57과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 58과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제목 “문화재수리 완료 사전검토서”를 “국가유산수리 완료 사전검토서”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문화재수리명”을 “국가유산수리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첨 1을 별지 59와 같이 한다.

별첨 2를 별지 60과 같이 한다.

제6조(「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의 개정)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한
다.

제17조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21조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24조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25조 중 “이 이 세칙”을 “이 세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6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62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63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64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65와 같이 한다.

제7조(「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의 개정)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을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상주문화재감리원”을 “상주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을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호 및 제3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중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수리비”를 “국가유산수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문화재수리비”란”을 ““국가유산수리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의 설계변경으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으로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문화재수리 계약금액 변동분”을 “국가유산수리 계약금액 변동분”으로, “문화재수리 계약금액이”를 “국가유산수리 계약금액이”로, “문화재수리비”를 “국가유산수리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기간(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기간(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내용”을 “국가유산수리 내용”으로, “문화재수리비”를 “국가유산수리비”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비”를 “국가유산수리비”로, “문화재수리 중지기간”을 “국가유산수리 중지기간”으로, “문화재수리가”를 “국가유산수리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예정가격”을 “국가유산수리 예정가격”으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을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으로, “문화재수리의 경우,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요문화재(지정문화재”를 “중요유산(지정유산”으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2조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문화재위원”을 “문화유산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5호 중 “문화재수리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보고서”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4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문화재위원”을 “문화유산위원”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을 “(국가유산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수리비”를 “국가유산수리비”로 하며, 같은 조 중 “문화재수리비,”를 “국가유산수리비,”로 한다.

제22조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문화재위원”을 “문화유산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5호 중 “문화재수리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보고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66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67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68과 같이 한다.

제8조(「문화재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의 개정)
문화재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을 “국가

유산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으로 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탁기관 : 국가유산수리협회(회장 : 여인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43 로얄타워 7층

제2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로 하고, 같은 호 중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로, 같은 호 중 “문화재수리 관련”을 “국가유산수리 관련”으로, 같은 호 중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를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로 하고, 같은 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9조(「문화재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의 개정) 문화재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으로 한다.

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호가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	없음

제10조(「문화재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위탁 기관 지정」의 개정) 문화재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위탁 기관 지정”을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 지정”으로 한다.

제1호 중 “(이사장 : 이상해)”를 “(이사장 : 김창준)”으로 한다.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1조(「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의 개정)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을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 설계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수리 설계는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 주변정비”를 “국가유산 주변정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의 시대”를 “국가유산의 시대”로, “문화재 수리”를 “국가유산 수리”로, “문화재 주변현황”을 “국가유산 주변현황”으로, “문화재의 퇴락정도”를 “국가유산의 퇴락정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 수리”를 “국가유산 수리”로, “문화재 주변”을 “국가유산 주변”으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와”를 “국가유산수리와”로,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으로 한다.

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등의 노임단가”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등의 노임단가”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등의 급료”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등의 급료”로 한다.

제15조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69와 같이 한다.

제12조(「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개정)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수리 설계”란 문화재”를 ““국가유산수리 설계”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와”를 “국가유산수리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수리 설계업무”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는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 주변정비”를 “국가유산 주변정비”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를”를 “국가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

재 주변현황”을 “국가유산 주변현황”으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 구역”을 “국가유산 구역”으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재 수리규범」”을 “「국가유산 수리규범」”으로 하고,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산 수리규범

1. 원래의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2. 원래의 사용재료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3. 전통기법으로 수리한다.
4. 재료의 대체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4.1 국가유산을 그대로 둘 경우, 붕괴·소멸되어 새로운 재료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 4.2 보강 없이는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
5. 국가유산이 지닌 특성을 간직한 채 전체적으로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리대상물은 수리하기 전의 상태와 수리 후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수리절차와 처리 방법 등 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고서로 남긴다.
7. 국가유산 수리내용을 모두 기록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파손시키거나 변형하지 않도록 한다.
8. 수리는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한다.
9. 모든 수리는 원형보존의 원칙을 준수하되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유형별”을 “국가유산유형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문화재수리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가목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16항 중 “문화재 방재설비”를 “국가유산 방재설비”로,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 지침」”을 “「국가유산재난방지시스템구

축사업 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중 “문화재안내판 설치”를 “국가유산안내판 설치”로,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을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국가유산안내판 가이드라인”으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항 중 “문화재보수공사”를 “국가유산보수공사”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를 각각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로 하고, 같은 항 중 “문화재에”를 “국가유산에”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유형별”을 “국가유산유형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가목 및 라목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표준품셈」”을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문화재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국가유산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70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71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 72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 73과 같이 한다.

제13조(「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의 개정)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4조”를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4조”로, “문화재수리 중”을 “국가유산수리 중”으로,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같은 목 중 “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이상의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같은 목 중 “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이상의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문화재수리”를 “판단한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4조”를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4조”로, “문화재수리 중”을 “국가유산수리 중”으로,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같은 목 중 “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이상의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같은 목 중 “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이상의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판단한 문화재수리”를 “판단한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4조(「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의 개정)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을 “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하도급심사대상 문화재수리)”를 “(하도급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8조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문화재수리 결과”를 “국가유산수리 결과”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74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75와 같이 한다.

제15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 추가」의

개정)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 추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 추가”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추가”로 한다.

제1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종목과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국가무형유산 종목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비고
단청장, 불화장	모사공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시·도무형유산 종목과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시·도	시·도무형 유산 종목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비고
서울특별시	단청장	모사공	
부산광역시	불화장		
인천광역시	단청장		
대전광역시	단청장		
광주광역시	탱화장		
경기도	단청장		
경기도	불화장		
충청북도	단청장		
전라북도	단청장		
전라북도	탱화장		
경상북도	불화장		

제3호나목 중 “042-481-4865”를 “042-481-4871”로 한다.

제16조(「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의 개정)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을 “국가유
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으로 한다.

제1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2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가”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로 하고, 같
은 호 중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www.chis.or.kr)을”을 “국가유
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www.chis.or.kr)을”로 한다.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
준」의 개정)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란”을 ““국가유산수리”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를 “지정유산(무형유산)”으로, “임시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를 “지정유산(임시지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수리등”이란”을 ““국가유산수리등”이란”으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3.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란 국가유산수리등을 업으로 하는 종합 국가유산수리업자,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중 “문화재수리 등”을 “국가유산수리 등”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2 단서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문화재수리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인정)”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변경신고)”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 절차)”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으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76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77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78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79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80과 같이 한다.

제18조(「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의 개정)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업 등을”을 “국가유산수리업 등을”로, “문화재수리업 등의”를 “국가유산수리업 등의”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을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할”을 “국가유산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할”로, “문화재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한”을 “국가유산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한”으로 한다.

제4조 중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5조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협회”를 “국가유산수리협회”로,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하며, 같은 호 중 “문화재수리업 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수리업등을”을 “국가유산수리업등을”로, “문화재수리업등이”를 “국가유산수리업등이”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한다.

제9조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등의”를 “국가유산수리업등의”로,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요건”을 “국가유산수리업등 등

록요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을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으로, “문화재수리업등의 영위”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영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수리업등의 사무실”을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사무실”로, “문화재수리업등의 영위”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영위”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문화재수리업등의 기업진단”을 “국가유산수리업등의 기업진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한다.

제11조제4호 및 제6호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제3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협회”를 “국가유산수리협회”로 하고, 같은 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수리업등과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과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과”를 “국가유산수리업등 이외의 사업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등과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과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

지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변경신고”로 한다.

제24조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문화재수리업 등”을 “국가유산수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합병, 상속, 폐업신고”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 합병, 상속, 폐업신고”로 한다.

제27조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을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수리업등의”를 각각 “국가유산수리업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문화재수리 금액실적”을 “국가유산수리 금액실적”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

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체가 문화재수리업등록”을 “국가유산수리업체가 국가유산수리업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등”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방법 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 착수 전에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현장”을 “국가유산수리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술자”를 “국가유산수리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

수리기술자가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와”를 “국가유산수리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8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82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83과 같이 한다.

제19조(「문화재청 무형문화재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의 개정)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를 “문화재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 관련”을 “무형유산 관련”으로 한다.

제20조(「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의 개정)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를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로 한다.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1. 국가유산 명칭 :
 2. 국가유산 위치 :
 3. 국가유산수리 설계 내용 및 기간
 - 설 계 내 용 :
 - 설 계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계약 금액 : 일금 원정(₩)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5. 대금의 지급
 - 가. 선금금 :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나. 기성금 : (1) ()월 1회
 (2) 용역수행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 다. 과업내용 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 혹은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대금을 조정하
 고 정하여진 지급일에 따라 지급
 6. 계약이행보증금 : 일금 원정(₩)
 7. 지체상금율 :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8.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
 9. 기타 특약사항 :
발주자와 수급인은 붙임의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
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 2
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서류 : 1.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계약 일반조건 1부
 2.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특약 시) 끝.

발주자	수급인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주 소 :
전화 / Fax :	전화 / Fax :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 일반조건”을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 일반조건”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

2호 중 ““문화재수리 설계”란 문화재”를 ““국가유산수리 설계”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와”를 “국가유산수리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이”란”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서”를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계약서”로,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 일반조건”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계약 일반조건”으로,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계약 특수조건”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문화재수리 설계 내용 및 기간)”을 “(국가유산수리 설계 내용 및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을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발행 보증서

제10조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의 표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착수신고서2. 국가유산수리 설계 예정공정표3.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참여기술자 명부, 보안각서4.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
|--|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
산수리”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5호 중 “급?배수”를 “급·배수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설계도서의 작성?제출)”을 “(설계도서의 작성·제
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을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조사?확인하고 문화재수리”를 “조사·확인하고 국가
유산수리”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제?해지”를 “해제·해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
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제?해지”를 “해제·해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관계법령”을 “국가유산관계법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제2항 중 “정산·환불한다”를 “정산· 환불한다”로 한다.

제28조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문화재수리를 제외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를 제외한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84와 같이 한다.

제21조(「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정)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를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로 한다.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산수리명 :
2. 국가유산수리장소 :
3.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4. 완료예정년월일 :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노무비: 일금 원정)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6. 대금지급방법
 - 선 급 금 : 계약체결후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기성부분금 : ()월 1회
 - 잔 금 : 국가유산수리 완료 후 (일) 이내 지급
7. 계약이행보증금 : 일금 원정(₩)
8.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9.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완료일로부터 (년)
11. 지체상금율 :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12.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13.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14. 기타 특약사항 :

발주자와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설계도서 및 내역서 1부.

년 월 일

(발주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수급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연대보증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수리시방서”를 “국가유산수리시방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규격?수량?단위”를 “규격·수량·단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도급계약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도급계약서,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 계약특수조건”을 “국가유산수리 계약특수조건”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로, “문화재수리협회”를 “국가유산수리협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문화재수리 감독원)”을 “(국가유산수리 감독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감독원”을 “국가유산수리감독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의 재료와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의 재료와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목적물”을 “국가유산수리 목적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수리감독원”을 각각 “국가유산수리감독원”으로 하고, 제3항 중 “문화재수리 수행”을 “국가유산수리 수행”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의 착수”를 “국가유산수리의 착수”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의 종류”를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로, “문화재수리기

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 등”을 “국가유산수리 등”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비”를 “국가유산수리비”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나”를 “국가유산수리나”로, “문화재수리는”을 “국가유산수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예정공정표”를 “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로, “문화재수리 일정”을 “국가유산수리 일정”으로,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 보장법 및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을 “국가유산수리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확인하고 문화재수리”를 “조사·확인하고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부적합한 문화재수리)”를 “(부적합한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를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로, “문화재수리에 해당하는”을 “국가유산수리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목적물의 인도전”을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 인도전”으로, “문화재수리 목적물의 전부”를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 전부”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 목적물의”를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로, “문화재수리 목적물을”을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문화재수리 대금”을 “국가유산수리 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7조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의 하자보수”를 “국가유산수리의 하자보수”로, “문화재수리의 대가”를 “국가유산수리의 대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의 하도급 등)”을 “(국가유산수리의 하도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

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문화재수리 능력”을 “국가유산수리 능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한”을 “국가유산수리한”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문화재수리용”을 “국가유산수리용”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 중지에 따른 기간”을 “국가유산수리 중지에 따른 기간”으로, “문화재수리 중지에 따른 비용”을 “국가유산수리 중지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8조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형상은 제외한다)”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이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이”를 “국가

유산수리업자등이”로,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조사내용란 제4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조사내용란 제5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85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86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별 산지·제작방법 등 현황”을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별 산지·제작방법 등 현황”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 종이류 중 “건조물 문화재”를 “건조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목 차

구 분	제 목	쪽
제 1 장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 개요	
1.2	국가유산수리 추진계획 및 실적	
1.3	국가유산감리 개요	
1.4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1.5	기술지도단	
제 2 장	감리원 감리일지	
제 3 장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	
3.1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	
제 4 장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4.1	품질시험 · 검사대장	
4.2	시범시축 검사대장	
4.3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4.4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자 포함) 실명부	

목 차

구 분	제 목	쪽
제 5 장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	
5.1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	
5.2	검측 체크리스트	
제 6 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6.1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 · 결과 통보 내용	
6.2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	
6.3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6.4	해체부재 및 주요자재 총괄	
제 7 장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	
7.1	설계변경 개요	
7.2	현장 실정보고 현황	
7.3	기술 검토 사항	
7.4	설계변경 관련 자문내용	
제 8 장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 · 검토 · 확인 내용	
8.1	자문회의록	
8.2	국가유산수리 전후 사진	
제 9 장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제1장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 개요

- 국가유산수리명 :
- 위 치 :
- 사 업 종 류 :
- 사 업 개 요 :
- 계 약 일 자 :
- 착 수 일 자 :
- 완료 예정일자 :
- 총 사 업 비 : 천원

(단위 : 천 원)

총 사 업 비	도 급 액	관 급 액	보 상 비	설 계 비	감 리 비

- 낙 찰 른 :
- 수 리 업 자 :
- 현 장 대 리 인 :
- 계 약 내 용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표기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 수리 현장조직 (예시)



*자격 및 번호 병기
*변경된 경우 배치기간과 함께 병기

1.2 국가유산수리 추진계획 및 실적(예시)

(20 . . . 현재, 단위:천원)

공종	구분	단 위	전체계획		기시공 (. . .까지)		금회(. . .~ . . .)				공정(%)				
			국가유 산수리 량	국가유 산수리 비	국가유 산수리 량	국가유 산수리 비	계획		시공		전체		금회		
							국가유 산수리 량	국가유 산수리 비	국가유 산수리 량	국가유 산수리 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가	설	공	사												
기	초	공	사												
목	공	사													
지	붕	공	사												
전	돌	공	사												
미	장	공	사												
창	호	공	사												
온	돌	공	사												
수	장	공	사												
석	공	사													
석	조	물	공	사											
단	청	공	사												
유	구	정	비	공	사										
기	타	공	사												
보	존	처	리	공	사										
식	물	보	호	공	사										
조	경	공	사												
합	계														
순	공	사	비												
제	경	비													
공	급	가	액												
부	가	세													
총	계														

작성요령

1. 전체 계획에서 국가유산수리량은 설계수량, 국가유산수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기시공은 전회 감리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금회는 전회 감리보고서 제출 후 금회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유산수리량은 규격 등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능한 것은 주자재물량으로 기재하되 국가유산수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5.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공사는 관련 품셈 및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3 국가유산감리 개요

- 계약 일자 :
- 착수 일자 :
- 완료예정일자 :
- 계약 금액 :
- 낙찰률 :
- 감리업자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표기

- 계약 내용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 감리조직 (예시)

[비상주감리원]

구분(담당분야)	성명	기술자격 종목 및 번호

[기술지원자]

구분(담당분야)	성명	기술자격 종목 및 번호

1.4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등

-
-
-

1.5 기술지도단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 공	비고

※ 작성요령

1. 문화재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에 따른 기술지도 사업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비고란에는 기술지도단의 변경이 생긴 경우 위촉일 또는 해촉일을 기재합니다.

제2장 감리원 감리일지

감리일지								
국가유산 수리명			연월일 (요일)			날씨	누계 공정	
주요 작업 상황	공종	단위	설계량	당 일		누계 작업량	공정 (%)	특이사항
				작업위치	작업량			
국가유산 감리원 업무수행 내용	성명	서명	주요 업무 수행 내용				지시사항	
관련 문서	업무 분류	문서 분류	공종 구분	위 치	제 목 (내 용 요 약)			
특이사항								

작성요령

1. 감리원은 본인의 업무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공사 추진 내용, 검측 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서명하여 현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2. 주요 작업 상황은 공사 추진 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공중에 대한 업무 수행 내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3. 감리원은 검측업무 수행사항에 대한 검측부위, 검측시간, 검측내용, 검측결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에 대한 관련 문서번호, 구두로 시정명령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4. 감리원은 현장점검 시 동행자 소속, 직책, 성명 등과 점검내용, 위치, 특정부위, 점검결과 등을 기록하고 현장점검 중 지적된 사항과 수리업자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5.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현장의 긴급상황, 조치사항, 도면검토, 구두협의 및 지시한 사항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직책, 성명 등을 기록하고, 구두지시 및 유선통화 내용은 감리원의 업무수행 근거자료이므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제3장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

3.1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국가유산수리명 :

공정	조사일	조사내용	조사자 (성명 및 서명)

작성요령

1.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외의 공정에 대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2. 조사내용란에는 파손정도, 부재관련 사항(재질, 색깔, 규격, 형태 등), 시공방법 등을 조사하여 국가유산 원형의 확인에 기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입합니다.
3. 조사자란에는 조사자 성명과 함께 서명합니다.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

3.2.1 (공 정 명) 시공 현황

- 시공내용 : *공정의 시공내용을 해체 또는 조립 등으로 기재합니다.*
- 시공기간 :
- 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인)

작 업 일	작업위 치 및 공 종	작업내 용	자격종 목 및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기술자 등 의 서명	감 리 원 인	비 고
20								

작성요령

1. 기술자등의 서명은 감리원이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2. 현장에서 실제 작업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수리업자가 참여를 확인한 경우에는 기술자등의 서명란에 확인한 국가유산수리 기술자가 성명과 함께 서명하고, 감리원은 노임대장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원 확인란에 성명과 함께 서명합니다.(노 임대장 등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비고란에 '확인불가' 기재)
3.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3.2.2 (공 정 명) 시공 현황

- 시공내용 : *공정의 시공내용을 해체 또는 조립 등으로 기재합니다.*
- 시공기간 :
- 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인)

작업일	작업위치 및 공종	작업내용	자격종목 및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기술자등의 서명	감리원인	비고
20 . . .								

작성요령

1. 기술자등의 서명은 감리원이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2. 현장에서 실제 작업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수리업자가 참여를 확인한 경우에는 기술자등의 서명란에 확인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성명과 함께 서명하고, 감리원은 노임대장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원 확인란에 성명과 함께 서명합니다.(노임대장 등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비고란에 ‘확인불가’ 기재)
3.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제4장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3쪽 중 1쪽)

4.1 품질시험 · 검사대장

국가유산수리명 :

일련 번호	년 월 일	시험 · 검 사구 분	재료	시험 · 검 사항목	시험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 · 검사자		감리원 확인		비 고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 자재별(콘크리트 타설은 4.2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및 4.3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 실명부에 별도 작성)로 기재합니다.
2. 시험성과표는 별도 기재합니다.
3. 비고란에는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 조치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4.2 시범시축 검사대장(필요시)

일련 번호	년 월 일	시축공종	시축내용 (물량, 규모 등)	검토 결과	검토 결과 판정	검사자		감리원 확인		비 고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의 방향 결정을 위해 일부 국가유산수리 내용을 시범적으로 축조하거나 채색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2. 검사자가 기술지도, 자문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술지도위원 또는 자문위원 등 모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4.3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국가유산수리명 :

구 조 물 명						
타 설 일 자						
타 설 부 위						
설 계 량 (m³)						
타 설 량 (m³)						
콘 크 리 트 배 합 종 류						
납 품 회 사						
타 설 방 법						
타 설 시 간						
타 설 시 온 도 (°C)						
시험결과	슬 럼 프 (cm)					
	공 기 량 (%)					
	염 분 량 (kg / m³)					
	28일압축강도(kg/cm²)					
시험자	수리업자	성 명				
		서 명				
	감리원	성 명				
		서 명				

작성요령

1. 슬럼프, 공기량과 28일강도 시험자가 다를 경우 슬럼프, 공기량 시험자는 상단에, 28일강도 시험자는 하단에 성명과 서명을 기재합니다.
2. 직접타설 : Mixer Truck으로부터 직접 받아 타설
3. Pump : Pump Car로 타설
4. 콘크리트 배합사레 : 25-210-08을 A1으로 할 경우, 25-210-12는 A2, 25-210-15는 A3 등으로 기재합니다.
19-240-08을 B1으로 할 경우, 19-240-12는 B2, 19-240-15는 B3 등으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4.4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국가유산수리명 :

타 설 일	타설위치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공 사 내 용	서 명

작성요령

1. 공사내용은 공사관리, 작업총괄, 레이콘 차량관리, 펌프카 노즐담당,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다짐, 거푸집 및 동바리 변형 감시, 콘크리트 마무리면 정리, 양생재 포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5장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

5.1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

국가유산수리명 :

검 측 요 청 서	
번호 :	20
받음 :	○○수리 상주감리원 ○○○
다음과 같은 세부공종에 대하여 검측요청 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및 공 종	
검 측 부 위	
검 측 요 구 일 시	
검 측 사 항	
붙임 : 수리업자의 검측 체크리스트, 시험성과, 수리업자의 야장 및 도면, 기술자등의 명단(실명부 첨부)	
수리업자	점 검 직 원 (인)
	현장대리인 (인)
검 측 결 과 통 보	
번호 :	20
받음 :	○○수리 현장대리인 ○○○
문서번호 ○○로 검측요청 한 건에 대하여 20 검측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검측결과	
2. 지시사항	
붙임 : 감리원의 검측 체크리스트	
	감리원 (인)

작성요령

1. 재검측시에는 붉은글씨로 “(재)”를 우측상단에 작성합니다.
2. 수리업자가 재검측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성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2부 작성하여 수리업자, 감리원이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5.2 검측 체크리스트

국가유산수리명 :

공종 (품셈 기준)	목공사	위 치 및 부 위	X1-Y2열, X2-Y5열
공종 (세부공종)	기둥동바리이음	국 가 유 산 수 리 량	기둥 동바리 2개소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시방서 또는 도면)	검 사 결 과		조 치 사 항
		합 격	불 합 격	

수 리 업 자 점 검 일 자	년 월 일	점 검 직 원	(인)
공 종 (세부공종)	년 월 일	감 리 원	(인)

작성요령

1. 검사결과 상단은 수리업자 점검직원이, 하단은 감리원이 검사한 결과를 수치로 기록하고, 검사기준도 검사결과와 비교될 수 있도록 시방서 또는 도면 등에 있는 수치를 작성하며, 수치가 없는 검사항목은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있는 내용과 검사한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2. 매물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 작성하고,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관련 사진을 첨부합니다.
3.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각 공종별로 감리원과 협의하여 기재합니다.

제6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6.1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 · 결과 통보 내용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			
문 서 번 호		수 신	감리원
	국가유산수리명	공 종	
품 명		규 격	
제 조 회 사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수 리 업 자 의 견			
첨 부	인 증 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자 등록증 <input type="checkbox"/> 카탈로그 <input type="checkbox"/> 공장등록증 <input type="checkbox"/> 시험성적서 <input type="checkbox"/> 납품실적 증명 <input type="checkbox"/> 시험성과 대비표 <input type="checkbox"/> 견 본 <input type="checkbox"/> 기 타 <input type="checkbox"/> _____		
특 기 사 항			
상기 자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오니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div>		담 당 자 현장대리인	(인) (인)

자재공급원 검토결과 통보서			
문 서 번 호		수 신	현장대리인
검 토 의 견			
판 정	적합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특 기 사 항	1. 공장방문 후 검토결과를 통보할 경우 해당 공장 방문 검사체크리스트 첨부 2. 자체시험 및 외부 의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 결과 치 기록 또는 시험성적서 첨부		
상기 검토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div>		검 토 감 리 원 비상주감리원	(인) (인)

작성요령

1. 재검측시에는 붉은글씨로 “(재)” 를 우측상단에 작성합니다.
2. 수리업자가 재검측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성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2부 작성하여 수리업자, 감리원이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6.2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

국가유산수리명 :

해체부재 정 보	부 재 명							
	규 격							
	단 위							
	설 계 량							
해체 정보	해 체 일							
	해 체 량							
	재사용재 불용재	/	/	/	/	/	/	/
해체 검수자(성명 및 서명)								
반입 정보	반 입 일							
	재사용재 불용재	/	/	/	/	/	/	/
반입 검수자(성명 및 서명)								
재사용여부 확 정 (필요시)	검 토 일							
	재사용재 불용재	/	/	/	/	/	/	/
	불 용 사 유							
재 사용 재 출 고	출 고 일							
	출 고 량							
재 사 용 재 잔 량								
출고 검수자(성명 및 서명)								

작성요령

1. 해체 후 작업장 반출 시까지는 현장대리인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감리원은 검측 등을 위한 현장방문 시마다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해체부재는 동일 기능의 부재라 하더라도 규격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구분하여 기록하되,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합한 수량은 해체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재사용재 기록 시 필요한 경우 완전재사용 부재와 부분수리 후 재사용 부재를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사용재란에 '완전재사용재(부분수리 후 재사용재)'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5. '재사용여부 확정'은 제38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체부재 재사용여부를 검토한 경우에 기록합니다.

6.3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국가유산수리명 :

반입부재 정 보	부 재 명							
	규 격							
	단 위							
	설 계 량							
반 입 일								
반 입 량								
합 격 량	금회							
	누계							
불 합 격	불 합 격 량							
	사 유							
반입 검수자(성명 및 서명)								
출 고 일								
출 고 량								
잔 량								
출고 검수자(성명 및 서명)								

작성요령

1. 해체 후 작업장 반출 시까지는 현장대리인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감리원은 검측 등을 위한 현장방문 시마다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6.4 해체부재 및 주요자재 총괄

국가유산수리명 :

설계정보	부재명							
	설계량							
	규격							
	단위							
해체부재 (재사용재)	출고일							
	금회출고량 누계							
	잔량							
신재 (주요자재)	출고일							
	금회출고량 누계							
	잔량							
해체부재 (불용재)	출고일							
	금회출고량 누계							
	잔량							
	출고목적							
	인수자 소속 및 성명							

작성요령

- '6.2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 및 '6.3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의 내용을 취합하여 기재합니다.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해체부재(불용재)의 출고목적은 '폐기', '보관'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가. 폐기 : 불용재 중 가치의 중요성을 분석하여 폐부재로 분류된 것. 별도의 인수자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나. 보관 : 불용재 중 가치의 중요성을 분석하여 보관부재로 분류된 것.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소유자, 박물관 등으로 이관되는 것을 말하며, 이관 시 인수자 소속,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합니다.

제7장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

7.1 설계변경 개요

- 변경 차 수 :
- 변경 일자 :
 - ※ 발주자의 승인일 표기(문화재청·광역지자체 등의 설계변경승인 대상인 경우 설계변경 승인일 표기, 단, 설계심사필 조건부승인인 경우 설계심사필 일자를 괄호안에 병기)
- 주요 변경 내용

공 종	수 량			국가유산수리비(천원)			변경사유	비고
	단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총 계	-	-	-				-	

7.2 현장 실정보고 현황

연 번	보 고 일 자 (문서 번호)	승 인 일 자 (문서 번호)	제 목	내 용	비 고

7.3 기술검토 사항

연 번	보 고 일 (문서 번호)	제 목	내 용	비 고

7.4 설계변경 관련 자문내용

연 번	자 문 일 시	참 석 자	회의결과	비고

작성요령

1. '제8장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중 설계변경과 관련있는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제8장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8.1 자문회의록

안 건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결과	
회의사진	

8.2 국가유산수리 전후사진

국가유산수리명 :

시 공 전	촬 영 일 자		공 종	
	촬 영 위 치		작 업 내 용	
시 공 후	촬 영 일 자		공 종	
	촬 영 위 치		작 업 내 용	

목 차

구 분	제 목	쪽
제 1 장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 목적	
1.2	국가유산수리 개요	
1.3	국가유산감리 개요	
1.4	국가유산실측설계 개요	
1.5	기술지도단	
1.6	위치도	
제 2 장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	
2.1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2.2	공종 및 년도별 추진실적	
2.3	설계변경 현황	
2.4	실정보고 처리현황	
2.5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현황	
2.6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2.7	감리 계약변경 현황	
2.8	감리원 투입현황	
제 3 장	검측 실적의 종합	
3.1	검측관리실적	
3.2	검측관리 종합분석	
제 4 장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4.1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4.2	시범시축 검사성과 총괄표	
4.3	품질시험 및 시범시축 검사 종합분석	

목 차

구 분	제 목	쪽
제 5 장	주요자재 관리실적의 종합	
5.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5.2	해체부재 및 주요자재 투입 등 현황	
5.3	해체부재 및 주요자재 관리 종합분석	
제 6 장	공정별 기술검토 내용의 종합	
6.1	공정별 기술검토 현황	
6.2	주요 기술검토 내용	
제 7 장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7.1	자문회의 실적	
7.2	자문회의록	
제 8 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내용	
8.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성명 및 업무내용	
8.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성명 및 업무내용	
8.3	관계전문가 성명 및 업무내용	
제 9 장	종합분석 및 검사 실적의 종합	
제 10 장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제1장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 목적

- 국가유산정보
 - 지정번호 :
 - 문화재명 :
 - 소재지 :
- 사업목적 :
- 사업지침 :

1.2 국가유산수리 개요

- 국가유산수리명 :
- 위 치 :
- 세부공종코드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세부공종별 부호코드 명기
- 사업개요 :
- 계약일자 :
- 국가유산수리기간 : 20 . . . ~ 20 . . . (일)
 - 중지기간 : 20 . . . ~ 20 . . . (일)
 - ※ 국가유산수리기간의 일수는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명기
-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 원)

총사업비	도급액	관급액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 낙찰률 :
- 수리업자 :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표기
- 현장대리인 :
- 계약내용 :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 수리 현장 조직 (예시)



*자격 및 번호 병기
*준공 기준으로 작성

1.3 국가유산감리 개요

- 계약 일자 :
- 감리 기간 :
- 감리비 :
- 낙찰률 :
- 감리업자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표기

- 계약 내용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 감리 조직 (예시)

[비상주감리원]

구분(담당분야)	성명	기술자격 종목 및 번호

[기술지원자]

구분(담당분야)	성명	기술자격 종목 및 번호

1.4 국가유산실측설계 개요

- 계약 일 자
- 용 역 기 간 :
- 설 계 비 :
- 실 측 설 계 업 자 :
- 낙 찰 륜 :
- 계 약 내 용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표기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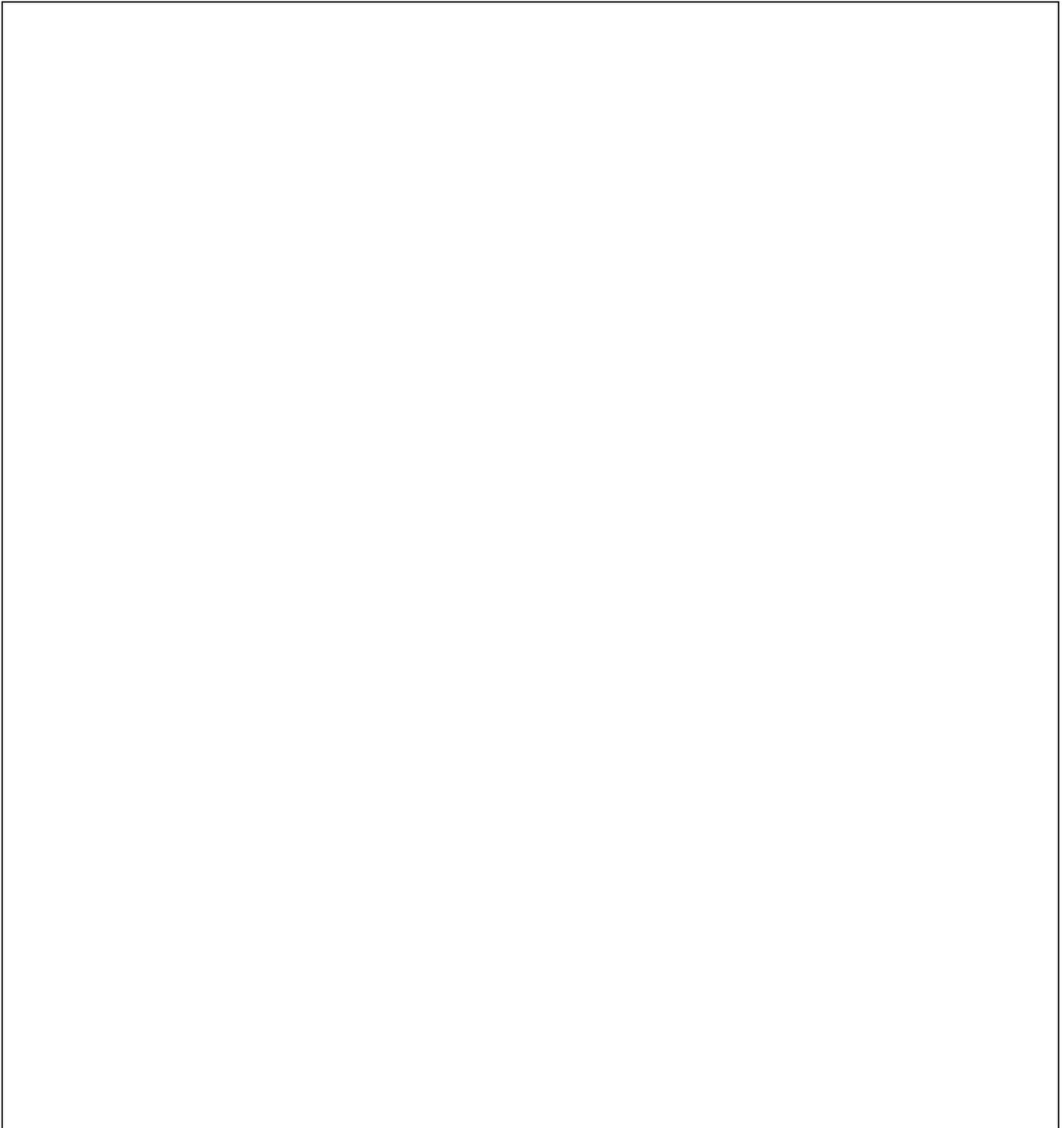
1.5 기술지도단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 공	비고

※ 작성요령

1. 문화재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에 따른 기술지도 사업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비고란에는 기술지도단의 변경이 생긴 경우 위축일 또는 해축일을 기재합니다.

1.6 위치도



작성요령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작성되어 고시된 관련 **국가유산**의 지형도면을 활용하여 주변 **국가유산** 및 보호구역,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표시합니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 주변의 **국가유산을** 모두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적·천연기념물·지방기념물 등 **국가유산구역**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위치도의 축척을 달리하여 2종류 이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제2장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

2.1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년 (차	도 수)	구 분	기 성 및 준 공 금 액 (천 원)	검 사 일	검 사 자	비 고

2.2 공종 및 년도별 추진실적(예시)

(단위:천원)

구분 공종	단 위	전 체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가 설 공 사									
기 초 공 사									
목 공 사									
지 붕 공 사									
전 들 공 사									
미 장 공 사									
창 호 공 사									
온 들 공 사									
수 장 공 사									
석 공 사									
석 조 물 공 사									
단 청 공 사									
유 구 정 비 공 사									
기 타 공 사									
보 존 처 리 공 사									
식 물 보 호 공 사									
조 경 공 사									
합 계									
순 공 사 비									
제 경 비									
공 급 가 액									
부 가 세									
총 계									

작성요령

1. 전체에서 국가유산수리량은 설계수량, 국가유산수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량은 규격 등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능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국가유산수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2.3 설계변경 현황

(단위:천원)

변경 회 수 별	계 약 일 자	총 국가유산수리비 (도급액+관급자재비)	도 급 액	관급자재비	기타	설계변경 주요내용
당 초						

2.4 실정보고 처리현황

연 번	보 고 일 (문서번호)	승 인 일 (문서번호)	제 목	내 용

210mm×297mm[백상지 80g/m²]

2.5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현황

연 번	접 수 일	문 서 번 호	지 시 사 항	처 리 내 용

210mm×297mm[백상지 80g/㎡]

2.6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인력 투입 현황			장비 투입 현황			
직종	투입인원 (인)	비고	장비명	규격	투입대수 (대)	비고
보수기술자			백호			
조경기술자			크레인			
보존과학기술자			...			
...						
한식목공(대목수)						
한식목공(소목수)						
한식석공(가공석공)						
한식석공(쌓기석공)						
화공						
...						
보통인부						
비계공						
...						

210mm×297mm[백상지 80g/m²]

2.7 감리 계약변경 현황

구 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변경 주요내용	비 고

2.8 감리원 투입현황

성 명	자격종목 및 번호	담당업무	배치기간	투입일수	비 고

제8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내용

8.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성명 및 업무내용

자격종목 및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투입일수 (일)	업무내용	현장대리인 확	감리원 인	비고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투입일수 산정 시 투입기간에 국가유산수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경우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실제 투입일수를 기재합니다. 하도급의 경우도 함께 기재합니다.
2. 중간감리보고서의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들의 명단 포함)’ 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이 함께 확인하여 성명과 함께 서명합니다. 다만, 중감감리보고서 3.2 비교란에 ‘확인불가’ 로 기재된 경우는 작성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비교에 명기합니다.
3. 중간감리보고서의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들의 명단 포함)’ 일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8.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성명 및 업무내용

자격종목 및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투입일수 (일)	업무내용	현장대리인 확	감리원 인	비고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투입일수 산정 시 투입기간에 국가유산수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경우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실제 투입일수를 기재합니다. 하도급의 경우도 함께 기재합니다.
2. 중간감리보고서의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이 함께 확인하여 성명과 함께 서명합니다. 다만, 중감감리보고서 3.2 비교란에 ‘확인불가’로 기재된 경우는 작성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비교에 명기합니다.
3. 중간감리보고서의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 일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8.3 관계전문가 성명 및 업무내용

소속 및 위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업무내용	현장대리인 확인인	감리원인 확인	비고

작성요령

- 1. 기술지도, 기술검토, 자문 등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수리업자 및 감리업자 소속 직원을 제외한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내용을 기재합니다.
- 2.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

1. 해체부재 발생품(불용품) 정리부

국가유산수리명 :

불용확정 년월일	부재명	규격	단위	수량	불용 사유	처리사항 [폐기/보관(보관장소)]

작성요령

1. 불용확정 연월일은 불용재로 분류된 날을 명기하되, 제38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재사용여부를 검토한 경우에는 검토일을 기재합니다.
2. 처리사항은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폐기’, 보관하였을 경우에는 ‘보관’ 이라 기재하고 괄호안에 인수자를 병기합니다.
예) 소유자 보관일 경우, 보관(소유자 000)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보관일 경우, 보관(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2. 지급자재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국가유산수리명 :

발생년월일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자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210mm×297mm[백상지 80g/㎡]

사고처리 보고서

수 신 : 감 독 관	분 류 기 호 :
참 조 :	제 출 년 월 일 :
발 신 : 감 리 원 ○ ○ ○ (서 명)	
국가유산 수리명	
계 약 금 액 (천 원)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 수 리 착 수 년 월 일	
사 고 발 생 년 월 일	
최 근 공 정	
피 해 개 요	
처 리 결 과	
첨 부 서 류	피해 광경사진, 피해 내역서

국가유산수리 완료 사전검토서

국가유산수리명			
회계연도 및 사업예산			
사업내용			
수리업자		도급금액	
준공예정일자	20 . . .	현장검토일자	20 . . .

국가유산수리 완료 사전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발 주 자 귀 하

구 분	조 사 내 용	확 인 결 과
설계도서검토	•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 적 합 [] 미 합
기 타 사 항		
종 합 의 건		

현 황 사 진 ※ 검토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별지에 그 부위의 상세한 사진과 내용을 기입하여 별도로 작성

원 경	근 경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앞쪽)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경력증명	발급일			
	주 소				
자격사항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발급기관	
학력사항	졸업일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과정		교육기관	
상훈사항	자격종목	연월일	종류	상훈 기관	근거
제재사항	자격종목	연월일	종류	제재 기관	근거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명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참여사업명	사업비	코드번호	발주자

- 해당 분야 종사기간(A=B+C) : 일
- 사무경력 수행기간(B) : 일
- 현장경력 수행기간(C) : 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수탁기관의 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		
	주소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계약구분	직책	발주자명	확 인 연월일	확 인 (발주자)
1							
2							
3							
4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	---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계약구분은 수의계약규모, 수의계약규모초과를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처 리 절 차

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목 차

구 분	제 목	쪽
제 1 장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 개요	
1.2	국가유산수리 추진계획 및 실적	
1.3	부진공정 만회대책	
1.4	국가유산수리 개요	
1.5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1.6	기술지도단	
제 2 장	감리원 감리일지	
2.1	상주감리원 감리일지	
2.2	보조감리원 감리일지	
제 3 장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	
3.1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	
제 4 장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4.1	품질시험 · 검사대장	
4.2	시범시축 검사대장	
4.3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4.4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자 포함) 실명부	

목 차

구 분	제 목	쪽
제 5 장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	
5.1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	
5.2	검측 체크리스트	
제 6 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6.1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 · 결과 통보 내용	
6.2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	
6.3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6.4	해체부재 및 주요자재 총괄	
제 7 장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	
7.1	설계변경 개요	
7.2	현장 실정보고 현황	
7.3	기술 검토 사항	
7.4	설계변경 관련 자문내용	
제 8 장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 · 검토 · 확인 내용	
8.1	자문회의록	
8.2	국가유산수리 전후 사진	
제 9 장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제1장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 개요

- 국가유산수리명 :
- 위 치 :
- 사 업 종 류 :
- 사 업 개 요 :
- 계 약 일 자 :
- 착 수 일 자 :
- 완료 예정일자 :
- 총 사 업 비 : 천원

(단위 : 천 원)

총 사 업 비	도 급 액	관 급 액	보 상 비	설 계 비	감 리 비

- 낙 찰 율 :
- 수 리 업 자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표기

- 현 장 대 리 인 :
- 계 약 내 용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 수 리 현 장 조 직 (예시)



1.2 국가유산수리 추진계획 및 실적(예시)

(20 . . . 현재, 단위:천원)

구분 공종	단 위	전체계획		기시공 (. . .까지)		금회(. . .~ . . .)				공정(%)			
						계획		시공		전체		금회	
		국가유산 수리량	국가유산 수리비	국가유산 수리량	국가유산 수리비	국가유산 수리량	국가유산 수리비	국가유산 수리량	국가유산 수리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가 설 공 사													
기 초 공 사													
목 공 사													
지 붕 공 사													
전 들 공 사													
미 장 공 사													
창 호 공 사													
온 돌 공 사													
수 장 공 사													
석 공 사													
석 조 물 공 사													
단 청 공 사													
유 구 정 비 공 사													
기 타 공 사													
보 존 처 리 공 사													
식 물 보 호 공 사													
조 경 공 사													
합 계													
순 공 사 비													
제 경 비													
공 급 가 액													
부 가 세													
총 계													

작성요령

1. 전체 계획에서 국가유산수리량은 설계수량, 국가유산수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기시공은 전회 감리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금회는 전회 감리보고서 제출 후 금회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유산수리량은 규격 등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능한 것은 주자재물량으로 기재하되 국가유산수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5.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공사는 관련 품셈 및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제2장 감리원 감리일지

2.1 상주감리원 감리일지

감리일지								
국가유산 수리명			연 월 일 (요일)			날씨	누계 공정	
주요 작업 상황	공종	단위	설계량	당 일		누계 작업량	공정 (%)	특이사항
					작업 위치			
국가유산 감리원 업무 수행 내용	성명	서명	주요 업무 수행 내용				지시사항	
관련 문서	업무 분류	문서 분류	공종 구분	위 치	제 목 (내 용 요 약)			
특이사항								

작성요령

1. 국가유산감리원은 본인의 업무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공사 추진 내용, 검측 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서명하여 현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2. 주요 작업 상황은 공사 추진 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한 업무 수행 내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3. 보조감리원의 감리일지를 보고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합니다.

2.2 보조감리원 감리일지

보조감리원 감리일지			
국가유산 수리명		연월일 (요일)	
	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확인자 : 상주감리원 (인)			
시간대별	업무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특이사항			

작성요령

1. 감리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메모하여 이를 업무종료 전에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하고 상주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업무일지 작성이후에 발생한 업무나 진행상황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날 확인을 받은 후 처리하되 감리일지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록하여야 합니다.
2. 감리원의 감리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작성지연으로 인한 상주감리원의 감리일지 작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성실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감리원은 검측업무 수행사항에 대한 검측부위, 검측시간, 검측내용, 검측결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에 대한 관련 문서번호, 구두로 시정명령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4. 감리원은 당일 처리한 문서번호, 검토내용 및 검토결과와 상주감리원에게 보고한 사항 및 지시받은 사항을 기록합니다.
5. 감리원은 현장점검 시 동행자 소속, 직책, 성명 등과 점검내용, 위치, 특정부위, 점검결과 등을 기록하고 현장점검 중 지적된 사항과 수리업자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6.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현장의 긴급상황, 조치사항, 도면검토, 구두협의 및 지시한 사항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직책, 성명 등을 기록하고, 구두지시 및 유선통화 내용은 감리원의 업무수행 근거자료이므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7. 감리원은 현장을 이탈하는 출장의 경우 시간, 목적지, 목적 등을 기록하고 업무협의 결과, 관련 문서번호 또는 명칭을 기록합니다. 다만, 현장 이탈 후 당일 복귀할 경우 당일 감리일지에 기록하고, 다음날 복귀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상주감리원에게 보고한 후 기재합니다.

1.3 부진공정 만회대책(예시)

- 부진공정 :
- 공정현황(20 . . . 현재)

구분	계획	실적	대비	비고
공정률 (%)				

- 부진사유

-

- 만회대책

-

1.4 국가유산감리 개요

- 계약일자 :
- 착수일자 :
- 완료예정일자 :
- 계약금액 :
- 낙찰률 :
- 감리업자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표기

- 계약내용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 감 리 조 직 (예시)



* 자격 및 번호 병기
 * 변경된 경우 배치기간과 함께 병기

[기술지원자]

구 분(담당분야)	성 명	기술자격 종목 및 번호

1.5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등

-
-
-

1.6 기술지도단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 공	비고

※ 작성요령

1. 문화재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에 따른 기술지도 사업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비고란에는 기술지도단의 변경이 생긴 경우 위촉일 또는 해촉일을 기재합니다.

제3장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

3.1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국가유산수리명 :

공정	조사일	조사내용	조사자 (성명 및 서명)

작성요령

1.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외의 공정에 대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2. 조사내용란에는 파손정도, 부재관련 사항(재질, 색깔, 규격, 형태 등), 시공방법 등을 조사하여 국가유산 원형의 확인에 기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입합니다.
3. 조사자란에는 조사자 성명과 함께 서명합니다.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

3.2.1 (공 정 명) 시공 현황

- 시공내용 : *공정의 시공내용을 해체 또는 조립 등으로 기재합니다.*
- 시공기간 :
- 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인)

작업일	작업위치 및 공종	작업내용	자격종목 및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기술자등의 서명	감리원인	비고
20								

작성요령

1. 기술자등의 서명은 감리원이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2. 현장에서 실제 작업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수리업자가 참여를 확인한 경우에는 기술자등의 서명란에 확인한 국가유산수리 기술자가 성명과 함께 서명하고, 감리원은 노임대장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원 확인란에 성명과 함께 서명합니다.(노임대장 등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비고란에 '확인불가' 기재)
3.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3.2.2 (공 정 명) 시공 현황

- 시공내용 : *공정의 시공내용을 해체 또는 조립 등으로 기재합니다.*
- 시공기간 :
- 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인)

작업일	작업위치 및 공종	작업내용	자격종목 및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기술자등의 서명	감리원인	비고
20 . . .								

작성요령

1. 기술자등의 서명은 감리원이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2. 현장에서 실제 작업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수리업자가 참여를 확인한 경우에는 기술자등의 서명란에 확인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성명과 함께 서명하고, 감리원은 노임대장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원 확인란에 성명과 함께 서명합니다.(노임대장 등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비고란에 '확인불가' 기재)
3.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제4장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3쪽 중 1쪽)

4.1 품질시험 · 검사대장

국가유산수리명 :

일련 번호	년 월 일	시험 · 검 사구 분	재료	시험 · 검 사항목	시험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 · 검사자		감리원 확인		비 고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 자재별(콘크리트 타설은 4.2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및 4.3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 실명부에 별도 작성)로 기재합니다.
2. 시험성과표는 별도 기재합니다.
3. 비고란에는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 조치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4.2 시범시축 검사대장(필요시)

일련 번호	년 월 일	시축공종	시축내용 (물량, 규모 등)	검토 결과	검토 결과 판정	검사자		감리원 확인		비 고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의 방향 결정을 위해 일부 국가유산수리 내용을 시범적으로 축조하거나 채색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2. 검사자가 기술지도, 자문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술지도위원 또는 자문위원 등 모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4.3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국가유산수리명 :

구 조 물 명						
타 설 일 자						
타 설 부 위						
설 계 량 (m³)						
타 설 량 (m³)						
콘 크 리 트 배 합 종 류						
납 품 회 사						
타 설 방 법						
타 설 시 간						
타 설 시 온 도 (°C)						
시험결과	슬 럼 프 (cm)					
	공 기 량 (%)					
	염 분 량 (kg / m³)					
	28일압축강도(kg/cm²)					
시험자	수리업자	성 명				
		서 명				
	감리원	성 명				
		서 명				

작성요령

1. 슬럼프, 공기량과 28일강도 시험자가 다를 경우 슬럼프, 공기량 시험자는 상단에, 28일강도 시험자는 하단에 성명과 서명을 기재합니다.
2. 직접타설 : Mixer Truck으로부터 직접 받아 타설
3. Pump : Pump Car로 타설
4. 콘크리트 배합사레 : 25-210-08을 A1으로 할 경우, 25-210-12는 A2, 25-210-15는 A3 등으로 기재합니다.
19-240-08을 B1으로 할 경우, 19-240-12는 B2, 19-240-15는 B3 등으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4.4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국가유산수리명 :

타 설 일	타설위치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공 사 내 용	서 명

작성요령

1. 공사내용은 공사관리, 작업총괄, 레이콘 차량관리, 펌프카 노즐담당,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다짐, 거푸집 및 동바리 변형 감시, 콘크리트 마무리면 정리, 양생재 포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5장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

5.1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

국가유산수리명 :

검 측 요 청 서	
번호 :	20
받음 :	○○수리 상주감리원 ○○○
다음과 같은 세부공종에 대하여 검측요청 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및 공 종	
검 측 부 위	
검 측 요 구 일 시	
검 측 사 항	
붙임 : 수리업자의 검측 체크리스트, 시험성과, 수리업자의 야장 및 도면, 기술자등의 명단(실명부 첨부)	
수리업자	점 검 직 원 (인)
	현장대리인 (인)
검 측 결 과 통 보	
번호 :	20
받음 :	○○수리 현장대리인 ○○○
문서번호 ○○로 검측요청 한 건에 대하여 20 검측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검측결과	
2. 지시사항	
붙임 : 감리원의 검측 체크리스트	
	검측담당 감리원 (인)
	상주감리원 (인)

작성요령

1. 재검측시에는 붉은글씨로 “(재)” 를 우측상단에 작성합니다.
2. 수리업자가 재검측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성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2부 작성하여 수리업자, 감리원이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5.2 검측 체크리스트

국가유산수리명 :

공종 (품셈 기준)	목공사	위 치 및 부 위	X1-Y2열, X2-Y5열
공종 (세부공종)	기둥동바리이음	국 가 유 산 수 리 량	기둥 동바리 2개소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시방서 또는 도면)	검 사 결 과		조 치 사 항
		합 격	불 합 격	

수 리 업 자 점 검 일 자	년 월 일	점 검 직 원	(인)
공 종 (세부공종)	년 월 일	감 리 원	(인)

작성요령

1. 검사결과 상단은 수리업자 점검직원이, 하단은 감리원이 검사한 결과를 수치로 기록하고, 검사기준도 검사결과와 비교될 수 있도록 시방서 또는 도면 등에 있는 수치를 작성하며, 수치가 없는 검사항목은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있는 내용과 검사한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2. 매물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 작성하고,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관련 사진을 첨부합니다.
3.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각 공종별로 감리원과 협의하여 기재합니다.

제6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6.1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 · 결과 통보 내용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			
문 서 번 호		수 신	상주감리원
국가유산수리명		공 종	
품 명		규 격	
제 조 회 사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수 리 업 자 의 건			
첨 부	인 증 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자 등록증 <input type="checkbox"/> 카탈로그 <input type="checkbox"/> 공장등록증 <input type="checkbox"/> 시험성적서 <input type="checkbox"/> 납품실적 증명 <input type="checkbox"/> 시험성과 대비표 <input type="checkbox"/> 견 본 <input type="checkbox"/> 기 타 <input type="checkbox"/> _____		
특 기 사 항			
상기 자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오니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div>		담 당 자 현장대리인	(인) (인)

자재공급원 검토결과 통보서			
문 서 번 호		수 신	현장대리인
검 토 의 건			
판 정	적합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특 기 사 항	1. 공장방문 후 검토결과를 통보할 경우 해당 공장 방문 검사체크리스트 첨부 2. 자체시험 및 외부 의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 결과 치 기록 또는 시험성적서 첨부		
상기 검토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div>		검 토 감 리 원 상 주 감 리 원	(인) (인)

작성요령

1. 재검측시에는 붉은글씨로 “(재)” 를 우측상단에 작성합니다.
2. 수리업자가 재검측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성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2부 작성하여 수리업자, 감리원이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6.2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

국가유산수리명 :

해체부재 정 보	부 재 명							
	규 격							
	단 위							
	설 계 량							
해체 정보	해 체 일							
	해 체 량							
	재사용재 불용재							
해체 검수자(성명 및 서명)								
반입 정보	반 입 일							
	재사용재 불용재							
반입 검수자(성명 및 서명)								
재사용여부 확 정 (필요시)	검 토 일							
	재사용재 불용재							
	불 용 사 유							
재 사용 재 출 고	출 고 일							
	출 고 량							
재 사 용 재 잔 량								
출고 검수자(성명 및 서명)								

작성요령

1. 해체 후 작업장 반출 시까지는 현장대리인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감리원은 검측 등을 위한 현장방문 시마다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해체부재는 동일 기능의 부재라 하더라도 규격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구분하여 기록하되,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합한 수량은 해체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재사용재 기록 시 필요한 경우 완전재사용 부재와 부분수리 후 재사용 부재를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사용재란에 '완전재사용재(부분수리 후 재사용재)'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5. '재사용여부 확정'은 제38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체부재 재사용여부를 검토한 경우에 기록합니다.

6.3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국가유산수리명 :

반입부재 정 보	부 재 명							
	규 격							
	단 위							
	설 계 량							
반 입 일								
반 입 량								
합 격 량	금회							
	누계							
불 합 격	불 합 격 량							
	사 유							
반입 검수자(성명 및 서명)								
출 고 일								
출 고 량								
잔 량								
출고 검수자(성명 및 서명)								

작성요령

1.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시까지의 감리원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매 출고시마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6.4 해체부재 및 주요자재 총괄

국가유산수리명 :

설계정보	부재명							
	설계량							
	규격							
	단위							
해체부재 (재사용재)	출고일							
	금회출고량 누계							
	잔량							
신재 (주요자재)	출고일							
	금회출고량 누계							
	잔량							
해체부재 (불용재)	출고일							
	금회출고량 누계							
	잔량							
	출고목적							
	인수자 소속 및 성명							

작성요령

- '6.2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 및 '6.3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의 내용을 취합하여 기재합니다.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해체부재(불용재)의 출고목적은 '폐기', '보관'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가. 폐기 : 불용재 중 가치의 중요성을 분석하여 폐부재로 분류된 것. 별도의 인수자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나. 보관 : 불용재 중 가치의 중요성을 분석하여 보관부재로 분류된 것.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소유자, 박물관 등으로 이관되는 것을 말하며, 이관 시 인수자 소속,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합니다.

제7장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

7.1 설계변경 개요

○ 변 경 차 수 :

○ 변 경 일 자 :

※ 발주자의 승인일 표기(문화재청·광역자치체 등의 설계변경승인 대상인 경우 설계변경 승인일 표기, 단, 설계심사필 조건부승인인 경우 설계심사필 일자를 괄호안에 병기)

○ 주 요 변 경 내 용

공 종	수 량			국가유산수리비(천원)			변경사유	비고
	단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총 계	-	-	-				-	

7.2 현장 실정보고 현황

연 번	보 고 일 자 (문서 번호)	승 인 일 자 (문서 번호)	제 목	내 용	비고

7.3 기술검토 사항

연 번	보 고 일 (문서 번호)	제 목	내 용	비고

7.4 설계변경 관련 자문내용

연 번	자 문 일 시	참 석 자	회의결과	비고

작성요령

1. '제8장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중 설계변경과 관련있는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목 차

구 분	제 목	쪽
제 1 장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 목적	
1.2	국가유산수리 개요	
1.3	국가유산감리 개요	
1.4	국가유산실측설계 개요	
1.5	기술지도단	
1.6	위치도	
제 2 장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	
2.1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2.2	공종 및 년도별 추진실적	
2.3	설계변경 현황	
2.4	실정보고 처리현황	
2.5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현황	
2.6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2.7	하도급 현황	
2.8	감리 계약변경 현황	
2.9	감리원 투입현황	
제 3 장	검측 실적의 종합	
3.1	검측관리실적	
3.2	검측관리 종합분석	
제 4 장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4.1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4.2	시범시축 검사성과 총괄표	
4.3	품질시험 및 시범시축 검사 종합분석	

목 차

구 분	제 목	쪽
제 5 장	주요자재 관리실적의 종합	
5.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5.2	해체부재 및 주요자재 투입 등 현황	
5.3	해체부재 및 주요자재 관리 종합분석	
제 6 장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6.1	안전관리 조직도	
6.2	안전보건교육 현황	
6.3	안전점검 현황	
6.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총괄	
6.5	안전관리 종합분석	
제 7 장	공정별 기술검토 내용의 종합	
7.1	공정별 기술검토 현황	
7.2	주요 기술검토 내용	
제 8 장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8.1	자문회의 실적	
8.2	자문회의록	
제 9 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내용	
9.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성명 및 업무내용	
9.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성명 및 업무내용	
9.3	관계전문가 성명 및 업무내용	
제 10 장	종합분석 및 검사 실적의 종합	
제 11 장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제1장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 목적

- 국가유산정보
 - 지정번호 :
 - 국가유산명 :
 - 소재지 :
- 사업목적 :
- 사업지침 :

1.2 국가유산수리 개요

- 국가유산수리명 :
- 위 치 :
- 세부공종코드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세부공종별 부호코드 명기
- 사업개요 :
- 계약일자 :
- 국가유산수리기간 : 20 . . . ~ 20 . . . (일)
 - 중지기간 : 20 . . . ~ 20 . . . (일)
 - ※ 국가유산수리기간의 일수는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명기
-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 원)

총사업비	도급액	관급액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 낙찰률 :
- 수리업자 :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표기
- 현장대리인 :
- 계약내용 :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 수리 현장 조직 (예시)



1.3 국가유산감리 개요

- 계약 일 자 :
- 감 리 기 간 :
- 감 리 비 :
- 낙 찰 률 :
- 감 리 업 자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표기

○ 계약 내 용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 감 리 조 직 (예시)



[기술지원자]

구 분(담당분야)	성 명	기술자격 종목 및 번호

1.4 국가유산실측설계 개요

- 계약 일 자
- 용역 기간 :
- 설계비 :
- 실측설계업자 :
- 낙찰률 :
- 계약내용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표기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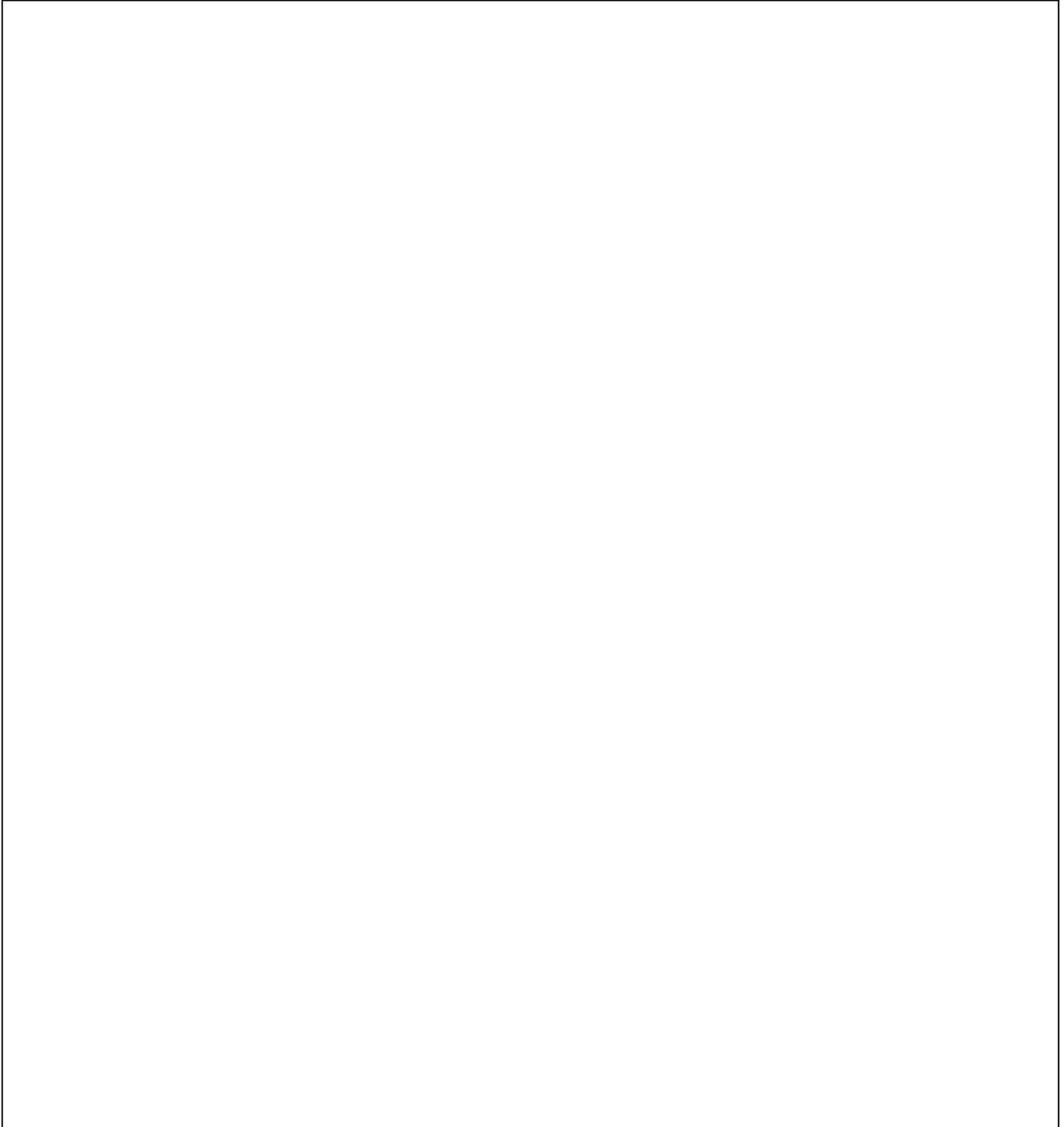
1.5 기술지도단

성명	소속 및 직위	전공	비고

※ 작성요령

1. 문화재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에 따른 기술지도 사업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비고란에는 기술지도단의 변경이 생긴 경우 위촉일 또는 해촉일을 기재합니다.

1.6 위치도



작성요령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작성되어 고시된 관련 **국가유산**의 지형도면을 활용하여 주변 **국가유산** 및 보호구역,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표시합니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 주변의 **국가유산**을 모두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적·천연기념물·지방기념물 등 **국가유산구역**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위치도의 축척을 달리하여 2종류 이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제2장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

2.1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년 (차	도 수)	구 분	기 성 및 준 공 금 액 (천 원)	검 사 일	검 사 자	비 고

2.2 공종 및 년도별 추진실적(예시)

(단위:천원)

구분 공종	단 위	전 체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가 설 공 사									
기 초 공 사									
목 공 사									
지 붕 공 사									
전 돌 공 사									
미 장 공 사									
창 호 공 사									
온 돌 공 사									
수 장 공 사									
석 공 사									
석 조 물 공 사									
단 청 공 사									
유구정비공사									
기 타 공 사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 경 공 사									
합 계									
순 공 사 비									
제 경 비									
공 급 가 액									
부 가 세									
총 계									

작성요령

1. 전체에서 **국가유산수리량**은 설계수량, **국가유산수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량**은 규격 등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능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국가유산수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2.3 설계변경 현황

(단위:천원)

변경 회 수 별	계 약 일 자	총 국가유산수리비 (도급액+관급자재비)	도 급 액	관급자재비	기타	설계변경 주요내용
당 초						

2.4 실정보고 처리현황

연 번	보 고 일 (문서번호)	승 인 일 (문서번호)	제 목	내 용

210mm×297mm[백상지 80g/m²]

2.5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현황

연 번	접 수 일	문 서 번 호	지 시 사 항	처 리 내 용

210mm×297mm[백상지 80g/㎡]

2.6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인력 투입 현황			장비 투입 현황			
직 종	투입인원 (인)	비 고	장 비 명	규 격	투입대수 (대)	비 고
보수기술자			백 호			
조경기술자			크레인			
보존과학기술자			...			
...						
한식목공(대목수)						
한식목공(소목수)						
한식석공(가공석공)						
한식석공(쌓기석공)						
화 공						
...						
보통인부						
비 계 공						
...						

210mm×297mm[백상지 80g/㎡]

2.7 하도급 현황

공종	하도급업자명				하도급금액 (천원)	하도급률 (%)	하도급 국가유산수 리기간	하도급업자 현장대리인
	상 호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전화번호				

작성요령

1. 하도급률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인의 도급액에 대한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 하도급업자 현장대리인란에는 자격종목과 번호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2.8 감리 계약변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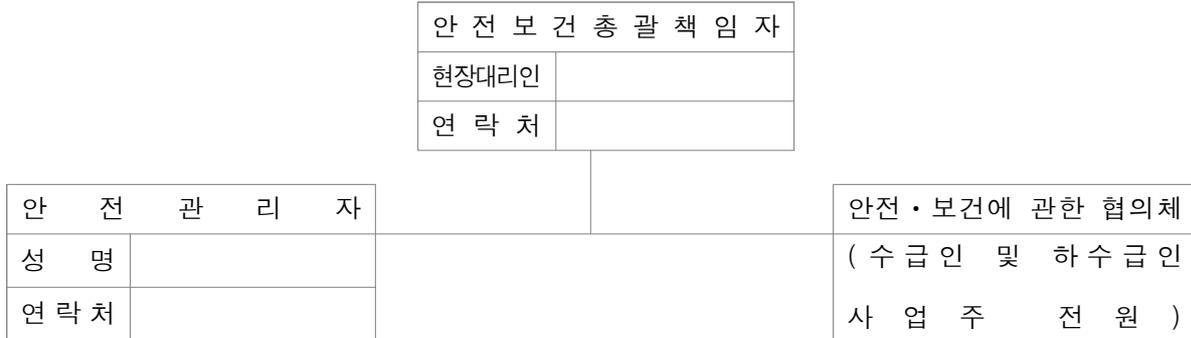
구 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변경 주요내용	비 고

2.9 감리원 투입현황

구 분	성 명	자격종목 및 번호	담당업무	배치기간	투입일수	비 고
상 주 감 리 원 보						
조 감 리 원						

제6장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6.1 안전관리 조직도(예시)



6.2 안전보건교육 현황

구 분	실시회수	교 육 인 원		비 고
		직 원	일용근로자	
계				
수 시 교 육				
정 기 교 육				
특 별 교 육				
외 부 교 육				

6.3 안전점검 현황

구 분	실 적(회)	비 고
계		
자 체 안 전 점 검		
정 기 안 전 점 검		
정 밀 안 전 점 검		
외 부 안 전 점 검		

6.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총괄

국가유산수리명		수리업자	
국가유산수리 소재지		대표자	
국가유산수리금액	천원	국가유산수리기간	20 . . . ~ 20 . . .
발주자		누계공정율	
계상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 계 사 용 금 액(원)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 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재해예방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계			
<p>「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제1장 1-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작성 자 직 책 성 명 (서명 또는 인)</p>			

6.5 안전관리 종합분석

-
-
-

제9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내용

9.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성명 및 업무내용

자 격 종 목 및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투입일수 (일)	업 무 내 용	현장대리인 확	감 리 원 인 확	비 고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투입일수 산정 시 투입기간에 **국가유산수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경우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실제 투입일수를 기재합니다. 하도급의 경우도 함께 기재합니다.
2. 중간감리보고서의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 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이 함께 확인하여 성명과 함께 서명합니다. 다만, 중감감리보고서 3.2 비교란에 '확인불가' 로 기재된 경우는 작성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비교에 명기합니다.
3. **중간감리보고서**의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 일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9.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성명 및 업무내용

자 격 종 목 및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투입일수 (일)	업 무 내 용	현장대리인 확	감 리 원 인 확	비 고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투입일수 산정 시 투입기간에 국가유산수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경우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실제 투입일수를 기재합니다. 하도급의 경우도 함께 기재합니다.
2. 중간감리보고서의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들의 명단 포함)' 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이 함께 확인하여 성명과 함께 서명합니다. 다만, 중감감리보고서 3.2 비교란에 '확인불가' 로 기재된 경우는 작성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비교에 명기합니다.
3. 중간감리보고서의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들의 명단 포함)' 일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9.3 관계전문가 성명 및 업무내용

소 속 및 위 적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업 무 내 용	현장대리인 확 인	감 리 원 인 확 인	비 고

작성요령

1. 기술지도, 기술검토, 자문 등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수리업자 및 감리업자 소속 직원을 제외한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내용을 기재합니다.

2.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요령

1. 점검개요

국가유산수리명			
발주자			
수리업자			
국가유산수리 착수일	20	국가유산수리 완료예정일	20
사업위치			
도급금액			
감독관	소속 :	성명 :	(인)
입회자	현장대리인	성명 :	(인)
사업개요			
검토자	소속 :	성명 :	(인)

2.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 고
가. 품질시험(시범시축) · 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 · 활용 여부		
나.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1) 주요자재의 검사포함 여부 2) 주요공정의 검사포함 여부 3)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범시축의 포함여부		
다. 관련 법령 · 규정, 품질시험계획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 확보 여부		
라.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시범시축) · 검사의 적기, 적정빈도 실시 여부		
마. 품질시험(시범시축) · 검사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바. 품질시험 · 검사 장비의 관리 여부 1)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 상태의 식별 표시 2) 검사장비 ·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적정관리		
사. 부적합품 및 부적합공정 처리 등의 적정 여부		

작성요령

- 이 기준은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 · 특성 · 중요도 등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추가 · 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고처리 보고서

수 신 : 감 독 관	분 류 기 호 :
참 조 :	제 출 년 월 일 :
발 신 : 감 리 원 ○ ○ ○ (서 명)	
국가유산수리명	
계 약 금 액 (천 원)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수리 착 수 년 월 일	
사 고 발 생 년 월 일	
최 근 공 정	
피 해 개 요	
복 구 대 책	
첨 부 서 류	피해 광경사진, 피해 내역서

기 성 부 분 검 사 원

상주감리원 경유 (인)

1. 국가유산수리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 약 연월일 :
5. 착 수 연월일 :
6. 준 공 기 한 :
7. 현 재 공 정 : 20 . . . 현재 %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 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국가유산수리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국가유산수리 전반에 걸쳐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 하

감리원 (기성부분 / 준공) 감리조서

국가유산수리명 :

20 년 월 일

와의 계약분

위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원으로 임명받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실시
감리를 한 결과 (제 회 기성부분 검사까지의) 국가유산수리 전반에 걸쳐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전체 국가유산수리의 (%가 기성 / 준공) 되었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상주감리원

(인)

귀 하

준 공 검 사 원

상주감리원 경유 (인)

1. 국가유산수리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 약 연월일 :
5. 착 수 연월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지준공년월일 : 20 . . . 현재 %
8.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국가유산수리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국가유산수리 전반에 걸쳐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 하

국가유산수리 완료 사전검토서

국가유산수리명			
회계연도 및 사업예산			
사업내용			
수리업자		도급금액	
준공예정일자	20 . . .	현장검토일자	20 . . .

국가유산수리 완료 사전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발 주 자 귀 하

구 분	조 사 내 용	확 인 결 과
설계도서검토	•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 적 합 [] 미 흡
기 타 사 항		
종 합 의 건		

현 황 사 진 ※ 검토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별지에 그 부위의 상세한 사진과 내용을 기입하여 별도로 작성

원 경	근 경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앞쪽)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경력증명		발급일		
	주 소				
자격사항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발급기관	
학력사항	졸업일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과정			교육기관
상훈사항	자격종목	연월일	종류	상훈 기관	근거
제재사항	자격종목	연월일	종류	제재 기관	근거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명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참여사업명	사업비	코드번호	발주자

- 해당 분야 종사기간(A=B+C) : 일
- 사무경력 수행기간(B) : 일
- 현장경력 수행기간(C) : 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수탁기관의 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		
	주소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계약구분	직책	발주자명	확인 연월일	확인 (발주자)
1							
2							
3							
4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	---

유의사항

-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 계약구분은 수의계약규모, 수의계약규모초과를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목 차

구 분	제 목	쪽
제 1 장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 개요	
1.2	국가유산수리 추진계획 및 실적	
1.3	부진공정 만회대책	
1.4	국가유산감리 개요	
1.5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1.6	기술지도단	
제 2 장	감리원 감리일지	
2.1	책임감리원 감리일지	
2.2	보조감리원 감리일지	
제 3 장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	
3.1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	
제 4 장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4.1	품질시험 · 검사대장	
4.2	시범시축 검사대장	
4.3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4.4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자 포함) 실명부	

목 차

구 분	제 목	쪽
제 5 장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	
5.1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	
5.2	검측 체크리스트	
제 6 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6.1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결과 통보 내용	
6.2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	
6.3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6.4	해체부재 및 주요자재 총괄	
제 7 장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	
7.1	설계변경 개요	
7.2	현장 실정보고 현황	
7.3	기술 검토 사항	
7.4	설계변경 관련 자문내용	
제 8 장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8.1	자문회의록	
8.2	국가유산수리 전후 사진	
제 9 장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제1장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 개요

- 국가유산수리명 :
- 위 치 :
- 사 업 종 류 :
- 사 업 개 요 :
- 계 약 일 자 :
- 착 수 일 자 :
- 완료 예정일자 :
- 총 사 업 비 : 천원

(단위 : 천원)

총 사 업 비	도 급 액	관 급 액	보 상 비	설 계 비	감 리 비

- 낙 찰 른 :
- 수 리 업 자 :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표기
- 현 장 대 리 인 :
- 계 약 내 용 :
 - ※ 작성요령
 -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 수 리 현 장 조 직 (예시)



1.3 부진공정 만회대책(예시)

- 부진공정 :
- 공정현황(20 . . . 현재)

구분	계획	실적	대비	비고
공정률 (%)				

- 부진사유

-

- 만회대책

-

1.4 국가유산감리 개요

- 계약일자 :
- 착수일자 :
- 완료예정일자 :
- 계약금액 :
- 낙찰률 :
- 감리업자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표기

- 계약내용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 감 리 조 직 (예시)



[기술지원자]

구 분(담당분야)	성 명	기술자격 종목 및 번호

1.5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등

-
-
-

1.6 기술지도단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 공	비고

※ 작성요령

1. 문화재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에 따른 기술지도 사업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비고란에는 기술지도단의 변경이 생긴 경우 위축일 또는 해축일을 기재합니다.

제2장 감리원 감리일지

2.1 책임감리원 감리일지

감리일지								
국가유산 수리명			연 월 일 (요일)			날씨	누계 공정	
주요 작업 상황	공종	단위	설계량	당 일		누계 작업량	공정 (%)	특이사항
					작업 위치	작업량		
국가유산 감리원 업무 수행 내용	성명	서명	주요 업무 수행 내용				지시사항	
관련 문서	업무 분류	문서 분류	공종 구분	위 치	제 목 (내 용 요 약)			
특이사항								

작성요령

1. 국가유산감리원은 본인의 업무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공사 추진 내용, 검측 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서명하여 현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2. 주요 작업 상황은 공사 추진 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한 업무 수행 내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3. 보조감리원의 감리일지를 보고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합니다.

2.2 보조감리원 감리일지

보조감리원 감리일지			
국가유산 수리명		연 월 일 (요일)	
		작 성 자	
		직 책	
		성 명	
		서 명	
확 인 자 : 책임감리원			(인)
시 간 대 별	업 무 내 용 (육 하 원 칩 에 의 거)		
특 이 사 항			

작성요령

1. 감리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메모하여 이를 업무종료 전에 육하 원칙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하고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업무일지 작성이후에 발생한 업무나 진행상황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날 확인을 받은 후 처리하되 감리일지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록하여야 합니다.
2. 감리원의 감리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작성지연으로 인한 책임감리원의 감리일지 작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성실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감리원은 검측업무 수행사항에 대한 검측부위, 검측시간, 검측내용, 검측결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에 대한 관련 문서번호, 구두로 시정명령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4. 감리원은 당일 처리한 문서번호, 검토내용 및 검토결과와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한 사항 및 지시받은 사항을 기록합니다.
5. 감리원은 현장점검 시 동행자 소속, 직책, 성명 등과 점검내용, 위치, 특정부위, 점검결과 등을 기록하고 현장점검 중 지적된 사항과 수리업자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6.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현장의 긴급상황, 조치사항, 도면검토, 구두협의 및 지시한 사항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직책, 성명 등을 기록하고, 구두지시 및 유선통화 내용은 감리원의 업무수행 근거자료이므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7. 감리원은 현장을 이탈하는 출장의 경우 시간, 목적지, 목적 등을 기록하고 업무협의 결과, 관련 문서번호 또는 명칭을 기록합니다. 다만, 현장 이탈 후 당일 복귀할 경우 당일 감리일지에 기록하고, 다음날 복귀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한 후 기재합니다.

○ 감 리 조 직 (예시)



* 자격 및 번호 병기
 * 변경된 경우 배치기간과 함께 병기

[기술지원자]

구 분(담당분야)	성 명	기술자격 종목 및 번호

1.5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등

-
-
-

1.6 기술지도단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 공	비고

※ 작성요령

1. 문화재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에 따른 기술지도 사업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비고란에는 기술지도단의 변경이 생긴 경우 위촉일 또는 해촉일을 기재합니다.

제3장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

3.1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국가유산수리명 :

공정	조사일	조사내용	조사자 (성명 및 서명)

작성요령

1.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외의 공정에 대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2. 조사내용란에는 파손정도, 부재관련 사항(재질, 색깔, 규격, 형태 등), 시공방법 등을 조사하여 국가유산 원형의 확인에 기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입합니다.
3. 조사자란에는 조사자 성명과 함께 서명합니다.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

3.2.1 (공 정 명) 시공 현황

- 시공내용 : 공정의 시공내용을 해체 또는 조립 등으로 기재합니다.
- 시공기간 :
- 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인)

작업일	작업위치 및 공종	작업내용	자격종목 및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기술자등의 서명	감리원인	비고
20								

작성요령

- 기술자등의 서명은 감리원이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 현장에서 실제 작업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수리업자가 참여를 확인한 경우에는 기술자등의 서명란에 확인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성과와 함께 서명하고, 감리원은 노임대장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원 확인란에 성과와 함께 서명합니다.(노임대장 등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비고란에 ‘확인불가’ 기재)
-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3.2.2 (공 정 명) 시공 현황

- 시공내용 : *공정의 시공내용을 해체 또는 조립 등으로 기재합니다.*
- 시공기간 :
- 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인)

작업일	작업위치 및 공종	작업내용	자격종목 및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기술자등의 서명	감리원인	비고
20								

작성요령

1. 기술자등의 서명은 감리원이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2. 현장에서 실제 작업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수리업자가 참여를 확인한 경우에는 기술자등의 서명란에 확인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성명과 함께 서명하고, 감리원은 노임대장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원 확인란에 성명과 함께 서명합니다.(노임대장 등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비고란에 ‘확인불가’ 기재)
3.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제4장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3쪽 중 1쪽)

4.1 품질시험 · 검사대장

국가유산수리명 :

일련 번호	년 월 일	시험 · 검 사구 분	재료	시험 · 검 사항목	시험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 · 검사자		감리원 확인		비 고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 자재별(콘크리트 타설은 4.2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및 4.3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 실명부에 별도 작성)로 기재합니다.
2. 시험성과표는 별도 기재합니다.
3. 비고란에는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 조치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4.2 시범시축 검사대장(필요시)

일련 번호	년 월 일	시축공종	시축내용 (물량, 규모 등)	검토 결과	검토 결과 판정	검사자		감리원 확인		비 고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의 방향 결정을 위해 일부 국가유산수리 내용을 시범적으로 축조하거나 채색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2. 검사자가 기술지도, 자문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술지도위원 또는 자문위원 등 모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4.3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국가유산수리명 :

구 조 물 명						
타 설 일 자						
타 설 부 위						
설 계 량 (m³)						
타 설 량 (m³)						
콘 크 리 트 배 합 종 류						
납 품 회 사						
타 설 방 법						
타 설 시 간						
타 설 시 온 도 (°C)						
시험결과	슬 럼 프 (cm)					
	공 기 량 (%)					
	염 분 량 (kg / m³)					
	28일압축강도(kg/cm²)					
시험자	수리업자	성 명				
		서 명				
	감리원	성 명				
		서 명				

작성요령

1. 슬럼프, 공기량과 28일강도 시험자가 다를 경우 슬럼프, 공기량 시험자는 상단에, 28일강도 시험자는 하단에 성명과 서명을 기재합니다.
2. 직접타설 : Mixer Truck으로부터 직접 받아 타설
3. Pump : Pump Car로 타설
4. 콘크리트 배합사레 : 25-210-08을 A1으로 할 경우, 25-210-12는 A2, 25-210-15는 A3 등으로 기재합니다.
19-240-08을 B1으로 할 경우, 19-240-12는 B2, 19-240-15는 B3 등으로 기재합니다.

4.4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국가유산수리명 :

타 설 일	타설위치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공 사 내 용	서 명

작성요령

1. 공사내용은 공사관리, 작업총괄, 레이콘 차량관리, 펌프카 노즐담당,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다짐, 거푸집 및 동바리 변형 감시, 콘크리트 마무리면 정리, 양생재 포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5장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

5.1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

국가유산수리명 :

검 측 요 청 서	
번호 :	20
받음 :	○○수리 책임감리원 ○○○
다음과 같은 세부공종에 대하여 검측요청 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및 공 종	
검 측 부 위	
검 측 요 구 일 시	
검 측 사 항	
붙임 : 수리업자의 검측 체크리스트, 시험성과, 수리업자의 야장 및 도면, 기술자등의 명단(실명부 첨부)	
수리업자	점 검 직 원 (인)
	현장대리인 (인)
검 측 결 과 통 보	
번호 :	20
받음 :	○○수리 현장대리인 ○○○
문서번호 ○○로 검측요청 한 건에 대하여 20 검측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검측결과	
2. 지시사항	
붙임 : 감리원의 검측 체크리스트	
	검측담당 감리원 (인)
	책임감리원 (인)

작성요령

1. 재검측시에는 붉은글씨로 “(재)” 를 우측상단에 작성합니다.
2. 수리업자가 재검측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성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2부 작성하여 수리업자, 감리원이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5.2 검측 체크리스트

국가유산수리명 :

공종 (품셈 기준)	목공사	위 치 및 부 위	X1-Y2열, X2-Y5열
공종 (세부공종)	기둥동바리이음	국 가 유 산 수 리 량	기둥 동바리 2개소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시방서 또는 도면)	검 사 결 과		조 치 사 항
		합 격	불 합 격	

수 리 업 자 점 검 일 자	년 월 일	점 검 직 원	(인)
공 종 (세부공종)	년 월 일	감 리 원	(인)

작성요령

1. 검사결과 상단은 수리업자 점검직원이, 하단은 감리원이 검사한 결과를 수치로 기록하고, 검사기준도 검사결과와 비교될 수 있도록 시방서 또는 도면 등에 있는 수치를 작성하며, 수치가 없는 검사항목은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있는 내용과 검사한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2. 매물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 작성하고,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관련 사진을 첨부합니다.
3.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각 공종별로 감리원과 협의하여 기재합니다.

제6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6.1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 · 결과 통보 내용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			
문 서 번 호		수 신	책임감리원
	국가유산수리명	공 종	
품 명		규 격	
제 조 회 사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수 리 업 자 의 견			
첨 부	인 증 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자 등록증 <input type="checkbox"/> 카탈로그 <input type="checkbox"/> 공장등록증 <input type="checkbox"/> 시험성적서 <input type="checkbox"/> 납품실적 증명 <input type="checkbox"/> 시험성과 대비표 <input type="checkbox"/> 견 본 <input type="checkbox"/> 기 타 <input type="checkbox"/> _____		
특 기 사 항			
상기 자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오니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div>		담 당 자 현장대리인	(인) (인)

자재공급원 검토결과 통보서			
문 서 번 호		수 신	현장대리인
검 토 의 견			
판 정	적합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특 기 사 항	1. 공장방문 후 검토결과를 통보할 경우 해당 공장 방문 검사체크리스트 첨부 2. 자체시험 및 외부 의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 결과 치 기록 또는 시험성적서 첨부		
상기 검토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div>		검 토 감 리 원 책 임 감 리 원	(인) (인)

작성요령

1. 재검측시에는 붉은글씨로 “(재)” 를 우측상단에 작성합니다.
2. 수리업자가 재검측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성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2부 작성하여 수리업자, 감리원이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6.2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

국가유산수리명 :

해체부재 정 보	부 재 명							
	규 격							
	단 위							
	설 계 량							
해체 정보	해 체 일							
	해 체 량							
	재사용재 불용재							
해체 검수자(성명 및 서명)								
반입 정보	반 입 일							
	재사용재 불용재							
반입 검수자(성명 및 서명)								
재사용여부 확 정 (필요시)	검 토 일							
	재사용재 불용재							
	불 용 사 유							
재 사용 재 출 고	출 고 일							
	출 고 량							
재 사 용 재 잔 량								
출고 검수자(성명 및 서명)								

작성요령

1. 해체 후 작업장 반출 시까지는 현장대리인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감리원은 검측 등을 위한 현장방문 시마다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해체부재는 동일 기능의 부재라 하더라도 규격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구분하여 기록하되,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합한 수량은 해체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재사용재 기록 시 필요한 경우 완전재사용 부재와 부분수리 후 재사용 부재를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사용재란에 '완전재사용재(부분수리 후 재사용재)'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5. '재사용여부 확정'은 제3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체부재 재사용여부를 검토한 경우에 기록합니다.

6.3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국가유산수리명 :

반입부재 정 보	부 재 명							
	규 격							
	단 위							
	설 계 량							
반 입 일								
반 입 량								
합 격 량	금회							
	누계							
불 합 격	불 합 격 량							
	사 유							
반입 검수자(성명 및 서명)								
출 고 일								
출 고 량								
잔 량								
출고 검수자(성명 및 서명)								

작성요령

1.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시까지의 감리원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매 출고시마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6.4 해체부재 및 주요자재 총괄

국가유산수리명 :

설계정보	부재명							
	설계량							
	규격							
	단위							
해체부재 (재사용재)	출고일							
	금회출고량							
	누계 잔량							
신재 (주요자재)	출고일							
	금회출고량							
	누계 잔량							
해체부재 (불용재)	출고일							
	금회출고량							
	누계 잔량							
	출고목적							
	인수자 소속 및 성명							

작성요령

1. '6.2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 및 '6.3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의 내용을 취합하여 기재합니다.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해체부재(불용재)의 출고목적은 '폐기', '보관'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가. 폐기 : 불용재 중 가치의 중요성을 분석하여 폐부재로 분류된 것. 별도의 인수자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나. 보관 : 불용재 중 가치의 중요성을 분석하여 보관부재로 분류된 것.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소유자, 박물관 등으로 이관되는 것을 말하며, 이관 시 인수자 소속,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합니다.

제7장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

7.1 설계변경 개요

○ 변경 차 수 :

○ 변경 일자 :

※ 발주자의 승인일 표기(문화재청·광역지자체 등의 설계변경승인 대상인 경우 설계변경 승인일 표기, 단, 설계심사필 조건부승인인 경우 설계심사필 일자를 괄호안에 병기)

○ 주요 변경 내용

공 종	수 량			국가유산수리비(천원)			변경사유	비고
	단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총 계	-	-	-				-	

7.2 현장 실정보고 현황

연 번	보 고 일 자 (문서 번호)	승 인 일 자 (문서 번호)	제 목	내용	비고

7.3 기술검토 사항

연 번	보 고 일 (문서 번호)	제 목	내용	비고

7.4 설계변경 관련 자문내용

연 번	자 문 일 시	참 석 자	회의결과	비고

작성요령

1. '제8장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중 설계변경과 관련있는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목 차

구 분	제 목	쪽
제 1 장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 목적	
1.2	국가유산수리 개요	
1.3	국가유산감리 개요	
1.4	국가유산실측설계 개요	
1.5	기술지도단	
1.6	위치도	
제 2 장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	
2.1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2.2	공종 및 년도별 추진실적	
2.3	설계변경 현황	
2.4	실정보고 처리현황	
2.5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현황	
2.6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2.7	하도급 현황	
2.8	감리 계약변경 현황	
2.9	감리원 투입현황	
제 3 장	검측 실적의 종합	
3.1	검측관리실적	
3.2	검측관리 종합분석	
제 4 장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4.1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4.2	시범시축 검사성과 총괄표	
4.3	품질시험 및 시범시축 검사 종합분석	

목 차

구 분	제 목	쪽
제 5 장	주요자재 관리실적의 종합	
5.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5.2	해체부재 및 주요자재 투입 등 현황	
5.3	해체부재 및 주요자재 관리 종합분석	
제 6 장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6.1	안전관리 조직도	
6.2	안전보건교육 현황	
6.3	안전점검 현황	
6.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총괄	
6.5	안전관리 종합분석	
제 7 장	공정별 기술검토 내용의 종합	
7.1	공정별 기술검토 현황	
7.2	주요 기술검토 내용	
제 8 장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8.1	자문회의 실적	
8.2	자문회의록	
제 9 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내용	
9.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성명 및 업무내용	
9.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성명 및 업무내용	
9.3	관계전문가 성명 및 업무내용	
제 10 장	종합분석 및 검사 실적의 종합	
제 11 장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제1장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 목적

- 국가유산정보
 - 지정번호 :
 - 국가유산명 :
 - 소재지 :
- 사업목적 :
- 사업지침 :

1.2 국가유산수리 개요

- 국가유산수리명 :
- 위치 :
- 세부공종코드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세부공종별 부호코드 명기
- 사업개요 :
- 계약일자 :
- 국가유산수리기간 : 20 . . . ~ 20 . . . (일)
 - 중지기간 : 20 . . . ~ 20 . . . (일)
 - ※ 국가유산수리기간의 일수는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명기
-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 원)

총사업비	도급액	관급액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 낙찰율 :
- 수리업자 :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표기
- 현장대리인 :
- 계약내용 :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 수리 현장 조직 (예시)



*자격 및 번호 병기
*준공 기준으로 작성

1.3 국가유산감리 개요

- 계약 일자 :
- 감리 기간 :
- 감리비 :
- 낙찰률 :
- 감리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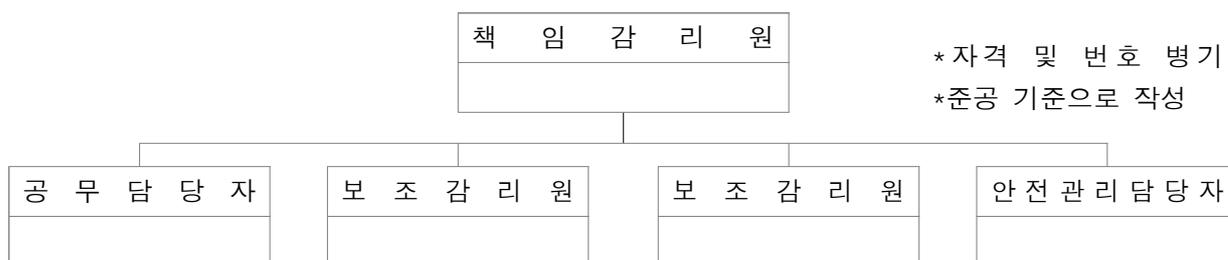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표기

○ 계약 내용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 감리 조직 (예시)



*자격 및 번호 병기
*준공 기준으로 작성

[기술지원자]

구분(담당분야)	성명	기술자격 종목 및 번호

1.4 국가유산실측설계 개요

- 계약 일 자
- 용 역 기 간 :
- 설 계 비 :
- 실 측 설 계 업 자 :
- 낙 찰 료 :
- 계 약 내 용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을 표기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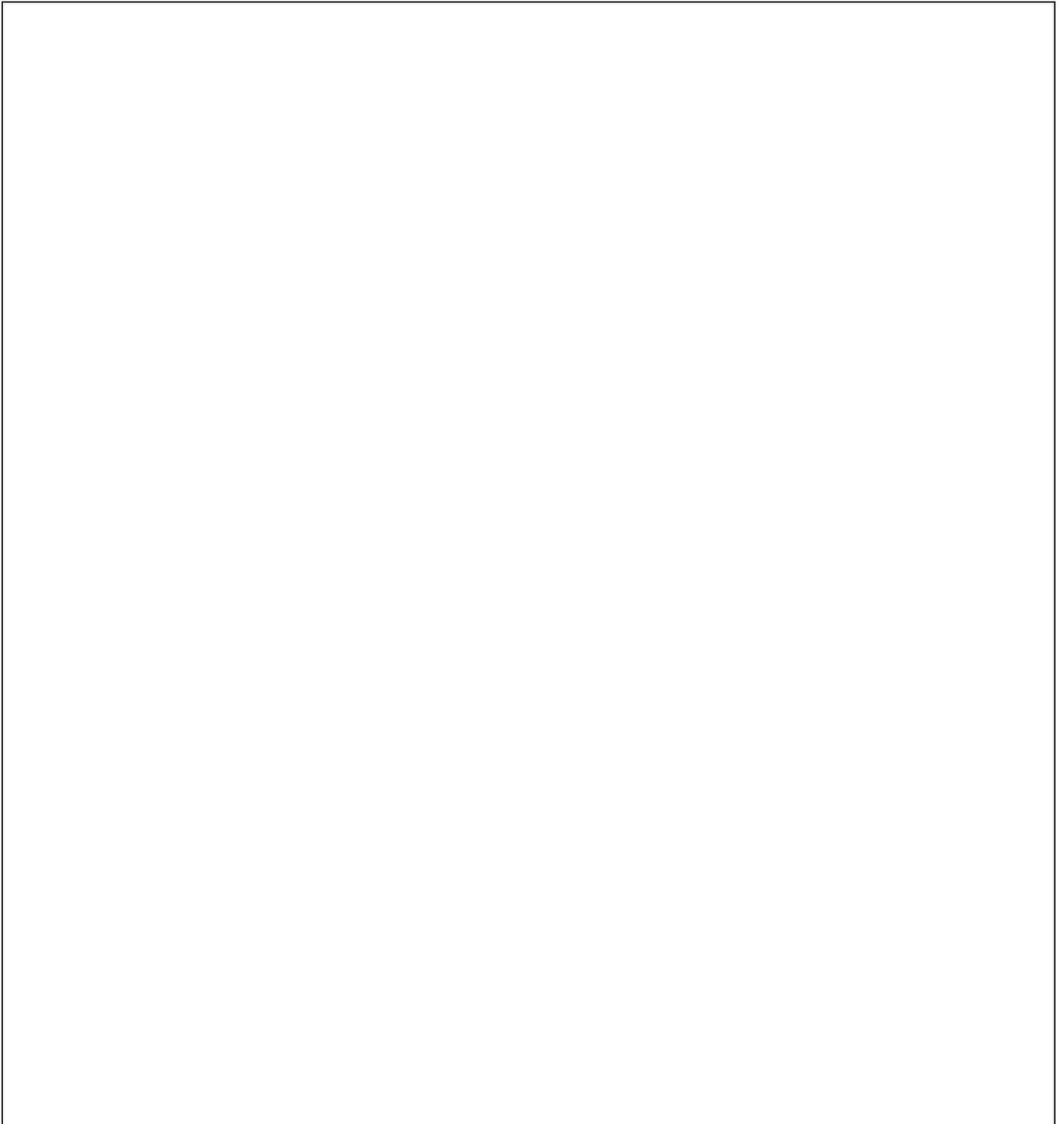
1.5 기술지도단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 공	비 고

※ 작성요령

1. 문화재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에 따른 기술지도 사업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비고란에는 기술지도단의 변경이 생긴 경우 위촉일 또는 해촉일을 기재합니다.

1.6 위치도



작성요령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작성되어 고시된 관련 **국가유산**의 지형도면을 활용하여 주변 **국가유산** 및 보호구역,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표시합니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 주변의 **국가유산**을 모두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적·천연기념물·지방기념물 등 **국가유산구역**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위치도의 축척을 달리하여 2종류 이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

2.1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년 (차	도 수)	구 분	기 성 및 준 공 금 액 (천 원)	검 사 일	검 사 자	비 고

2.2 공종 및 년도별 추진실적(예시)

(단위:천원)

구분	단위	전체		20년도(1차)		20년도(2차)		20년도(3차)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국가유산수리량	국가유산수리비
가설공사									
기초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합계									
순공사비									
제경비									
공급가액									
부가세									
총계									

작성요령

1. 전체에서 국가유산수리량은 설계수량, 국가유산수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량은 규격 등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능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국가유산수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2.3 설계변경 현황

(단위:천원)

변경 회 수 별	계 약 일 자	총 국가유산수리비 (도급액+관급자재비)	도 급 액	관급자재비	기타	설계변경 주요내용
당 초						

2.4 실정보고 처리현황

연 번	보 고 일 (문서번호)	승 인 일 (문서번호)	제 목	내 용

2.5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현황

연 번	접 수 일	문 서 번 호	지 시 사 항	처 리 내 용

2.6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인 력 투 입 현 황			장 비 투 입 현 황			
직 종	투입인원 (인)	비 고	장 비 명	규 격	투입대수 (대)	비 고
보수기술자			백 호			
조경기술자			크레인			
보존과학기술자			...			
...						
한식목공(대목수)						
한식목공(소목수)						
한식석공(가공석공)						
한식석공(쌓기석공)						
화 공						
...						
보통인부						
비 계 공						
...						

2.7 하도급 현황

공 종	하도급업자명				하도급금액 (천원)	하도급률 (%)	하도급 국가유산수 리기간	하도급업자 현장대리인
	상 호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전화번호				

작성요령

1. 하도급률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인의 도급액에 대한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 하도급업자 현장대리인란에는 자격종목과 번호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2.8 감리 계약변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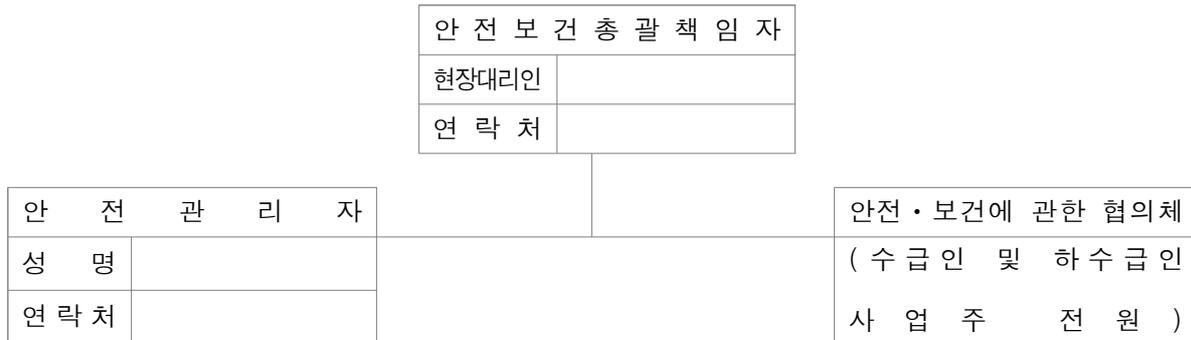
구 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변경 주요내용	비 고

2.9 감리원 투입현황

구분	성명	자격종목 및 번호	담당업무	배치기간	투입일수	비고
책 임 감 리 원						
보 조 감 리 원						

제6장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6.1 안전관리 조직도(예시)



6.2 안전보건교육 현황

구분	실시회수	교육인원		비고
		직원	일용근로자	
계				
수시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외부교육				

6.3 안전점검 현황

구분	실적(회)	비고
계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외부안전점검		

6.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총괄

국가유산수리명		수리업자	
국가유산수리소재지		대표자	
국가유산수리금액	천원	국가유산수리기간	20 . . . ~ 20 . . .
발주자		누계공정율	
계상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 계 사 용 금 액(원)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 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 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계			
<p>「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제1장 1-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p>			

6.5 안전관리 종합분석

○

○

○

제9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내용

9.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성명 및 업무내용

자 격 종 목 및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투입일수 (일)	업 무 내 용	현장대리인 확 인	감 리 원 인	비 고

작성요령

-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투입일수 산정 시 투입기간에 국가유산수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경우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실제 투입일수를 기재합니다. 하도급의 경우도 함께 기재합니다.
- 2. 중간감리보고서의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 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이 함께 확인하여 성명과 함께 서명합니다. 다만, 중간감리보고서 3.2 비교란에 ‘확인불가’ 로 기재된 경우는 작성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비교에 명기합니다.
- 3. 중간감리보고서의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 일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4.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9.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성명 및 업무내용

자 격 종 목 및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투 입 일 수 (일)	업 무 내 용	현 장 대 리 인 확	감 리 원 인 확	비 고

작성요령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투입일수 산정 시 투입기간에 국가유산수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경우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실제 투입일수를 기재합니다. 하도급의 경우도 함께 기재합니다.
2. 중간감리보고서의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 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이 함께 확인하여 성명과 함께 서명합니다. 다만, 중감감리보고서 3.2 비교란에 '확인불가' 로 기재된 경우는 작성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비교에 명기합니다.
3. 중간감리보고서의 '3.2 국가유산수리 현황(기술자등의 명단 포함)' 일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9.3 관계전문가 성명 및 업무내용

소속 및 위 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업무내용	현장대리인 확인	감리원인 확인	비고

작성요령

1. 기술지도, 기술검토, 자문 등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수리업자 및 감리업자 소속 직원을 제외한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내용을 기재합니다.
2.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요령

1. 점검개요

국가유산수리명			
발주자			
수리업자			
국가유산수리 착수일	20	국가유산수리 완료예정일	20
사업위치			
도급금액			
감독관	소속 :	성명 :	(인)
입회자	현장대리인	성명 :	(인)
사업개요			
검토자	소속 :	성명 :	(인)

2.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 고
가. 품질시험(시범시축) · 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 · 활용 여부		
나.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1) 주요자재의 검사포함 여부 2) 주요공정의 검사포함 여부 3)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범시축의 포함여부		
다. 관련 법령 · 규정, 품질시험계획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 확보 여부		
라.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시범시축) · 검사의 적기, 적정빈도 실시 여부		
마. 품질시험(시범시축) · 검사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바. 품질시험 · 검사 장비의 관리 여부 1)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 상태의 식별 표시 2) 검사장비 ·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적정관리		
사. 부적합품 및 부적합공정 처리 등의 적정 여부		

작성요령

- 이 기준은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 · 특성 · 중요도 등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추가 · 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 성 부 분 검 사 원

책임감리원 경유 (인)

1. 국가유산수리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 약 연월일 :
5. 착 수 연월일 :
6. 준 공 기 한 :
7. 현 재 공 정 : 20 . . . 현재 %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 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국가유산수리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국가유산수리 전반에 걸쳐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 하

감리원 (기성부분 / 준공) 감리조서

국가유산수리명 :

20 년 월 일

와의 계약분

위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원으로 임명받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실시
감리를 한 결과 (제 회 기성부분 검사까지의) 국가유산수리 전반에 걸쳐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전체 국가유산수리의 (%가 기성 / 준공) 되었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책임감리원 (인)

귀 하

준 공 검 사 원

책임감리원 경유 (인)

1. 국가유산수리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 약 연월일 :
5. 착 수 연월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지준공년월일 : 20 . . . 현재 %
8.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국가유산수리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국가유산수리 전반에 걸쳐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 하

국가유산수리관리관 업무수행 기록부

사업부서의 장

국가유산수리명 :

일자/시간	업무수행사항	지시 또는 중요사항 (현장실정 등)	면담자 (직/성명)

작성요령

1.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 관련 업무수행사항이 있을 때만 작성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별도로 기록을 유지합니다.
2. 담당 국가유산수리가 여러 건 일 경우 현장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가유산수리관리관 입회확인서

사업부서의 장

국가유산수리명 :

점검항목	확인여부		비 고
	확인	미 확인	
•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해서 감리원이 검측한 내용을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를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 시공이 완료되어 검사 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해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기초부 지정, 석축 및 성곽의 뒷채움, 지붕 내부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를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를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을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 완료된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해서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 국가유산수리 중에 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를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 폐품 또는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를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를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 채취장 포함)을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앞쪽)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경력증명	발급일			
	주 소				
자격사항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발급기관	
학력사항	졸업일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과정		교육기관	
상훈사항	자격종목	연월일	종류	상훈 기관	근거
제재사항	자격종목	연월일	종류	제재 기관	근거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명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참여사업명	사업비	코드번호	발주자

- 해당 분야 종사기간(A=B+C) : 일
- 사무경력 수행기간(B) : 일
- 현장경력 수행기간(C) : 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수탁기관의 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		
	주소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계약구분	직책	발주자명	확 인 연월일	확 인 (발주자)
1							
2							
3							
4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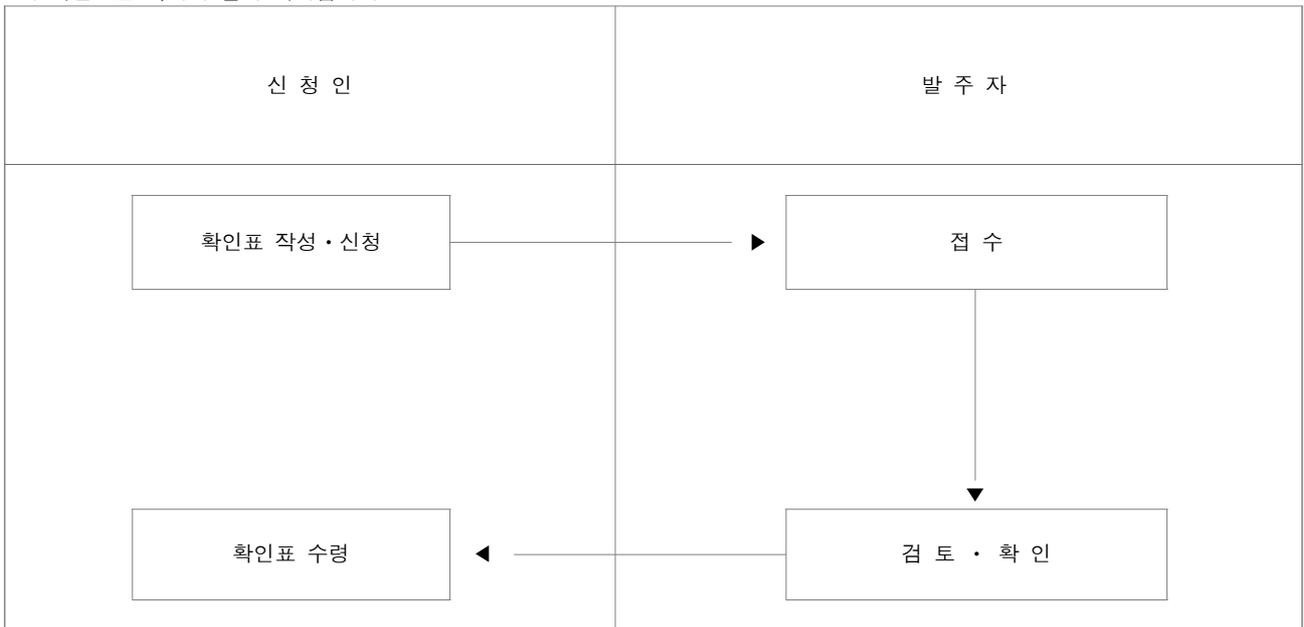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계약구분은 수의계약규모, 수의계약규모초과를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처 리 절 차

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

접수번호		판정결과	
------	--	------	--

1. 프로그램명

2. 요건심사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지표	판정여부
필수자격	목적의 부합성	문화유산을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인가?	적합 <input type="checkbox"/> 미흡 <input type="checkbox"/>
	구성의 적절성	특정 학습자층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이 80분 이상 진행되는 프로그램인가?	적합 <input type="checkbox"/> 미흡 <input type="checkbox"/>
	운영여부	개발된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최소 1회 이상 운영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인가?	적합 <input type="checkbox"/> 미흡 <input type="checkbox"/>
	기타자격	공고문에 제시된 신청 제외 조건에 해당되는 점은 없는 프로그램인가?	적합 <input type="checkbox"/> 미흡 <input type="checkbox"/>
자료구비	자료의 구성도	공고문에 제시된 인증신청을 위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인가?	적합 <input type="checkbox"/> 미흡 <input type="checkbox"/>
	자료의 충실성	문화유산교육 관련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된 프로그램인가?	적합 <input type="checkbox"/> 미흡 <input type="checkbox"/>

3. 요건심사 의견

- 요건심사는 조사 가능한 자료 구비 여부에 대한 검토이며, 인증 프로그램으로서의 필수자격에 대한 판정 과정으로 적합, 미흡으로 판정합니다. 제출한 신청서 내용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판정을 위한 평가자료는 위와 같으며, 평가요소별 판정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현장심사표

접수번호		판정결과	
------	--	------	--

1. 현장심사 개요

프로그램명			
심사 일시			심사 장소
인증조사위원	성명	(서명)	
	소속 및 직책		

2. 현장심사 검토사항

3. 현장심사 확인사항

4. 종합심사 상정 여부에 대한 의견

- 현장심사 검토사항은 서류상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학습 대상 **문화유산**에 대한 영향 확인, 기타 현장 확인 필요 사항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현장심사 확인사항은 현장심사 검토사항에 대응한 결과를 명료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종합심사 상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현장심사를 바탕으로 종합심사 상정 여부에 대한 조사위원의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

접수번호		판정결과	
------	--	------	--

1. 프로그램명

2. 종합심사

위 프로그램이 다음 5개의 평가영역, 13개의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해당 평가 등급에 ‘○’ 표 하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총평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프로그램 목표 (10점)	1-1. 목표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목표가 문화유산 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9	8	7	6
2. 프로그램 내용 (30점)	2-1. 지역 문화의 특성 반영 및 기여 정도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역문화유산 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10	9	8	7	6
	2-2. 학습자의 요구반영 및 특성 고려	프로그램의 내용이 문화유산 가치 습득에 필요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발달단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10	9	8	7	6
	2-3. 학습 기대효과	학습자의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과 민족정체성 확립에 미칠 영향 및 효과를 명료하게 제시하는가?	10	9	8	7	6
3. 프로그램 구성 (25점)	3-1. 교수·학습 방법의 적정성	교수·학습 방법이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는가?	10	9	8	7	6
	3-2.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프로그램은 목표와 내용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0	9	8	7	6
	3-3. 프로그램의 완성도	프로그램의 방법과 구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는가?	5	4	3	2	1
4. 운영자원 관리	4-1. 인력확보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인력의 역량향상을 위해 보수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가?	10	9	8	7	6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점)	4-2. 참여자 확보	프로그램 홍보, 참여유도 등 참여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5	4	3	2	1
	4-3. 예산확보 및 평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예산확보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5	4	3	2	1
5. 교육환경 (15점)	5-1. 교재 및 교구	프로그램 내용과 특성에 맞는 풍부한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고 있는가?	5	4	3	2	1
	5-2. 교육장소	(대면) 1. 프로그램 내용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장소(강의실, 야외시설 등)를 확보/섭외 또는 계획하고 있는가?	5	4	3	2	1
		(비대면) 1. 자체기자재 활용 : 비대면 교육 운영시 필요한 접속 환경 및 관련 기자재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등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2. 장소/기자재 임차 : 비대면 교육 영상을 안정적으로 송출/촬영할 수 있는 장소/기자재 임차 계획을 확보하고 있는가?					
5-3. 안전관리	(대면) 1.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계획(비상연락망, 교구재의 정확한 숙지, 참여자의 건강확인, 보험가입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2. 교육장소에 대하여 소방시설, 비상대피로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교육 참여자에게 교육 관련 주의사항 및 안전교육(안전수칙, 답사코스) 등을 안내하고 있는가? (비대면) 1. 비대면 교육운영 중 오류 발생 시 적절한 대처방안(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가? 2. 사전에 교육 참여자의 접속환경을 확인하고,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 및 배포하였는가?	5	4	3	2	1	

※ 아래 공란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총평 및 추가 보완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인증심의위원	성명	(서명)
	소속 및 직책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

접수번호		판정결과	
------	--	------	--

1. 프로그램명

2. 종합심사 최종결과

평가영역	구분 평가요소	평가위원(인원수에 따라 추가)							총점 (최고, 최저점 제외)	평균	비고
		A	B	C	D	E	F	G			
1. 프로그램 목표 (10점)	1-1. 목표의 타당성										
	소 계										
2. 프로그램 내용 (30점)	2-1. 지역 문화의 특성 반영 및 기여 정도										
	2-2. 학습자의 요구반영 및 특성고려										
	2-3. 학습 기대효과										
	소 계										
3. 프로그램 구성 (25점)	3-1. 교수 및 학습 방법의 적정성										
	3-2.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3-3. 프로그램 구성의 계열성										
	소 계										
4. 운영자원 관리 (20점)	4-1. 인력확보 및 관리										
	4-2. 참여자확보										
	4-3. 예산확보 및 평가										
	소 계										
5. 교육환경 (15점)	5-1. 교재 및 교구										
	5-2. 교육장소										
	5-3. 안전관리										
	소 계										
합 계(100점)											

[별표 1]

감리원 배치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총감리원수

가. 책임감리

국가유산수리비 (억원)	평균감리기간 (개월)	총감리원수(인·월)		
		단순	보통	복잡
30	20	29	32	35
40	22	34	38	42
50	24	40	44	48
70	27	49	54	59
100	31	61	68	75
150	37	80	89	98
200	41	96	107	118
300	48	126	140	154

※ 주 :

- 1) 20억원 미만 국가유산수리(보통)의 총감리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복잡인 경우 해당 총감리원수에 10%를 가산하고, 단순인 경우 10%를 감한다.

$$y = 3.5626x^{0.6422} \quad * x : \text{해당 국가유산수리비(억원)} \quad y : \text{총감리원수}$$

- 2) 평균감리기간은 국가유산수리 완료 후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검토기간 2개월을 포함한다.

나. 상주감리

국가유산수리비 (억원)	평균감리기간 (개월)	총감리원수(인·월)		
		단순	보통	복잡
20	15	15	16	18
30	18	19	21	23
40	20	23	25	28
50	22	26	29	32
70	25	32	36	40
100	29	41	45	50
150	35	53	59	66
200	39	64	71	79
300	46	83	93	103

※ 주 :

- 1) 20억원 미만 국가유산수리(보통)의 총감리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복잡인 경우 해당 총감리원수에 10%를 가산하고, 단순인 경우 10%를 감한다.

$$y = 2.307x^{0.647} \quad * x : \text{해당 국가유산수리비(억원)} \quad y : \text{총감리원수}$$

2. 감리원수 산정방법

가. 국가유산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총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나. 발주자는 상주감리를 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로서 종류별로 감리원을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종류별로 구분·산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2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종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1명 이상을 계속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감리원수의 범위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조정된 감리원의 수가 영 제22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 1)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 2) 신기술·특수공법이 포함된 국가유산수리
- 3) 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수리
- 4) 중요유산에 대하여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수리

라. 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 1)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완료 후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각각 1개월 범위 내에서 감리업무 수행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완료 후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검토기간 2개월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발주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감리기간이 '1.'의 평균감리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에 따른 총감리원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총감리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 후의 총감리원수에서 ‘마.’에 따른 기술지원자를 제외한 감리원수는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감리원수 이상이어야 한다.

$$\text{총감리원수} = A + [(T-t) \times (A \div t)]$$

* A : ‘1’에 따라 산정한 총감리원수

* T : 해당 감리기간(월), t : 평균 감리기간(월)

마. 기술지원자의 비율은 총감리원수의 단순은 3퍼센트, 보통은 5퍼센트, 복잡은 1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에 따라 발주자가 조정·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술지원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바.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는 단순, 보통 및 복잡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지정유산 수리*	주변정비**	비고
단순		① 목조건축물의 부분 해체·보수 * 산자이상 해체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보수 (지붕 번외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함) * 목조건축물의 단일 공종 보수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등)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소규모 평석교, 승탑, 석조의 부분 해체보수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고 단일공종의 경우 ③ 도로, 담장(꽃담, 궁담 제외), 석축, 단순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 등의 정비	
보통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산자이상 해체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보수 (지붕 번외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함) * 목조건축물 단일 공종 보수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등)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소규모 평석교, 승탑, 석조의 일부 해체보수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5량가 이상 :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보수 * 5량가 미만(주심포, 다포 제외) : 전면해체보수, 신축, 복원, 이전 *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 (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와 지붕공사) * 화장실이나 부속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해체보수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흥예의 부분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전 석탑, 전탑 등 석	

구분	지정유산 수리*	주변정비**	비고
	<p>고 단일공종인 경우</p> <p>③ 국가유산수리업*** 1종이 수리할 수 있는 국가유산수리</p> <p>④ 도로, 담장, 석축,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의 정비</p>	<p>조물의 부분 해체보수</p> <p>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완전 해체보수</p> <p>*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 공종일 경우</p> <p>③ 꽃담·궁담공사, 식재와 연못조성 등 전통기법에 의한 조경공사</p> <p>④ 전문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주변정비 시설 : 담장공사 - 꽃담, 궁담</p> <p>⑤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식재와 연못조성 등 전통기법에 의한 조경시설 중 복합공종</p> <p>⑥ 국가유산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국가유산수리</p>	
복잡	<p>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p> <p>*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보수</p> <p>*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 (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와 지붕공사)</p> <p>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p> <p>*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 해체보수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홍예의 부분 해체보수</p> <p>*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해체보수</p> <p>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완전 해체보수</p> <p>*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공종일 경우</p> <p>③ 국가유산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국가유산수리</p> <p>④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신축, 복원, 이전</p> <p>⑤ 특수한 양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p>	<p>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p> <p>* 연목이상 해체보수하는 경우로 도리와 공포까지 보수하는 경우</p> <p>* 익공계, 주심포, 다포계 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p> <p>② 성곽, 탑 등 석조물</p> <p>* 성곽 :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 홍예의 전면 해체보수</p> <p>*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전면 해체보수</p> <p>③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신축, 복원, 이전</p> <p>④ 특수한 양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p>	

*. '지정유산 수리'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 '주변정비'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 '국가유산수리업'이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중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외공사업'을 말한다.

※ 주 :

- 1)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외에도 전통양식으로 하는 경우는 동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2) 단순·보통·복잡 국가유산수리가 동일한 현장인 경우 최상위 난이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별표 2]

직접경비 산출방법(제10조 관련)

1. 감리원의 주재비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30퍼센트를 적용하되, 도서지역·산간벽지의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발주자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기술지원자의 출장여비

기술지원자 직접인건비의 20퍼센트를 적용하되, 출장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3. 현지 차량운행비

가. 발주자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여부를 정하되, 적용하는 경우 차량의 종류 및 대수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국가유산수리비	차량대수	차량의 종류
500억원 미만	1	· 승용차 : 배기량 2,000cc이하 · 승합차 : 배기량 3,000cc이하

나. 적용 시 차량운행비용은 다음 표에 따라 산정한다.

구분	산정일수	시간당 손료계수 (상각비·정비비·관리비)	재료비	
			주연료	잡품
승용차	22일/월	$1,547 \times 10^{-7}$	휘발유 10ℓ/일	주연료비의 10%
승합차	22일/월	$1,319 \times 10^{-7}$	경유 10ℓ/일	주연료비의 10%

4. 현지 사무원 급료

발주자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정하되,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국가유산수리비	보통인부	비고
500억원 미만	1인	· 22일/월 기준 · 상여금 400% · 퇴직적립금 100% 적용
※ 주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의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5. 보고서 등 인쇄비

각종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및 설계변경도서 등의 인쇄비로서 발주자가 인쇄횟수, 면수, 부수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예시 1] 책임감리 시 대가산정의 예

○ 국가유산수리비 50억원인 경우(복잡 국가유산수리)

- 총감리원수 48인·월, 감리기간 24개월(준공 후 수리보고서 검토 기간 2개월 포함)

1. 직접인건비 <총감리원수 × 고급기술자 월임금액>

$$48인 \cdot 월 \times (219,469원 \times 22일) = 231,759,264원$$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 120% > (115%)

$$231,759,264원 \times 115\% = 266,523,154원$$
3.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30%)

$$(231,759,264원 + 266,523,154) \times 30\% = 149,484,725원$$
4. 직접경비(가+나+다+라+마) = 164,725,894원
 - 가. 감리원의 주재비(직접인건비의 30%)

$$-(231,759,264원 \times 90\%) \times 30\% = 62,575,001원$$
 - 나. 기술지원자의 출장비(기술지원자 직접인건비의 20%)

$$-(231,759,264원 \times 10\%) \times 20\% = 4,635,185원$$
 - 다. 현지차량운행비(승용차 소나타 2.0적용)
 - 손료 $21,000,000원 \times 1,547 \times 10^{-7} = 3,249원/hr$
 - $3,249 \times (40 \div 5일) \times 22일 = 571,771원$
 - 재료비
 - 주원료(휘발류) : $1,480원 \times 10 l / 일 \times 22일 = 325,600원$
 - 잡품 : $325,600원 \times 10\% = 32,560원$
 - 소계 = $929,931원 \times 22개월 = 20,458,482원$
 - 라. 현지사무원 급료(보통인부 적용)

$$[106,846원 \times (16/12) \times 22일] + [106,846원 \times (16/12) \times (1/12) \times 22일]$$

$$= 3,395,328원$$

$$3,395,328원 \times 22개월 = 74,697,226원$$
 - 마. 도서인쇄비
 - 중간(월간)보고서 : $100,000원 \times 22회 = 2,200,000원$
 - 최종보고서 : $260,000원 \times 1회 = 260,000원$
 - 소계 = $2,200,000 + 260,000 = 2,460,000원$
5. 합계(1+2+3+4) = 812,593,037원
6. 총 감리대가(VAT 10% 포함)

$$: 812,593,037원 + 81,259,304원 = 893,852,341원$$

[예시 2] 상주감리 시 대가산정의 예

○ 국가유산수리비 50억원인 경우(복잡 국가유산수리)

- 총감리원수 32인·월, 감리기간 22개월

1. 직접인건비 <총감리원수 × 고급기술자 월임금액>

$$32인 \cdot 월 \times (219,469원 \times 22일) = 154,506,176원$$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 120% > (115%)

$$154,506,176원 \times 115\% = 177,682,102원$$
3.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30%)

$$(154,506,176원 + 177,682,102) \times 30\% = 99,656,484원$$
4. 직접경비(가+나+다+라+마) = 140,922,499원
 - 가. 감리원의 주재비(직접인건비의 30%)

$$-(154,506,176원 \times 90\%) \times 30\% = 41,716,668원$$
 - 나. 기술지원자의 출장비(기술지원자 직접인건비의 20%)

$$-(154,506,176원 \times 10\%) \times 20\% = 3,090,124원$$
 - 다. 현지차량운행비(승용차 소나타 2.0적용)
 - 손료 $21,000,000원 \times 1,547 \times 10^{-7} = 3,249원/hr$
 - $3,249 \times (40 \div 5일) \times 22일 = 571,771원$
 - 재료비
 - 주원료(휘발류) : $1,480원 \times 10 l / 일 \times 22일 = 325,600원$
 - 잡품 : $325,600원 \times 10\% = 32,560원$
 - 소계 = $929,931원 \times 22개월 = 20,458,482원$
 - 라. 현지사무원 급료(보통인부 적용)

$$[106,846원 \times (16/12) \times 22일] + [106,846원 \times (16/12) \times (1/12) \times 22일]$$

$$= 3,395,328원$$

$$3,395,328원 \times 22개월 = 74,697,226원$$
 - 마. 도서인쇄비
 - 중간(분기)보고서 : $100,000원 \times 8회 = 800,000원$
 - 최종보고서 : $260,000원 \times 1회 = 260,000원$
 - 소계 = $800,000 + 260,000 = 1,060,000원$
5. 합계(1+2+3+4) = 572,867,261원
6. 총 감리대가(VAT 10% 포함)

$$: 572,867,261원 + 57,286,726원 = 630,153,987원$$

[별표 3]

수리비 효율(제14조 관련)

국가유산수리비 (억원)	평균감리기간 (개월)	수리비 효율		
		복잡	보통	단순
0.5	3	11.49	10.44	9.40
1	4	8.47	7.70	6.93
2	5	6.25	5.68	5.11
3	6	5.24	4.76	4.28
4	7	4.61	4.19	3.77
5	9	4.18	3.80	3.42
10	13	3.08	2.80	2.52
20	15	2.28	2.07	1.86
30	18	1.90	1.73	1.56
50	22	1.52	1.38	1.24

※ 주 :

1) 0.5억원 미만 국가유산수리(보통)의 효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복잡인 경우 해당 총 감리원수에 10%를 가산하고, 단순인 경우 10%를 감한다.

$$y = 7.7021x^{-0.439} \quad * x : \text{해당 국가유산수리비(억원)} \quad y : \text{효율}$$

2)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는 단순, 보통 및 복잡으로 별표 1 ‘바’ 를 적용한다.

3) 국가유산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효율을 적용한다.

4) 감리기간이 평균감리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의 효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 가감하는 효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균감리기간에 따른 효율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y = y1 + [(T - t) \times (y1 \div t)]$$

* y : 효율, $y1$: 평균감리기간에 따른 효율

* T : 해당 감리기간(월), t : 평균감리기간(월)

[별표1] 국가유산수리 설계대가 요율(제6조 관련)

공사비	국가유산수리 설계대가 요율(%)			비고
	복 잡	보 통	단 순	
3천만원 이하	18.63	16.94	15.25	
5천만원	17.09	15.54	13.99	
1억원	15.20	13.82	12.44	
2억원	13.53	12.30	11.07	
3억원	12.63	11.48	10.33	
5억원	11.58	10.53	9.48	
10억원	10.31	9.37	8.43	
20억원	9.16	8.33	7.50	
30억원	8.56	7.78	7.00	
50억원	7.85	7.14	6.43	
100억원	6.99	6.35	5.72	
200억원	6.22	5.65	5.09	
200억원 초과	$y=0.9674 \times x^{-0.169}$ y : 해당공사비요율 x : 해당 금액 (단위 : 천원) ※ 복잡은 10% 가산, 단순은 10% 감산			

- ※ 공사비 단위는 천원으로서 그 이하의 금액은 절삭하여 산정한다.
 - ※ 200억원 초과인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공사비는 개별 수리 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국가유산 수리 공사비를 한 건으로 산출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는 단순, 보통 및 복잡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주: 1)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외에도 전통양식으로 하는 경우는 동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단순·보통·복잡 국가유산수리가 동일한 현장인 경우 최상위 난이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구분	지정유산 수리*	주변정비**	비고
단순		① 목조건축물의 부분 해체·보수 * 산자이상 해체와 그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보수 (지붕 번외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함) * 목조건축물의 단일 공종 보수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등)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적 10 m ² 이하) 건축물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평석교(단순 구조), 승탑, 석조의 부분 해체보수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고 단일공종의 경우 ③ 도로, 담장(꽃담, 궁담 제외), 석축, 단순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 등의 정비	
보통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산자이상 해체와 그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보수 (지붕 번외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함) * 목조건축물 단일 공종 보수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등)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적 10 m ² 이하) 건축물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평석교(단순 구조), 승탑, 석조의 일부 해체보수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고 단일공종인 경우 ③ 국가유산수리업*** 1종이 수리할 수 있는 국가유산수리 ④ 도로, 담장, 석축,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의 정비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5량가 이상 :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보수 * 5량가 미만(주심포, 다포 제외) : 전면해체보수, 신축, 복원, 이전 *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 (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와 지붕공사) * 화장실이나 부속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해체보수,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홍예의 부분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완전 해체보수 *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 공종일 경우 ③ 복합 공종의 주변정비시설,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꽃담, 궁담 등 담장공사, 전통기법에 의한 조경공사(식재, 연못 조성 등) ④ 국가유산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국가유산수리	
복잡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보수 *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연목이상 해체보수하는 경우로 도리와 공포까지 보수하는 경우 * 익공계, 주심포, 다포계 건물의 신축, 복원,	

구분	지정유산 수리*	주변정비**	비고
	<p>(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와 지붕공사)</p> <p>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 해체보수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홍예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해체보수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완전 해체보수 *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공종일 경우</p> <p>③ 국가유산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국가유산수리</p> <p>④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신축, 복원, 이전</p> <p>⑤ 특수한 양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p>	<p>이전</p> <p>② 성곽, 탑 등 석조물 * 성곽 :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 홍예의 전면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전면 해체보수</p> <p>③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신축, 복원, 이전</p> <p>④ 특수한 양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p>	

*. '지정유산 수리'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 '주변정비'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 '국가유산수리업'이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중 '조경업, 보존과 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 온돌공사업'을 말한다.

[별지 70]

[별표1] 설계도서 작성항목

구분	작성 도서	작성 내용	축척
일반 사항	표지	· 공사명칭, 공사구분, 작성년월, 설계사무소 명칭, 발주처 명칭	
	목차	· 일반사항,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황사진첩	
설 계 설명서	개요	· 공사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목적, 사업지침, 소요예산, 기간, 규모, 물량, 자재현황, 자재원, 관급자재 등	
	연혁	· 창건, 중건년도, 관련인물, 관련 전설 등 · 보수정비 이력(년도, 보수범위, 보수내용)	
	현황	· 주변현황 : 국가유산 보존에 유·무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형, 배수관계, 경역 내 건물배치 현황, 관련 경역 면적 등 공사와 관계있는 지형, 등고, 토질, 수목생태 등 · 보수대상현황 : 보수대상물의 구조, 보존상태, 퇴락부위, 훼손부위, 퇴락원인, 변형부분 등	
	고증	· 보수, 복원 시 원형고증 관련 내용	
	설계변경 조건	· 설계변경 사유	
공사시방서		·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 공사대상의 특징 및 특이사항(※ [별표4]에 별도 기준 제시)	
특기시방서		·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기 사항	
예정공정표		· 공사 일정, 작업량 등의 시공 계획	
내역서	원가계산서		
	총괄 및 공종별 설계내역		
	내역서 (예산서)		
	일위대가		
	자재표		
	견적서	· 공급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합계, 견적일자	
수량산출서		· 각 공종별 품명, 규격, 단위수량, 합계	

구분	작성 도서	작성 내용	축척		
설계도면	현황	기본도면	설계도면 표지	· 공사명, 공사구분, 작성년월, 설계사무소명, 발주처	-
			도면목록표	· 공사구분, 도면목차, 도면번호, 축척	-
			설계개요	· 설계 및 공사개요, 대상 국가유산 위치·면적·구조, 공사내용 및 수량 등, 공사시 유의 및 참고사항, 반영사항	-
		배치도	· 국가유산구역 전체 배치도 작성(필요시 보수대상 국가유산 부분배치도 작성) · 건물·시설물·담장·석축·배수로 등 표기 · 방위표·등고선·진입로·인접도로·수목 현황 등 표기	1/200 ~ 1/500	
		대지단면도 (종·횡단면)	· 건물 및 시설물 위치, 고저	1/200 ~ 1/500	
		평면도	·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1/20 ~ 1/100	
		입면도	·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기울기와 변위 표시 · ㄱ·L·ㄴ자형 등 복합평면 건물은 각 방향 입면 작성(추녀마루 입면도 포함)	1/20 ~ 1/100	
		단면도 (종·횡단)	· 주단면도(종·횡단 2면 이상), 구조가 다른 부분 전부 작성 ·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기둥·벽체의 기울기와 처마 처짐 표시	1/20 ~ 1/100	
		천장평면도 (양시도)	·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1/20~ 1/100	
		가구구조평면도	·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 상부구조에 반자가 있는 경우 천장을 다른 천장평면도와 가구구조를 보여주는 가구구조평면도로 구분하여 작성)	1/20~ 1/100	
	지붕평면도 (와복도)	· 훼손 및 변형 상태, 사용기와 규격, 잇기겹수 등	1/20~ 1/100		
	상세도면	부분도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에서 현황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	1/10~ 1/30	
상세도		· 현황 부재 상세도 · 상세도 목록 : 지정 및 기초, 기단 입면·퇴물림·소맷돌 문양, 구들·고래·아궁이, 기둥 모접기·쌍사·배흘림, 머름, 난간, 보 단면, 초각 상세도(공포, 보머리, 화반, 대공, 추녀머리, 계눈각 등), 창호, 안허리곡·양곡, 마루곡, 합각벽, 장식기와 문양, 철물, 결구 등	1/5~ 1/20		
계획	기본도면	배치도	· 건물·시설물·담장·석축·배수로 등 표기 · 방위표·등고선·진입로·인접도로·수목 현황 등 표기 · 가설울타리·사무소·작업장·창고 등 가설위치, 자재 적치장소, 소화시설 비치장소 표기 · 작업진입로(차량, 인부), 관람객 유도 동선	1/200~ 1/500	

구분	작성 도서	작성 내용	축척		
설 계 도 면	계 획	기본 도 면	대지단면도 (종·횡단)	· 건물 및 시설물 위치, 현황 고저 · 지반 정비 시 변경 대지의 고저	1/200~ 1/500
			평면도	·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필요시 범례표 작성)	1/20~ 1/100
			입면도	·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필요시 범례표 작성) · ㄱ·ㄴ·ㄷ자형 등 복합평면 건물은 각 방향 입면 작성(추녀마루 입면도 포함)	1/20~ 1/100
			단면도 (종·횡단)	·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구들·굴뚝 단면, 교체수량 등(필요시 범례표 작성)	1/20~ 1/100
			천장평면도 (양시도)	·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필요시 범례표 작성)	1/20~ 1/100
			가구구조평면도	·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필요시 범례표 작성)	1/20~ 1/100
			지붕평면도 (와복도)	·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사용기와 규격, 잇기결구, 교체수량 등 (필요시 범례표 작성)	1/20 ~ 1/100
			가설도	· 가설덧집, 가설비계, 가설울타리, 가설사무실, 가설창고, 가설작업장, 공사안내 판, 안전수칙판	1/100~ 1/200
	상 세 도 면	부분도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에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	1/10~ 1/30	
		상세도	· 계획 부재 및 시공 상세도	1/5~ 1/20	
	기 타 도 면	기계설비도면	· 급배수, 도시가스, 소화설비 등 관련 도면	-	
전기 및 통신도면		· 인입배치도, 계통도, 조명·방범·통신 등 설비도, 피뢰침 상세도 등 관련 도면	-		
토목도면		· 포장, 보도블럭 및 측구, 우·오수 등 관련 도면	-		
현황사진첩		· 대상 국가유산 및 주변의 원경, 전경, 근경, 상세사진			

※ 본 표 중 설계도면은 국가유산수리 설계 시 수행되는 일반적인 항목(목조건축물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유산 및 수리공사의 유형에 따라 도면의 종류 및 축척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71]

[별표2] 고증조사 및 현황조사 업무 항목

항목		조사 내용
고 증 조 사	연혁조사	창건연혁 검토 및 분석
		보수연혁 검토 및 분석
	면담조사	거주자 및 관련자 면담, 건물 이력 확인
	재료 및 시공기법 조사	재료의 생산과 시공기법 조사
	재료생산 현황조사	현 재료의 생산여부, 유사 재료 생산여부, 단종 재료 생산 가능 여부 검토
현 황 조 사	현지답사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토지이용 현황 등 조사, 사진촬영, 현지답사 보고서 작성
	공사여건 조사	도로 및 차량진입 관계 조사, 특수재료의 공급처 및 단가 조사, 폐기물 처리방법 및 비용조사
	보수범위 조사	보수 대상 국가유산의 현황조사(보수 정도 및 범위 재료 등), 국가유산 훼손 원인 진단(육안조사, 촉진조사 등)
	구조물 조사	대상 지역 부근(공사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 조사
	법규 검토	제반법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등) 검토, 인허가 절차 파악
	지장물 조사	지상 시설물의 저촉여부 조사, 구조물 설치 개소 및 시공 상 저촉구간 위치 확인, 부속시설물(상하수도, 가스, 케이블 등) 조사, 지장 수목 조사
	상수도 및 하수도 조사	기존 자료 검토 및 현황 조사
	배수시설 조사	기존 자료 검토 및 현황 조사
	전기, 통신설비, 토목, 조경 등 조사	기존 자료 검토 및 현황 조사

[별지 72]

[별표4] 국가유산유형별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관련 지침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관련 지침	
공 통 사 항	<p>국가유산유형별 설계도서 작성 시 해당 국가유산수리 범위에 한하여 적용한다.</p>
목 조 건 축 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조건축물은 지역·시대·유형에 따라 양식과 기법이 각각 다르므로 기초부터 지붕까지 현황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 시 기준이 되도록 한다. 2. 배치도는 전체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보수 대상 국가유산 및 주변 시설물, 수목 등을 도시한다. 3. 단면도는 중·횡단면도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ㄱ·ㄴ·ㄹ자형 등 복합평면 건물은 중·횡 2부분 이상(구조가 다를 경우 전부) 작성한다. 4. 지붕공사 시 지붕마루곡, 마감(각 마루접합부, 마구리, 용마루, 양성, 망와, 막새) 등 상세도를 작성한다. 5. 단청공사 시 부재별로 단청 유형과 채색범위, 물량을 파악하여 반영한다. 6. 국가유산 보수·정비용 목적은 재질시험 및 훈증소독 처리된 목재를 사용토록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7. 기와는 규격, 종류, 막새·망와 문양 등을 조사하여 보충기와를 결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전통한식기와·전돌 제작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기준에 맞게 설계하도록 한다.
탑 · 석 조 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조물의 비파괴진단, 물성조사 및 표면 열화상태 조사, 풍화·손상조사, 지반환경조사, 변위조사 등을 통해 수리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2. 대상 석조물의 구조형식, 각 부재의 결합방식, 특이점, 균열·파손 등 결함사항을 조사하여 도면에 표현한다. 3. 배치도는 보수 대상 및 주변 일곽의 시설물, 수목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4. 상륜부, 문양(문비, 팔부신중 등), 기법(옥개석 지붕면곡, 앙곡, 기둥 흘림 등), 기타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는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5. 석조물의 보존처리(세척)는 기본적으로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기존 부재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설계도서에 표현한다. 6. 공사 시행 시 보존처리 범위와 재료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 시행하도록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석 조 물 (고 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치도에는 지정구역, 보호구역, 등고선, 기 정비된 고분, 보수정비 예정고분 등을 표시하고, 평면도에는 등고선, 잔디식재 범위를 표시한다. 2. 단면도에는 지형변화에 대한 토적을 표시하고, 봉분의 토적은 등고선(20~50cm)으로 표현한다. 3. 봉분의 높이는 토층단면 및 기저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계획하고 유구확인이 어려울 경우는 과도하게 높여서 설계하지 않는다. 4. 봉분 위에 있는 나무는 밀동치에서 자르고 뿌리는 약제로 고사시키는 등 뿌리 제거 처리방안을 명시한다. 5. 봉분 주변수목 제거 시 수종, 수형이 좋고 고분에 지장이 없는 나무는 경관수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 급경사지, 성토가 있는 지역의 수목제거 시 큰 나무는 성토높이 부근에서 자르고 뿌리는 약제로 고사시키는 방안을 검토·제시한다.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관련 지침	
성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리 대상 성곽의 축조형태 등을 조사하고, 원래의 성벽 형태와 같이 표본도를 작성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배치도에는 전체 성곽의 범위와 등고선, 방위표시를 하고, 현황 및 계획 평면도는 별도로 상세하게 작성한다. 3. 입면도는 현황 및 해체·축성범위 등 보수대상 전 구간에 걸쳐 작성한다. 4. 단면도는 현황 및 해체·축성범위 등 보수구간의 주요 축점에 걸쳐 작성하며, 입면도와 다르지 않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5. 성곽의 지대석 및 면석의 들여쌓기, 여장과 성벽상부 마감 등은 상세설계도를 작성한다. 6. 여장 1타의 길이는 지형에 따라 다양하므로 조사를 통하여 지형에 맞도록 조정하고 도면에 명기한다. 7. 성곽의 수문, 문지, 봉수대 등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작성 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성곽보수 시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8. 최대한 잔존 성돌을 활용하되 부족한 성돌은 동일 재질의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집허가, 구입 등 자재수급 방안을 수립하여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9. 자재의 운반방법, 운반동선, 작업동선 등을 구체적으로 도면에 명기한다. 10. 면석 및 적심석, 심석 등 성돌의 해체물량, 재사용 물량, 반입물량을 도표화하여 도면에 명기한다. 11. 성곽공사는 기 시달된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의 기준을 반영한다.
유구정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구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하여 발굴조사 시의 기준점 또는 지적 측량점을 확인하고 설계도면에 명기한다. 2. 유구조사 시 구지표의 고저차를 확인하고 유구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설계도서에 명기한다. 3. 유구정비 방안[드잡이, 성토(복토), 경화처리, 유구전사, 유구복제, 유구복원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준을 정한다. 4. 유구지역 전체에 대한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유적, 유구의 보존관리상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하며, 유적내부는 수목식재, 정원석 배치 등의 조경을 하지 않고 기존 상태로 보존하는 방안은 검토한다. 6. 유구정비 공사재료의 선택은 유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역성 있는 재료를 택하며, 관람통로 등 관람편의시설 설계 시에는 유적, 유구와 조화되는 재료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근대건축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수 대상에 대한 고증 및 현황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보수원인을 검토한 후 수리방안을 마련한다. 2. 건축기법 및 양식현황을 상세하게 조사·기록하여 시공 시 기준이 되도록 한다. 3. 변형 또는 변이된 현황을 파악하여 원형 및 원인을 밝히고, 관련 조사 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4. 벽돌 등 건축재료, 도료, 미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용된 재료를 파악·기록한다. 5. 건축물의 손상 및 성능(물리적·기능적) 저하현상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배치도는 보수대상 뿐만 아니라 주변 일곽의 관련 건축물, 수목 등을 측량하여 전체배치도를 작성·도시한다. 7. 건물 내·외부의 부위·부재별로 조사하여 정면, 좌·우측면, 배면(조사 가능한 면)과 내부의 평면·양시·입면에 대한 도면 작성, 실측자료를 통해 종·횡단면도, 주요상세도를 작성한다. 8. 벽체의 내쌓기, 경사면, 연결부 등 현황 및 시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별표5] 국가유산유형별 공사시방서 작성항목

공사시방서 작성항목	
개 요	<p>1. 국가유산수리공사는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p> <p>2. 설계도서 작성 당시 조사가 어려운 가려진 부분 등은 수리공사 때 시공자가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상세히 명시한다.</p> <p>3. 현장관리, 재료관리, 시공관리, 환경보호,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의 항목은 대상 국가유산의 특성에 따라 작성한다.</p> <p>4. 공사대상 국가유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유산의 특징, 일반 및 특이사항이 시공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p> <p>※ 특기시방서 작성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특별한 사안에 한정토록 한다.</p>
목 조 건 축 물	<p>1) 재료 - 보충재의 구입과 관리, 재질, 문양, 수종, 함수율, 산지 검토</p> <p>2) 조사 - 사전조사 : 현황 조사, 기초 및 지반 침하 조사, 변형 상태 및 원인조사 등 - 해체조사 : 흔적조사(묵서, 낙서, 문양, 먹선, 연장흔 등), 연대조사, 목재수종조사, 탁본조사, 채색문양 및 안료조사, 구조해석조사 등</p> <p>3) 해체 - 해체 순서, 해체 시 유의사항, 해체재료의 보존관리</p> <p>4) 시공 - 공종별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주의사항 : 기초공사, 기단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철물공사, 단청공사, 기타공사 - 치목 : 기법, 결구, 부재별 치목 - 조립 : 조립순서, 부재별 조립 - 보수보강 및 장식철물 지정 - 모형 및 시공상세도(현척도) 작성 - 기타 특수공법 - 시공기록 및 관리</p> <p>5) 공사 완료 - 준공검사, 준공사진 촬영, 수리공사보고서,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자료 보존 - 현장정리, 공사사무소 폐쇄</p>
탑 · 석 조 물	<p>1) 재료 - 재질, 강도, 석재 확보(채집허가, 구입)</p> <p>2) 조사 - 지형조사 : 기초 및 지반 침하 조사(탄성파탐사, 전기 비저항탐사, GPR탐사 등), 주변 배수시설 조사 및 배수량 검토 등 - 사전조사 : 기법(굴림정도, 모접기 등) 및 재질 조사, 석재면 조각 조사(습탁, 건탁, 실촉), 풍화·손상조사(표면 열화상태 조사, 암석조사, 암석의 절리 및 균열상태조사) 등 - 해체조사 : 석재 쌓기방식, 맞댄면 가공상태, 기초 및 지대석 확인, 석재의 파손·붕괴·변형 원인파악 및 규명, 속채움 돌의 종류·형상·공법 등</p> <p>3) 해체 - 해체 순서, 해체 시 유의사항, 해체재료의 보존관리</p> <p>4) 시공 - 공종별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p>

공사시방서 작성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기타공사 - 석재가공 : 흑두기, 정다듬, 도두락다듬, 잔다듬, 갈기 - 보존처리 방법 : 경화처리, 접착처리, 인공수지처리 등 - 석재가공/보존처리 시 유의사항 - 조립 및 쌓기 - 기타 특수공법 - 시공기록 및 관리 <p>5) 공사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검사, 준공사진 촬영, 수리공사보고서,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자료 보존 - 현장정리, 공사사무소 폐쇄
성 곽	<p>1) 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질, 강도, 석재 확보(채집허가, 구입) <p>2)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조사 : 기초 및 지반 침하 조사(탄성파탐사, 전기 비저항탐사, GPR탐사 등), 주변 배수시설 조사 및 배수량 검토 - 사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벽 : 성벽의 기울기조사, 성벽의 단면유형조사, 성벽의 자생 수목조사, 면석의 크기, 모양, 가공정도 등 상세조사, 기타 성벽의 특이사항 (각자, 상징물, 묵서 등) · 여장 : 여장의 입면구성방법·사용재료·기울기, 여장단면조사, 지대석 유무, 재료의 규격조사, 축조법 조사, 총안의 기울기·크기·유형 조사, 기타 여장의 특이사항, 여장에 자생하는 수목조사 - 해체조사 : 면석 및 뒤채움의 결구방식조사, 뒤채움의 유형 및 상세, 기초 및 지대석 확인, 성벽 파괴원인조사, 뒤채움 돌의 종류·형상·공법 <p>3) 해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 순서, 해체 시 유의사항, 해체재료의 보존관리 <p>4) 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종별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기초공사, 석공사, 성곽공사, 기타공사 - 석재가공 : 흑두기, 정다듬, 도두락다듬, 잔다듬 - 보존처리 방법 : 경화처리, 접착처리, 인공수지처리 등 - 석재가공/보존처리 시 유의사항 - 조립 및 쌓기 - 기타 특수공법 - 시공기록 및 관리 <p>5) 공사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검사, 준공사진 촬영, 수리공사보고서,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자료 보존 - 현장정리, 공사사무소 폐쇄
유 구 정 비	<p>1) 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질, 강도, 석재 확보(채집허가, 구입), 유구정비 재료 선정 <p>2)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조사 : 지형 및 지질 특성 조사, 지하수위, 동결심도 조사, 주변 배수시설 조사 및 배수량 검토 - 사전조사 : 현황조사, 발굴보고서 등 자료조사, 기준점 확인 <p>3) 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종별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기초공사, 석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 - 유구처리방안 : 드잡이, 성토(복토), 경화처리, 유구전사, 유구복제, 유구복원

공사시방서 작성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구나 유물 출토에 대비한 준비사항 및 대책 - 유구 운반 및 드잡이 작업 시 손상방지 대책 - 석재가공 : 흑두기, 정다듬, 도두락다듬, 잔다듬, 갈기 - 보존처리 방법 : 경화처리, 접착처리, 인공수지처리 등 - 석재가공/보존처리 시 유의사항 - 기타 특수공법 - 시공기록 및 관리 <p>4) 공사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검사, 준공사진 촬영, 수리공사보고서,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자료 보존 - 현장정리, 공사사무소 폐쇄
근 대 건 축 물	<p>1) 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재의 구입과 관리, 문양, 산지 검토 <p>2)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조사 : 현황 조사, 기초 및 지반 침하 조사, 변형 상태 및 원인조사 등 - 해체조사 : 건축구법조사(조적조-벽체쌓기법, 개구부 및 아치 쌓기법 등, 목조- 평보, 스자보, 왕대공, 빗대공 등, 석조-벽체쌓기법, 고정철물 등), 기록조사(벽돌의 인각 등) 등 <p>3) 해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 순서, 해체 시 유의사항, 해체재료의 보존관리 <p>4) 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종별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 <p>: 벽돌공사, 석공사, 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마감공사, 창호공사, 기타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범위별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 평잇기, 기와가락잇기 표준규격, 고정철물 규격, 도장 종류, 마감부 규격 등 · 트러스 : 맞춤과 이음, 고정철물 고정법, 목재 가공법 등 · 벽체 : 마감기법(흙손, 물씻어내기, 솔질, 뽕질 등), 모서리, 몰딩 형상 및 규격 · 창호 : 맞춤과 이음, 설치방법(벽체 고정), 창호 추함 등 · 설비 : 전기(전등, 스위치 등), 난방(벽난로, 굴뚝 등) · 실내의장 : 도배, 도장, 바닥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보강 및 장식철물 지정 - 모형 및 시공상세도 작성 - 기타 특수공법 - 시공기록 및 관리 <p>5) 공사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검사, 준공사진 촬영, 수리공사보고서,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자료 보존 - 현장정리, 공사사무소 폐쇄

[별표 1]

국가유산수리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I.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50)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50점)	하도급 국가유산수리의 낙찰비율 (30점)	○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30-2\left(\frac{82}{100}-\frac{\text{하도급금액}}{\text{원도급금액}}\right)\times 100$	○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30-2\left(\frac{70}{100}-\frac{\text{하도급금액}}{\text{예정가격}}\right)\times 100$
	원도급 국가유산수리의 낙찰비율 (20점)	$20-1/2\left(\frac{88}{100}-\frac{\text{원도급금액}}{\text{예정가격}}\right)\times 100$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II.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적정성(50)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50점)	하수급인의 수리능력평가액 (25점)	① 당해 국가유산수리 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수리능력평가 공시액				
		2배 이상	1.5배 이상 ~ 2배 미만	1배 이상 ~ 1.5배 미만	0.5배 이상 ~ 1배 미만	0.5배 미만
		20점	19점	18점	17점	16점
	하수급인의 수리 경험 (20점)	② 하수급인의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합산액				
		2배 이상	1.5배 이상 ~ 2배 미만	1배 이상 ~ 1.5배 미만	0.5배 이상 ~ 1배 미만	0.5배 미만
		20점	19점	18점	17점	16점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점)	③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3년 이상	2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1년 미만	
		5점	4점	3점	2점	
기타	하수급 국가유산수리의 시공여건 (+2점)	⑤ 하수급인이 당해 국가유산수리 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법률 위반여부 (-1점)	⑥ 최근 1년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영업정지 또는 벌칙에 한함)				

- ※ 가·감점을 포함한 항목별 합산 점수는 배점한도인 5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국가유산수리 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적을 인정
- ※ 소숫점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국가유산수리 명		하도급 국가유산수리 명	
수급자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계약기간		하도급 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낙찰율	%	부분 하도급율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3. 평가결과

(단위 : 점)

심사요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1.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가. 하도급 국가유산수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 국가유산수리의 낙찰비율	50 (30) (20)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하수급인의 수리능력평가액 나. 하수급인의 수리 경험 다.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라. 하수급 국가유산수리의 시공여건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50 (25) (20) (5) (가점 2) (감점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 증빙서류(제4조 관련)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가.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
-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징수의무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 4)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사본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폐업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징수의무자의 직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사본의 소득 금액이 일치한 자에 한한다)
-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근무경력 관련 증명 서류(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나. 국가유산수리등 참여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가목의1) 서류로서 현장명과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2)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다음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부터(다)까지의 서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 한한다)
 - (가)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 (나)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 (다)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 (라)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에 기록된 현장경력
- 3)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 설계도서(참여 명단이 명시된 것에 한한다)
- 4) 감독공무원 임명공문서 또는 근무부서 업무분장 공문서 등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가.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국가유산수리등 참여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제1호나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2) 언론 기사(참여 명단이 명시된 것으로 한한다)
- 3) 수리 현장 사진(본인과 수리현장이 확인된 것으로 한한다)
- 4) 노임 입금 통장 내역(해당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 현장대리인 명의로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한한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1. 일반사항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근무경력 수행기간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자격별로 산정한다.

$$\text{근무경력 수행기간(일)} = \text{국가유산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일)} + \text{국가유산수리등 참여기간(일)}$$

(가)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소속기간 및 국가유산수리등 참여기간 산정 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자격이 정지된 기간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자격증을 대여한 기간(검찰 또는 법원의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에 명기된 기간을 말한다)
- 2014년 12월 16일 이후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등록 또는 신고된 기간

(다)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소속기간과 국가유산수리등 참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소속기간에서 해당 중복 기간의 일수를 공제한다.

2) 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발급 시 ‘사무경력 수행기간(B)’ 및 ‘현장경력 수행기간(C)’은 각각 1)에서 산정된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소속기간 및 국가유산수리등 참여기간의 산정일수를 사용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인정 요소

가.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소속기간(사무경력 수행기간)

1)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은 자격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소속된 기간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돌봄사업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기간

(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공 수리기관”

이라 한다)에 소속된 기간

(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기간

2) 1)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다음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업종에 소속된 기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표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소속기간 인정가능 업종>

구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 실측 설계업	국가유산 감리업	돌봄 사업단	지방 자치 단체	공공 수리 기관
	종합	전문수리업													
	보수 단청업	조경업	보존 과학업	식물 보호업	단청 공사업	목 공사업	석 공사업	번와 공사업	미장 공사업	온돌 공사업					
기술 자	보수	●				○	○	○	○	○		●	○	○	○
	단청	●				●						●		○	○
	실측설계										●	●		○	○
	조경		●								○	●	○	○	○
	보존과학			●								●		○	○
	식물보호				●							●		○	○
기능 자	대목수	●				●							○		○
	소목수	●				●							○		○
	가공석공	●	○				●								○
	쌓기석공	●	○				●						○		○
	화공	●				●									○
	드잡이공	●	○				○	○					○		○
	번와와공	●							●				○		○
	제작와공														○
	한식미장공	●								●			○		○
	철물공														○
	목조각공	○	○				○								○
	석조각공	○	○					○							○
	칠공	○		○		○									○
	도금공	○		○		○									○
표구공			●											○	
조경공		●											○	○	
세척공			●										○	○	
훈증공			●											○	
보존처리공			●										○	○	
식물보호공				●										○	
실측설계사보											●	◎		○	
박제 및 표본제작공			○											○	
모사공	○		○		○									○	
온돌공	○									●			○	○	

● 등록요건 해당 직종

◎ 2011년 2월 5일 이전 등록요건 해당 직종

○ 경력 인정가능 직종

3) 복수자격취득자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영 별표7의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우에는 등록된 자격종목에 한하여 소속기간 경력을 인정한다.

(나) (가)목 이외의 경우에는 표1.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소속기간 인정가능 업종을 고려하여 자격별 소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격 종목별로 각각 인정한다.

나. 국가유산수리등 참여기간(현장경력 수행기간)

1) 국가유산수리등 참여기간은 자격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동시에 복수의 국가유산수리등에 참여하여 국가유산수리등 참여기간이 중복될 경우, 해당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국가유산수리등 참여기간 일수를 산정한다.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참여한 기간

(나) 자격종목과 동일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 관련 공사·용역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 기간

(다) 공공 수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국가유산수리 관련 설계검토, 기술지도 및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근무 기간

2) 국가유산수리등 참여사업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표 2. 국가유산수리등 참여사업의 담당업무 분류>

구분	설계		시공		감리			관리·감독		
	책임(총괄)기술인	참여기술인	현장대리인	참여기술인	책임감리원	상주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	공사·용역 감독	기술지원 및 관리
담당 업무										

3) 복수자격취득자의 국가유산수리등 참여기간은 표1.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소속기간 인정가능 업종과 일치하는 공사에 한해 인정한다.

4) 복수자격취득자가 다수의 국가유산수리등 참여기간이 복수의 자격간 상호 중복될 경우, 해당 중복 기간은 우선 경력신고 및 인정한 1개의 국가유산수리등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별지 78]

[별지 제1호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세부 경력 내용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인적사항

경력 신청인	①성명	(서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자격종류		⑥자격번호	

소속기간(국가유산수리업자등 소속기간)

구분	회사명	대표자	근무기간	국가유산수리 업등의 종류	국가유산수리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						
3						
4						
5						
6						

현장경력(국가유산수리등 참여기간)

구분	사업명	사업비 (천원)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자	현장 주소
1						
2						
3						
4						
5						

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세부 경력 신고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업무를 위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 - 이용 목적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경력 등 자격 조회 - 제공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경력, 자격 - 제공기관 보유·이용기간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경력인정(심사 완료)시까지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	--	---

년 월 일

신고인 (인)

대리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목적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업무처리 등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대리인 성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수탁기관의 장 귀하

[별지 81]

[별지 제1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자본금 (□담보, □예치, □출자) 확 인 서

①상 호		②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남/여))	
⑤주 소			
⑥담보, 예치, 또는 출자금액(또는 출자좌수)	금	원 (또는	좌)
⑦용 도	국가유산수리업등록관청 제출용 (※ 용도의 사용불가)		
<p>「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담보, □예치, □출자)확인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소) (상 호) (대 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대리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 귀하</p>			

기업진단보고서

진단구분	1. 등록	2. 양수	3. 합병	4. 기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				
신청자제시 자본금액(a-b)	자산총액(a)		부채총액(b)	
진단결과 내역(진단기준일 :)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진단의견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자산총계(I)		부채총계(II)		
부실자산(IV)		자 본 금		
실질자산(V) (I - IV)		자본잉여금		
비업무용자산(VI)		이익잉여금·결손금		
실질자본(VII) (V - VI - II)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겸업자본(VIII) (c-d)		자본총계(III)		
		겸업자산(c)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실질자본금(VII-VIII)		겸업부채(d)		
<p>「국가유산수리업등 관리지침」에 의거 신청인의 실질자본금을 위와 같이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p> <p>(진단자) 공인회계사(세무사, 재무관리경영지도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인 소재지(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법인(세무법인, 지정진단기관) : 인 담당공인회계사(담당세무사, 담당재무관리경영지도사) : 등록(인가)번호 제 호 인 소재지(전화번호) :</p> <p>(확 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한국세무사회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장) : 인 소재지(전화번호) :</p> <p>첨부 : 기업진단 내역서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시·도지사 귀하</p>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의 범위

업무의 구분(표준:○,발주자의 추가시:△)

주요 업무	세부 업무		계약의 범위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 (표준업무)	고증 및 현황조사업무	고증조사	○	
		현황조사	○	
	실측업무	실측	기본실측	○
			상세실측	○
	설계도서 작성업무	현황도면	기본도면	○
			상세도면	○
		계획도면	기본도면	○
			상세도면	○
			기타도면	○
		설계설명서		○
		공사시방서		○
		내역서		○
		수량산출서		○
		현황사진첩		○
	그 밖의 업무		○	
추가 업무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업무)	각종 측량		△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	
	3차원 스캔(3D SCAN) 실측		△	
	손도면 작성		△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8조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비		△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	
	그밖에 발주처의 별도 요구		△	

※ 본 표는 국가유산수리 설계 시 수행되는 일반적 업무를 수록하여 특정 국가유산수리 설계 시 업무범위 결정의 기본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로서, 필수적인 항목이 아니다.

1. 국가유산수리 설계의 업무범위는 ‘표준업무’ 범위로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의 대가는 별도계약으로 협의 하에 결정한다.
2. 수급인의 책임구분은 표준업무 범위로 한다. 다만, 발주자의 추가적인 요구에 의한 추가 범위도 업무적인 책임을 진다.
3. 고증 및 현황조사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2]를 참조한다.
4. 실측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3]을 참조한다.
5. 설계도서 작성 업무의 성과품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1]을 참조한다.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전통재료의 생산자·공급자 일반현황

조사일	
조사자	

□ 기본정보

상 호		법 인 번 호 ¹⁾	
주 요 품 목		설 립 연 도	
대 표 자		대 표 번 호	
업 체 유 형	생산자(<input type="checkbox"/> 채취자 <input type="checkbox"/> 가공자) <input type="checkbox"/> 공급자		
영 업 소 소 재 지			

□ 세부정보

1. 고 용 인 력 (명)							
총 인원	무형유산				자격보유자		기타
	이수자	전승 교육사	보유자	명예 보유자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2. 사 업 장 (㎡, 동)							
토 지 면 적							
건 물 정 보		건물명/건물용도		연면적		비 고	
3. 주 요 설 비							
설 비 명		용 도				수 량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규격별 현황

□ 총괄 사용현황

구분	산역	예산(백만원)		목재 (m³)			석재 (m³)		기와 및 전돌(매)		토사 및 석회류(kg)		초본류(kg)		철물(kg)	종이류(단위)		안료(g)	첨가제(kg)		접착제(g)	
		총예산	공사비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종류1	...	종류1	...	종류1	...	종류1	...		종류1	...		종류1	...	종류1	...
총계																						
국가																						
시도																						

□ 세부 사용현황

○ 목재 / 석재 / 기와 및 전돌

사업 기본내용						전통재료 사용량																		
구분	시도	사군구	지정구분	국가유산명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목재 ¹⁾					석재 ²⁾				기와 및 전돌 ³⁾							
						총예산	공사비	산지	종류	사용량(m³)			분류	종류	산지	사용량(m³)	제작방법	종류	규격	사용량(매)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 전통재료 사용량 작성기준

1) 목재				2) 석재				3) 기와 및 전돌		
종류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분류	산지			제작방법	종류	규격
소나무(이엽송),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피나무, 잣나무, 돌배나무, 가래나무, 산팽나무, 오동나무, 물푸레나무 등	d < 30cm 또는 L < 3.6m	30cm ≤ d < 45cm 또는 3.6m ≤ L < 7.2m	d ≥ 45cm 또는 L ≥ 7.2m	소형석재, 거친돌, 가공석, 특수석재	경기	강화석, 양주석, 가평석, 포천석		수제[전통가마], 수제[현대가마], 기계[현대가마]	평기와(암키와, 수키와)	특대, 대, 중, 소, 특수, 기타
				종류	충남	도고석, 온양석, 천안석				
					충북	백운석, 제천석, 보은석, 충주석, 괴산석, 음성석				
	* d: 원형부재의 경우 지름/ 판재 및 각재는 대각선길이 * L: 부재의 종방향 길이			화강암, 안산암, 섬록암, 현무암, 사암, 응회암, 석회암, 각력암, 역암, 대리석, 편마암, 점판암 기타	경북	양주석, 왜관석, 경주석, 상주석, 문경석		기타기와(막새기와, 장식기와, 이형기와)	해 당 없 음	
				경남	거창석, 마천석, 남해석					
					전북/전남	황등석, 정읍석, 남원석/여수석, 고흥석, 순천석		방전		
					제주/기타	제주석/기타 국내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재		전별돌		
					수입산	국내에서 채취하지 않은 석재				

○ 토사 및 석회류 / 초본류 / 금속류 중 철물 / 종이류

사업 기본내용							전통재료 사용량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 구분	국가유신명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토사 및 석회류 ⁴⁾				초본류 ⁵⁾				철물 ⁶⁾			종이류 ⁷⁾								
						총예산	공사비	분류	종류	산지	사용량 (kg)	분류	종류	산지	사용량 (kg)	제작 방법	분류	종류	사용량 (개)	제작 방법	종류	사용량 (단위)					

* 전통재료 사용량 작성기준

4) 토사 및 석회류			5) 초본류			6) 철물				7) 종이류	
분류	종류	산지	분류	종류	산지	제작방법	분류	종류	제작방법	종류	
토사류	진흙, 백토, 모래, 황토 등	국산 (시·도별 작성), 수입산	풀	벼집, 갈대, 겨름대, 역새, 수수강, 띠새 등	국산 (시·도별 작성), 수입산	전통, 현대	구조용	꺼쉬, 띠쉬, 특대정, 대정, 중정, 소정, 극소정, 은장 등	전통, 현대	도배지, 장판지, 창호지 등	
	태토(청자토, 백자토, 분청토) 등		초목	산자외역기용 나뭇가지, 대나무, 싸리나무 등				지붕용			미름쇠, 방초박이, 외정, 철쇄, 철심 등
			수피류	너와, 굴피				창호용			감잡이쇠, 경첩, 고리못, 돌쩌귀, 들쇠, 문고리, 장부쇠 등
			만경류	휨널, 등나무널 등				장식용			지네철, 현어 등
석회류	생석회(강회), 소석회 등		줄끈	새끼줄, 동아줄, 삼줄 등							

○ 안료 / 첨가제 / 접착제

사업 기본내용								전통재료 사용량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 구분	국가유신명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안료 ⁸⁾			첨가제 ⁹⁾				접착제 ¹⁰⁾					
						총예산	공사비	제작 방법	종류	사용량 (g)	제작 방법	종류	산지	사용량 (kg)	제작 방법	분류	종류	산지	사용량 (g)	

* 전통재료 사용량 작성기준

8) 안료			9) 첨가제			10) 접착제			
제작방법	전통	현대	제작방법	종류	원산지	제작방법	분류	종류	원산지
황	자황, 옹황, 등황, 황토 등	재료명 작성	전통	짚여물, 삼여물, 종이어물, 털여물, 조개껍질 등	국산	전통	동물성	우교, 어교 등	국산
적	장단, 주사, 석간주 등	재료명 작성					식물성	전분풀, 해초풀, 느릅나무 즙 등	
녹	뇌록, 석록 등	재료명 작성	현대	재료명 작성	수입산	현대	현대	재료명 작성	수입산
청	석청, 청화 등	재료명 작성							
무채색	페분(호분), 연백, 백토, 송연묵, 유연묵 등	재료명 작성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 기준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u></p> <p>1. 고 시 명: <u>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 기준 고시</u></p> <p>2. 고시내용</p> <p>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 별첨1</u> ○ <u>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 : 별첨2</u> <p>나. <u>관련근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u> ○ <u>「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u> ○ <u>「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u> 	<p style="text-align: center;"><u>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u></p> <p>1. ----- <u>국가무형유산</u> ----- ----- -----</p> <p>2. -----</p> <p>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국가무형유산</u> ----- ----- ----- -- <u>국가무형유산</u> ----- ----- ----- <p>나. <u>관련근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u> ○ <u>「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u> ○ <u>「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u>

다. 적용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 및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조사지표 및 실기지표에 대해 고시하는 사항임

다. 적용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 「국가 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조사지표 및 실기지표에 대해 고시하는 사항임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u></p> <p>1. (생략)</p> <p>2. 적용방법</p> <p>가. 동 설치기준 범위 내 설치·시공에 관한 <u>국가지정문화재</u> 현상변경허가사항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 근거 : <u>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u></p> <p>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원인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u>문화재보호법</u>이 정하는 관계전문가에게 <u>문화재</u>에 미치는 영향여부에 대한 검토자문을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p> <p>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p>	<p><u>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u></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 ----- ----- <u>국가지정문화유산</u> ----- ----- ----- ----- ----- -----</p> <p>-----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u> -----</p> <p>나. ----- ----- ----- ----- -----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u>문화유산에</u> ----- ----- -----</p> <p>다. -----</p>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상변경 허가할 경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허가사항을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3. 비용부담

가. 설치비용은 소유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 고증 등을 통한 원형복원 등 문화재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구분별 기본원칙

가. 일반원칙

○ 문화재로 지정된 고유한 특성(구조·기둥·보 등의 특수한 기법·양식)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원형대로 보존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시공 전후 관련자료(사진, 도면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3. -----

가. -----

문화유산 -----

-----.

4. -----

가. -----
-- 문화유산으로 -----

-----.

-----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

리하고 문화재청에 보고한다.

나. 공간의 변경

○ 공간의 변형 시 가옥 고유의 공간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마선 이내 공간을 활용하거나 현대식 생활양식에 맞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 마. (생략)

5.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가. ~ 바. (생략)

사. 빗물받이 및 물흙통

○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 낙숫물이 기단 내로 떨어져서 기둥, 벽체 등이 훼손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정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으로 처마 빗물받이 및 물흙통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

----- 문화유산 -----

-----.

다. ~ 마. (현행과 같음)

5.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 관계전문가(문화유산위원) -----

-----.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u></p>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u>비상주문화재감리원</u>을 배치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p> <p>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비상주감리”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u>문화재감리업자</u>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u>비상주문화재감리원</u>을 배치하여 해당 <u>문화재수리</u>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p>	<p><u>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u></p> <p>제1조(목적)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 <u>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u>을 배치하는 <u>국가유산수리</u>-----</p> <p>-----</p> <p>-----</p> <p>제2조(정의) -----</p> <p>-----</p> <p>-----</p> <p>1. -----</p> <p>----- <u>국가유산감리업자</u></p> <p>-----</p> <p>----- <u>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u>-----</p> <p>----- <u>국가유산수리</u>-----</p> <p>-----</p>

말한다.

2. “감리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업자로서 해당 감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3. “수리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로서 해당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자(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실측설계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서 해당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설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5. “감리원”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되어 비상주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을 말한다.

6. “감독관”이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감독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자(민간 문화재수리의 경우 발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해당 문화재수리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업

-----.

2. -----
----- 국가유산감리업자-----
-----.

3. -----
----- 국가유산수리업자로
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

4. -----
----- 국가유산실측설
계업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
리-----
-----.

5. -----
-----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감
리원-----.

6. -----

----- 국가유산수리의 -----

----- 국가유산수리 전반-----

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이란 수리업자가 지정하여 발주자에 통지한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의 관리 및 문화재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설계도서”란 문화재수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9. “문화재수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도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0. “감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국토교

--.

7.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
-- 국가유산수리에 -----

-----.

8. ----- 국가유산수리
시방서-----

-----.

9.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란 -

-----.

10. -----

----- 국
가유산수리-----

통부가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11. “감리기간”이란 감리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수리업자 또는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문화재수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문화재수리기간을 포함한 감리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2. “검토”란 수리업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발주자(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리업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감리원이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감독관 또는 수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확인”이란 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계약문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

-----.

11. -----

-----.
----- 국가유산수리기간이 -----
----- 국가유산수리기간을 -----
-----.

12. -----
----- 국가유산수리-----

-----.

-----.

13. -----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검토·확인”이란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5. (생략)

16.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17. (생략)

18. “조정”이란 설계, 문화재수리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실측설계업자, 수리업자, 감리원, 감독관, 발주자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

14. ----- 국가유산수리-----

-----.

15. (현행과 같음)

16. -----

----- 국가유산수리-----

-----.

17. (현행과 같음)

18. ----- 국가유산수리-----

-----.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 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19. “실정보고”란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업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자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20. “검사”란 문화재수리계약문서에 나타난 문화재수리 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리업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감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리업자가 시행한 문화재수리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감리원이 한다.

21. · 22. (생략)

23. “주요공정”이란 해당 문화

-- . -----

-----.

19. ----- 국가유산수리

-----.

20. ----- 국가유산수리계약
문서에 나타난 국가유산수리

-----.

21. · 22. (현행과 같음)

23. ----- 국가유

재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공정으로, 제6조제1항의 합동 회의를 통해 결정된 공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비상주감리로 시행되는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발주자·감독관·감리업자·감리원 및 수리업자가 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발주자·감독관·감리업자·감리원·수리업자 등 문화재수리 관계자는 이 지침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은 비상주감리 및 문화재수리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발주자, 감독관, 감리원, 수리업자의 기본임무)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의 계획·설계·발주·감리·문화재수리·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문화재수리 계

산수리-----

-----.

제3조(적용범위) ① -----
----- 국가유산
수리 -----

-----.

국가유산수리 -----

-----.

② ----- 국가
유산수리-----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발주자, 감독관, 감리원, 수리업자의 기본임무) ① -----

-----.

- 1. ----- 국가유산수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수리·사후평가-----
----- 국가유산수리 계약 --

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문화재수리 시행에 따른 기술지도단 등 자문위원 선정,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및 의사결정

다. 문화재수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과의 협의 및 허가·인가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치 또는 협력

라. (생략)

마. 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 일정 검토 및 조정 등 감리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토록 조치

바.·사. (생략)

2.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

가. ----- 국가유산수리-----

나. 국가유산수리 -----

다. 국가유산수리 -----

라. (현행과 같음)

마. ----- 국가유산수리 일정 -----

바.·사. (현행과 같음)

2. -----

는 한 문화재수리 착수 전 설계도서 검토 및 완료 후 사후 관리 등을 감안하여 감리에 필요한 적정 기간과 대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생략)

2.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성,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 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 주요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생략)

④ 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문화재수리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원으로

--- 국가유산수리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국가유산수리-----

-----.

3. (현행과 같음)

④ -----
-----.

1. ----- 국가유산수리계약 문서-----
----- 국가유산수리방법-----

부터 재시행,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수리업자는 발주자와의 문화재수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문화재수리계약문서, 감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수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문화재수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생략)

-----.

2. -----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

-----.

1. -----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 국가유산수리의 -----
-----.

2. ----- 국가유산수리계약조건-----

-----.

3. (현행과 같음)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진척 상황에 따라 현장점검 및 확인 등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생략)

제6조(감독관의 업무범위) ① 감독관은 문화재수리 착수 및 감리 착수 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원 등 문화재수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생략)

③ 감독관은 문화재수리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④ 감독관은 문화재수리 착수 전에 감리원 및 수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② -----
-----.

1. ----- 국가유산수리 -----

-----.

2. (현행과 같음)

제6조(감독관의 업무범위) ① -----
----- 국가유산수리 착수 -----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수리 -----

-----.

④ ----- 국가유산수리 -----

-----.

라야 한다.

④ (생략)

제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감리원은 설계도면, 문화재수리시방서, 산출내역서, 문화재수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도서 등의 관리) ①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문화재수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문화재수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완료와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자에 반납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감리원은 문화재수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문화재수리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산출내역서, 국가유산수리 -----.

제9조(설계도서 등의 관리) ① ----- 국가유산수리 착수 -----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

-----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수리 -----

-----.

④ ----- 국가유산수리의 -----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국가유산수리 -----.

제10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①
(생략)

②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
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문화재수리 범위, 방향 등을 표
시하는 기준시설 등을 설치하도
록 하고, 문화재수리 전에 반드
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측량 등의 실시) 감리
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착수 즉
시 수리업자와 함께 발주 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일치 유무
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확인측량 등을 하
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
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
점은 해당 문화재수리 시 유
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
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제10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유산수리 -----

-----.

③ -----

국가유산수리 범위-----

----- 국가유산수리 전-----

-----.

제11조(확인측량 등의 실시) -----
----- 국가유산수리 -----

-----.

1. -----

----- 국가유산수리 -----

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
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
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 완료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
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
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
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
시하여야 한다.

3.·4. (생략)

제13조(문화재수리 관련자 회의)
감리원은 감독관이 주관하는 문
화재수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
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
다.

제3장 문화재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

제14조(문화재원형의 확인) ① 감
리원은 문화재가 원형으로 보존
· 계승될 수 있도록 해당 문화
재수리와 관련하여 조사된 고증
자료, 양식, 옛 문헌, 문화재수
리 기록, 재료의 진정성, 문화재

-----.

2. 국가유산수리 -----

-----.

3.·4. (현행과 같음)

제13조(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
의) ----- 국
가유산수리 -----

--.

제3장 국가유산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

제14조(국가유산원형의 확인) ①
----- 국가유산이 -----
----- 국가
유산수리와 -----
----- 국가유산
수리 기록----- 국가유

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문화재원형의 확인을 위하여 고증관련 자문 및 검토사항에 대한 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① 감리원은 법 제38조제5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2호의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간감리보고서(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되, 감리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가. 문화재수리 및 감리 개요 (별지 제3호서식)

나.·다. (생략)

산수리의 -----

-----.

② ----- 국가유산원형-----

-----.

제15조(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① -----

-----.

1. -----

가. 국가유산수리 -----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주요공정별 문화재수리 현황(문화재수리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별지 제5호서식)

마. ~ 사. (생략)

아. 문화재수리 설계 변경 현황(별지 제9호서식)

자.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별지 제10호서식)

차. 문화재수리 전후사진(별지 제10호서식)

카. (생략)

2. 최종감리보고서(감리 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문화재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13호서식)

나. (생략)

다. 문화재수리 추진실적의 종합(별지 제14호서식)

라. ~ 바. (생략)

사.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별지 제19호서식)

아.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

라. -----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마. ~ 사. (현행과 같음)

아. 국가유산수리 -----

자. 국가유산-----

차. 국가유산수리 -----

카. (현행과 같음)

2. -----

가. 국가유산수리 -----

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유산수리 -----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국가유산-----

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별지 제20호서식)

자. 차. (생략)

②·③ (생략)

제16조(수명사항의 처리) ① 감리
원은 수리업자에게 해당 문화재
수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리원이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업자에게 지시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
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
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
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을 해당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구
체적으로 기술하여 수리업자
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

3. (생략)

② (생략)

제17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 감
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중
별로 해당 문화재수리 착수 전

자. 차.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명사항의 처리) ① ----
----- 국가유
산수리-----

1. ----- 국가유산수리-----

2. -----
국가유산수리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 --

----- 국가유산수리 착수 -

부터 완료 때까지의 문화재수리 과정, 기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사진과 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문화재수리 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문화재수리 기록 사진은 공종별, 문화재수리 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문화재수리 현황은 각 부위별로 해당 문화재수리 전·중·후 등 문화재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단청, 벽화, 묵서명, 특수한 맞춤·이음이나 구조, 특이한 부속 및 부착물 등은 특히 문화재수리 전 상세사진 촬영
3. 문화재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이 ~ 타. (생략)
 파. 해당 문화재수리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
 광경
 하. (생략)

② 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 국가유산
수리 과정-----

----- 국가유산수리 내용 -----

----- .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

1. ----- 국가유산수리 현황-----
 ----- 국가유산수리 전·중·후 - 국가유산수리 과정-----

2. -----
 ----- 국가유산수리 -----

3. 국가유산수리 -----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 국가유산수리 -----

 하. (현행과 같음)

② -----

판단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수리업자로 하여금 디지털비디오 등으로 영상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 및 비디오 등은 디지털파일 등으로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문화재수리 완료 시 발주자에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품질시험·검사 요령) ① (생략)

② 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발주자에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3호 서식)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주간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① 감리원은 수리

----- 국가유산수리-----

-----.

③ -----

-----.

제19조(품질시험·검사 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국가유산수리-----

-----.

제20조(주간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① -----

업자로부터 주간작업계획서(투입예정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기술자등의 명단’이라 한다)를 제출받아 감리업무수행계획에 참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1조(시공 확인)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 확인 시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2.·3. (생략)

② (생략)

제22조(검측업무) ①·② (생략)

③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수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 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이 경우, 검측업무지침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시공 확인) ① -----

-----.

1. ----- 국가유산수리-----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검측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국가유산수리-----

-----.

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문화재수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 7. (생략)

④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수리업자가 배치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점검하여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생략)

⑤ 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지방서, 문화재수리법령, 동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2. -----
국가유산수리 -----

--

3. ~ 7. (현행과 같음)

④ -----

-----.

1.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2. (현행과 같음)

⑤ -----
----- 국가유산수리법령 -----

내용으로 작성하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23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 ④ (생략)

⑤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인증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2. ~ 5. (생략)

제24조(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

① ~ ③ (생략)

④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수리업자 임의로 문화재수리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지도 및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제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국가유산수리법령 -----

2. ~ 5. (현행과 같음)

제24조(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 -----
----- 국가유산
수리 현장 외-----

21조에 따른 현장확인 시 그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체부재의 경우에는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감리원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이 설계도서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25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시공과정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국가유산수리 -----

-----.

⑦·⑧ (현행과 같음)

제25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

----- 국가유산수리 -----

----- 매장유산 -----

-----.

② 재시행 및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행 : 시공된 문화재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행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중지 : 시공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 부분중지

(1)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

(2)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 (6) (생략)

나. 전면중지

(1) 문화재의 원형이 훼손되었을 때

② -----
-----.

1. ----- 국가유산수리-----

2. ----- 국가유산수리-----

가. -----

(1) 매장유산이 -----

(2) 국가유산-----

(3) ~ (6) (현행과 같음)

나. -----

(1) 국가유산-----

(2) 수리업자가 고의로 문화재수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문화재수리의 부실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화재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3) (생략)

(4)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해당 문화재수리 전체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5)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해당 문화재수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③·④ (생략)

⑤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문화재수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2) -----
국가유산수리의 추진-----

- 국가유산수리의 부실 -----

- 국가유산수리를 -

(3) (현행과 같음)

(4) -----

- 국가유산수리 --

(5) -----

- 국가유산수리----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국가유산수리 -----

한다.

⑥·⑦ (생략)

제26조(문화재수리진도 관리) ① (생략)

②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문화재수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문화재수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7조(수정 공정계획) 감리원은 현장실정 또는 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수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수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자문 등) 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문화재 원형의 고증, 양식,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31조(설계변경 관리) ①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실정보고와

⑥·⑦ (현행과 같음)

제26조(국가유산수리진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수리진도 -----

----- 국가유산수리의 -----
-----.

제27조(수정 공정계획) -----

----- 국가유산수리 -----

-----.

제30조(자문 등) ① -----

-----.

1. 국가유산 원형----- 국가유산수리-----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설계변경 관리) ① -----
----- 국가유산수리 -----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발주자는 사업환경의 변동, 기본계획의 조정, 관계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문화재수리 내용의 조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문화재수리비 절감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실정보고서를 제출하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⑩ (생략)

⑪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수리 -----

-----.

③ -----

----- 국가유산수리비 -----

-----.

④ ~ ⑩ (현행과 같음)

⑪ -----

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 처리를 지체함으로서 수리업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문화재수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 및 준공검사) ①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및 수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과 함께 해당 문화재수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준공검사

가. ~ 라. (생략)

마.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감리원의 '문화재수리 완료 사전검토서'(별지 제30호 서식)를 포함한다]

바. (생략)

제34조(목적물 인계·인수)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 국가유산수리 -----

-----.

제32조(기성 및 준공검사) ① ---

국가유산수리-----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국가유산수리 -----

바. (현행과 같음)

제34조(목적물 인계·인수) ① --

문화재수리의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적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문화재수리 개요 등)

2. 3. (생략)

② ~ ④ (생략)

제35조(현장문서 인계·인수) ①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감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③ (생략)

국가유산수리

1. -----국가유산수리 ---

2.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현장문서 인계·인수) ①

-----국가유산수리---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u></p>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u>상주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는 문화재수리</u>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p> <p>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상주감리”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u>문화재감리업자</u>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u>상주문화재감리원</u>을 배치하여 해당 <u>문화재수리</u>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p>	<p><u>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u></p> <p>제1조(목적)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p> <p>-----</p> <p>-----</p> <p>-----</p> <p>-----</p> <p>-----</p> <p>----- <u>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u>-----</p> <p>-----.</p> <p>제2조(정의) -----</p> <p>-----.</p> <p>1. -----</p> <p>----- <u>국가유산감리업자</u>-----</p> <p>----- <u>상주국가유산감리원</u>-----</p> <p>----- <u>국가유산수리</u>-----</p> <p>-----.</p>

2. “감리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업자로서 해당 감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3. “수리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로서 해당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자(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실측설계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서 해당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설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5. “감리원”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을 말한다.

6. “상주감리원”이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으로서 발주자와 체결된 감리계약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
----- 국가유산감리업자-----

-----.

3. -----
----- 국가유산수리업자로
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

4. -----
----- 국가유산실측설
계업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
리-----

-----.

5. -----
-----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감리원-----
--.

6. -----
----- 국가유산수리 -----

-----.

7. “보조감리원”이란 필요시 감리계약문서 등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소관 분야별로 상주감리원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상주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감리원을 말한다.

8. (생략)

9. “감독관”이란 공사계약일반 조건에 따른 공사감독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자(민간 문화재수리의 경우 발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해당 문화재수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0. “현장대리인”이란 수리업자가 지정하여 발주자에 통지한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의 관리 및 문화재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설계도서”란 문화재수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7. -----

국가유산수리 -----

-----.

8. (현행과 같음)

9. -----

--- 국가유산수리의 -----

-- 국가유산수리 전반-----

-----.

10.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
-- 국가유산수리에 -----

-----.

11. ----- 국가유산수리시방서-----

를 말한다.

12. “문화재수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도서,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3. “감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14. “감리기간”이란 감리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수리업자 또는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문화재수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문화재수리기간이 포함된 감리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5. “검토”란 수리업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발주자(감독

-----.

12.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란 -----

-----.

13. -----

-----.

14. “감리기간”이란 감리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수리업자 또는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국가유산수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국가유산수리기간이 포함된 감리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5. -----
----- 국가유산수리-----

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리
업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감리원이 숙지하고, 경험과 기
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검토의
견을 감독관 또는 수리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확인”이란 수리업자가 문
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계약문
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7. “검토·확인”이란 문화재수
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8. (생략)

19.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
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
행을 위해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
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
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16. ----- 국
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계
약문서-----

17. ----- 국가유산
수리-----

18. (현행과 같음)

19. -----

----- 국가유산수리-----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20. (생략)

21. “조정”이란 설계, 문화재수리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실측설계업자, 수리업자, 감리원, 감독관, 발주자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 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22. “실정보고”란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업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자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23. “검사”란 문화재수리계약문

-----.

20. (현행과 같음)

21. ----- 국가유산수리 -----

-----.

22. ----- 국가유산수리 -----

-----.

23. “검사”란 국가유산수리계약

서에 나타난 문화재수리 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리업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감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리업자가 시행한 문화재수리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감리원이 한다.

24. · 25. (생략)

26. “주요공정”이란 해당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공정으로, 제6조제1항의 합동 회의를 통해 결정된 공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상주감리로 시행되는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발주자·감독관·감리업자·감리원 및 수리업자가 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발주자·감독관·감리업자·감리원·수리업자 등 문화재수리 관계자는 이 지침을 숙

문서에 나타난 국가유산수리 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리업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감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리업자가 시행한 국가유산수리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감리원이 한다.

24. · 25. (현행과 같음)

26. ----- 국가유산수리-----

-----.

제3조(적용범위) ① -----
-----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수리 -----

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은 상주감리 및 문화재수리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발주자, 감독관, 감리원, 수리업자의 기본임무)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의 계획·설계·발주·감리·문화재수리·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문화재수리 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문화재수리 시행에 따른 기술지도단 등 자문위원 선정, 업무연락, 문제점 파

--.

② ----- 국가유산수리-----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발주자, 감독관, 감리원, 수리업자의 기본임무) ① -----
-----.

1. ----- 국가유산수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수리·사후평가-----
----- 국가유산수리 계약 -----

-----.

가. ----- 국가유산수리-----

나. 국가유산수리 -----

악, 민원해결 및 의사결정
다. 문화재수리 시행에 필요
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
에 공공기관의 협의 및 허
가·인가 등에 필요한 사
항의 조치 또는 협력

라. (생략)

마. 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
일정 검토 및 조정 등 감리
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토록 조치

바.·사. (생략)

2.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문화재수리 착수 전 설
계도서 검토 및 완료 후 사후
관리 등을 감안하여 감리에
필요한 적정 기간과 대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생략)

3.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성, 규
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
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
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다. 국가유산수리

라. (현행과 같음)

마. 국가유산수리
일정

바.·사.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수리

② (현행과 같음)

③

1.·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산수리

시행되는지 각 공종마다 육안
검사·측량·입회·승인·시
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생략)

④ 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
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문화재수리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원으로
부터 재시행,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수리업자는 발주자와의 문화
재수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
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감
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
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
다.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해당 문화재수리계

-----.

4. (현행과 같음)

④ -----
-----.

1. ----- 국가유산수리계약
문서-----
----- 국가유산수리방법-----

-----.

2. ----- 국가
유산수리계약문서-----

-----.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

-----.

1. -----
----- 국가유산수리

약문서, 감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수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문화재수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리원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문화재수리에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목적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생략)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현장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외부

계약문서-----

-- 국가유산수리의 -----

-----.

2. -----

----- 국가유산수리계
약조건-----
-----.

3. -----
-- 국가유산수리-----

-----.

4. (현행과 같음)

② -----
-----.

1. ----- 국가유산수리 현장
(국가유산수리-----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 주하고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 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 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 로 발주자의 승인(긴급 시 유 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3. (생략)

4.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 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 비 중 직접경비를 「문화재수 리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 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 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 해야 한다.

③ 기술지원자는 감리원의 요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문화재수리 내용의 기술적 검토
2. 문화재 원형유지 검토
3. 감리원이 요청하는 문화재수 리상세도면 검토

4. ~ 6. (생략)

-----.

2. 3. (현행과 같음)

4. -----

----- 「국가유산
수리 감리대가 기준」-----

-----.

③ -----

-----.

1. -----
----- 국가유산수리

2. 국가유산 -----
3. ----- 국가유산
수리상세도면 -----

4. ~ 6. (현행과 같음)

7. 현장 문화재수리 시행 상태
의 평가 및 지도

8.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
고, 상·하반기 각 1회 발주자
와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감독관, 현장대리인과 기술지
원자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반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
으로 문화재수리 시행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
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감리업
자는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
보

9. (생략)

제6조(감독관의 업무범위) ① 감
독관은 문화재수리 착수 및 감
리 착수 시에 다음 각 목의 사
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리업
자, 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원 등
문화재수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감독관은 문화재수리의 시행
에 따른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7. --- 국가유산수리 -----

8. -----

-- 국가유산수리 -----

9. (현행과 같음)

제6조(감독관의 업무범위) ① ---
---- 국가유산수리 착수 ----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수리 -----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④ 감독관은 문화재수리 착수 전에 감리원 및 수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⑤ (생략)

제2장 문화재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

제7조(행정업무) ① 감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및 기술지원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수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

④ ----- 국가유산수리 -----

-----.

1. ~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장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

제7조(행정업무) ① -----

-----.

----- 국가유산수리 -----

-----.

② (현행과 같음)

③ -----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감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리조직은 문화재수리 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 감리원은 설계도면, 문화재수리시방서, 산출내역서, 문화재수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과거 수리 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의 문화재수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조건과의 적합 여부 등 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문화재수리의 착수 이전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

④ 국가유산수리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산출내역서,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와

②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국가유산수리의

특히 기술지원자는 주요구조부(가설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과 부합여부
 2. ~ 4. (생략)
 5. 설계도면, 문화재수리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6.·7. (생략)
 8. 문화재수리 시 예상 문제점 등
- ③·④ (생략)

제9조(설계도서 등의 관리) ①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문화재수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문화재수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 국가유산수리 등-----
 2. ~ 4. (현행과 같음)
 5. ----- 국가유산수리시방서 -----
 - 6.·7. (현행과 같음)
 8. 국가유산수리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설계도서 등의 관리) ① -----
 ----- 국가유산수리 착수 -----
 -----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

 -----.

② (생략)

③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완료와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자에 반납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감리원은 문화재수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문화재수리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재수리안내판 등의 설치) ① (생략)

② 감리원은 제1항의 안내판 제작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개요(문화재수리명, 문화재수리내용, 문화재수리기간)

2. 문화재수리 참여기관(발주자, 수리업자, 감리업자)

3. 문화재수리 관계자(감독관, 상주감리원,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4. 참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성명, 자격명, 자격번호)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수리 -----

-----.

④ ----- 국가유산수리의 -----
-----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국가유산수리 -----
-----.

제10조(국가유산수리안내판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국가유산수리 개요(국가유산수리명, 국가유산수리내용, 국가유산수리기간)

2. 국가유산수리 -----

3. 국가유산수리 -----

4.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5. (생략)

제11조(착수신고서 검토) ① 감리원은 문화재수리가 착수된 경우에는 수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문화재수리 예정공정표
 3. (생략)
 4. 문화재수리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문화재수리 전 사진
 6.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및 자격증 사본
 7. 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전관리조직 및 안전점검·교육 등 해당 문화재수리의 안전관리계획
 8. 문화재수리기능자 투입 및 노무동원 계획서
 9. ~ 11. (생략)
-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문화재수리 착수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5. (현행과 같음)

제11조(착수신고서 검토) ① -----
--- 국가유산수리-----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수리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산수리계약서 -----

 5. 국가유산수리 ---
 6.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7. -----

----- 국가유산수리-----
 8.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9. ~ 11. (현행과 같음)
- ② -----
--- 국가유산수리 -----
-----.

1. -----

가. 문화재수리기간(착수~완료)

나. 문화재수리비 지급조건 및 방법(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문화재수리계약 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나.·다. (생략)

3. 문화재수리 예정공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문화재수리 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시험계획서 :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등 품질시험계획 및 검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검토)

5. 문화재수리 전 사진 : 문화재수리 대상 전경 및 세부현황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가. 국가유산수리기간(착수~완료)

나. 국가유산수리비 -----

다. -----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2. -----

가. 현장대리인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나.·다. (현행과 같음)

3. 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 --

국가유산수리 전·후간-----

4. -----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

5. 국가유산수리 전 -- 국가유산수리 대상 -----

6. (생략)

7. 문화재수리기능자 투입 및
노무동원 계획서 : 문화재수리
계약조건, 공종 및 성격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
는지 확인

8. 치목·치석 등 자재 가공계
획서 : 문화재수리계약문서에
따라 인력가공 또는 기계가공
등 자재 가공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제12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①
(생략)

②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
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문화재수리 범위, 방향 등을 표
시하는 기준시설 등을 설치하도
록 하고, 문화재수리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확인측량 등의 실시) 감리
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착수 즉
시 수리업자와 함께 발주 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일치 유무

6. (현행과 같음)

7.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국가유산수
리 계약조건-----

8. -----
-----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제12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유산수리 -----

-----.

③ -----

국가유산수리 범위-----

----- 국가유산수리 전-----
-----.

제13조(확인측량 등의 실시) -----
----- 국가유산수리 -----

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확인측량 등을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해당 문화재수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 완료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생략)

제14조(확인측량 등 결과의 처리)

① 감리원은 제13조에 따른 확인 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

-----.

1. -----

----- 국가유산수리 -----

-----.

2. 국가유산수리 -----

-----.

3.·4. (현행과 같음)

제14조(확인측량 등 결과의 처리)

① -----

이할 때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해당 문화재수리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원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해당 문화재수리 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감리원은 제13조에 따른 확인측량을 실시한 경우에는 확인측량을 공동확인하고 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당초 설계업자(입회한 경우), 상주감리원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문화재수리비 증감 대비표
5. (생략)

③ (생략)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

②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산수리비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문화재수리 관련자 회의)

감리원은 감독관이 주관하는 문화재수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하도급 관련 사항) ① 감

리원은 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법 제25조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 통보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② (생략)
-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수리업자가 불법 하도급하는 것을 안 때에는 문화재수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

제15조(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

----- 국
가유산수리 -----

-----.

제16조(하도급 관련 사항) ① ---

----- 국
가유산수리-----

-----.

- 1.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
-
-
-
- 국
가유산수리-----

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검토)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착수와 동시에 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설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 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접 문화재 및 유구의 보호 대책(목적물 내부에 위치한 문화재 및 유구의 관람 방안 또는 이동·보호조치 등을 포함한다)

2. 문화재수리용 도로

3. 수리용덧집, 가설사무소, 작업장, 가설창고, 숙소, 식당, 가설울타리, 휘장막, 우장막, 문화재수리안내판 등

4. (생략)

5. 문화재수리용 전력, 용수, 전화

6. (생략)

제18조(현지 여건조사) ①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문화재수리 추진에 지

-----.

제17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검토) ----- 국가유산수리 -----

-----.

1. ---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대책-----

국가유산 및 유구의 관람 ---

2. 국가유산수리용 -----

--

3. -----

----- 국가유산수리안내판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산수리용 -----

--
6. (현행과 같음)

제18조(현지 여건조사) ① -----

-- 국가유산수리 착수 -----

----- 국가유산수리 추진-----

장이 없도록 수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인접 문화재 및 유구의 현황
- 2. ~ 9. (생략)

② 감리원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인접 문화재 및 유구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인접 문화재 및 유구의 보호 대책(목적물 내부에 위치한 문화재 및 유구의 관람방안 또는 이동·보호조치 등을 포함한다)
- 2. ~ 9. (생략)

제3장 문화재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

제19조(문화재원형의 확인) ① 감리원은 문화재가 원형으로 보존·계승될 수 있도록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조사된 고증

- 1. --- 국가유산 -----
- 2. ~ 9.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 -----

- 1. ---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대책-----
국가유산 및 유구의 관람방안

- 2. ~ 9. (현행과 같음)

제3장 국가유산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

제19조(국가유산원형의 확인) ① -----
----- 국가유산이 -----
----- 국가유산수리와 -----

자료, 양식, 옛 문헌, 문화재수리 기록, 재료의 진정성,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문화재원형의 확인을 위하여 고증관련 자문 및 검토사항에 대한 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① 감리원은 법 제38조제5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2호의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간감리보고서(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되, 감리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가. 문화재수리 및 감리 개요

----- 국가유산수리 기록----- 국가유산수리의 -----

② ----- 국가유산원형-----

제20조(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① -----

1. -----

가. 국가유산수리 -----

(별지 제3호서식)

나.·다. (생략)

라. 주요공정별 문화재수리 현황(문화재수리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별지 제5호서식)

마. ~ 사. (생략)

아. 문화재수리 설계변경 현황(별지 제9호서식)

자.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별지 제10호서식)

차. 문화재수리 전후사진(별지 제10호서식)

카. (생략)

2. 최종감리보고서(감리 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문화재수리 및 감리 개요 (별지 제13호서식)

나. (생략)

다. 문화재수리 추진실적의 종합(별지 제14호서식)

라. ~ 사. (생략)

아.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별지 제20호서식)

나.·다. (현행과 같음)

라. -----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마. ~ 사. (현행과 같음)

아. 국가유산수리 -----

자. 국가유산-----

차. 국가유산수리 -----

카. (현행과 같음)

2. -----

가. 국가유산수리 -----

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유산수리 -----

라. ~ 사. (현행과 같음)

아. 국가유산-----

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별지 제21호서식)

차.·카. (생략)

②·③ (생략)

제21조(수리업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해체실측보고서, 문화재수리보고서의 중간성과물 및 감리기간 내에 완료된 최종성과물

12.·13. (생략)

14. 그 밖에 문화재수리와 관련되어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5. 해당 문화재수리 원가계산서 상의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6.·17. (생략)

제22조(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①

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차.·카.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수리업자 제출서류의 검토) -----

1. ~ 10. (현행과 같음)

11. ----- 국가유산수리보고서-----

12.·13. (현행과 같음)

14. ----- 국가유산수리-----

15. --- 국가유산수리 -----

16.·17. (현행과 같음)

제22조(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①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업자의 기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

----- 국가유산수리 -----

② ----- 국가유산수리 -----

③ ----- 국가유산수리 -----

제23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리인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현장대리인 등을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전문교육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문화재수리를 조잡하게 하거나 부실하게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문화재 또는 유구를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4. 5. (생략)
6.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를 중단한 때

1.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2. -----

----- 국가유산수리 -----
3. -----
-----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 또는 -----

4. 5. (현행과 같음)
6. -----

----- 국가유산수리-----

7. (생략)

8. 현장대리인 등이 해당 문화재수리 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문화재수리 중 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생략)

③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의 감리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감리원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감리원을 교체하도록 발주자에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제3자 손해방지)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재수리 현장 인근상황을 수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수리업자에게

7. (현행과 같음)

8. ----- 국가유산수리 -----

9. -----국가유산수리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수리 -----

제24조(제3자 손해방지) -----

----- 국가유산수리 현장 -----

----- 국가유산수리와 -----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25조(수명사항의 처리)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리원이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업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을 해당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

3. (생략)

② (생략)

제26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중별로 해당 문화재수리 착수 전부터 완료 때까지의 문화재수리 과정, 기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사진과 일

-----.

1. ~ 5. (현행과 같음)

제25조(수명사항의 처리) ① ----- 국가유산수리-----.

1. ----- 국가유산수리-----

2. -----
국가유산수리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 -----
----- 국가유산수리 착수 -----
----- 국가유산수리 과정-----

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문화재수리 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문화재수리 기록 사진은 공종별, 문화재수리 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문화재수리 현황은 각 부위별로 해당 문화재수리 전·중·후 등 문화재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단청, 벽화, 묵서명, 특수한 맞춤·이음이나 구조, 특이한 부속 및 부착물 등은 특히 문화재수리 전 상세사진 촬영
 3. 문화재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 타. (생략)
파. 해당 문화재수리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
광경
하. (생략)
- ② 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수리업자로 하여금 디지털비디오 등으로 영상촬영

----- 국가유산수리 내용 -----

----- .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

-----.

1. ----- 국가유산수리 현황-----
----- 국가유산수리 전·중·후 -- 국가유산수리 과정-----

 2. -----

----- 국가유산수리 -----
 3. 국가유산수리 -----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 국가유산수리 -----

하. (현행과 같음)
- ② -----
----- 국가유산수리-----

영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 및 비디오 등은 디지털파일 등으로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문화재수리 완료 시 발주자에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품질시험·검사 요령) ① (생략)

② 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발주자에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서식)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시공계획서의 검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

③ -----

-----.

제28조(품질시험·검사 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국가유산수리 -----

-----.

제29조(시공계획서의 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문화재수리기능자 등 인력투
입계획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 ~ 12. (생략)

③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중 시
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
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
야 한다.

제30조(시공상세도 검토·확인)

① (생략)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제
1항에 따른 각종 구조물 시공상
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
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
다.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
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측설계업자 또는 관계전문가
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생략)

2. 문화재 원형의 변화 여부

3.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
리기능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4. ~ 7. (생략)

7.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8. ~ 12.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수리 ----

-----.

제30조(시공상세도 검토·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 -----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
산수리기능자-----

4. ~ 7. (현행과 같음)

③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안정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분야 기술지원자(기술지원자가 없는 분야의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수리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 감리원 및 수리업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 7. (생략)

④ (생략)

제31조(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투입예정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기술자등의 명단’이라 한다)를 제출받아 수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

③ -----

-- 국가유산수리-----

1.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①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2조(시공 확인)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시공 확인 시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설계도면, 지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4. (생략)

② (생략)

③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의 지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3조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3조(검측업무) ①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수리업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문화재수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시공 확인)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국가유산수리-----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수리-----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검측업무) ① -----

----- 국가유산수리-----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 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수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 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이 경우,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문화재수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 7. (생략)

④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수리업자가 배치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점검하여 확인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국가유산수리-----

2. -----
국가유산수리 -----

3. ~ 7. (현행과 같음)

④ -----

-----.

1.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상주감리원의 확인 후 그 결과를 수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생략)

⑤ 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문화재수리법령, 동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35조(기술검토의견서) ①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중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문화재수리계획 및 공법 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감독관이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⑤ ----- 국가유산수리법령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기술검토의견서) ① -----
--- 국가유산수리 중 -----

국가유산수리계획 -----

② (생략)

제36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 ⑤ (생략)

⑥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인증기관 및 국
· 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2. ~ 5. (생략)

⑦ (생략)

제37조(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

① ~ ③ (생략)

④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수리업자 임의로 문화재수리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체부재의 경우에는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국가유산수리법령 -----

2. ~ 5.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 -----
----- 국가유산
수리 현장 외-----

-----.

한다.

⑤ (생략)

⑥ 감리원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이 설계도서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감리원은 공정계획, 문화재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수리업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⑨ (생략)

제38조(지장물 등 철거확인) ①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수리업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⑤ (현행과 같음)

⑥ -----

----- 국가유산수리 -----

⑦ (현행과 같음)

⑧ ----- 국가유산수리기간 -----

⑨ (현행과 같음)

제38조(지장물 등 철거확인) ① -----
----- 국가유산수리 -----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장물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리업자로 하여금 동법 제17조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9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시공과정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시행 및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행 : 시공된 문화재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행을 하도록 규

②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

----- 국가유산수리 -----
----- 매장유산 -----

-----.

② -----.

1. ----- 국가유산수리 -----

정된 경우

2. 중지 : 시공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 부분중지

- (1)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
- (2)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때
- (3) ~ (7) (생략)

나. 전면중지

- (1) 문화재의 원형이 훼손되었을 때
- (2) 수리업자가 고의로 문화재수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문화재수리의 부실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화재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 국가유산수리-

가. -----

- (1) 매장유산이-----

- (2) 국가유산-----

- (3) ~ (7) (현행과 같음)

나. -----

- (1) 국가유산-----

- (2) -----
국가유산수리의 추진-----
- 국가유산수리의 부실 -----

- 국가유산수리를 -

(3) (생략)

(4)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해당 문화재수리 전체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5)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해당 문화재수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③·④ (생략)

⑤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정여부의 확인, 문화재수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40조(공정관리) ①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가 정해진 문화재수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3) (현행과 같음)

(4) -----

- 국가유산수리 --

(5) -----

- 국가유산수리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⑥·⑦ (현행과 같음)

제40조(공정관리) ① -----
-- 국가유산수리가 정해진 국가유산수리기간 -----

② ----- 국가유산수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리업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확인 후 승인한다.

1. 수리업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생략)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 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하되 복잡한 공종의 문화재수리 또는 감리원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③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수리업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
-- 국가유산수리-----

2. (현행과 같음)
3. -----

----- 국가유산수리 조건-----

-- 국가유산수리 또는 -----

③ ----- 국가유산수리-----

- 1.·2. (생략)
- 3. 계약 문화재수리기간 준수 여부
- 4. ~ 7. (생략)
- 8. 문화재수리 현장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 9. ~ 12. (생략)

제41조(문화재수리진도 관리) ① (생략)

②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문화재수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문화재수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2조(부진공정 만회대책) 감리원은 문화재수리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은 수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3조(수정 공정계획) 감리원은

- 1.·2. (현행과 같음)
- 3. --- 국가유산수리기간 ---
- 4. ~ 7. (현행과 같음)
- 8. 국가유산수리 -----
- 9. ~ 12. (현행과 같음)

제41조(국가유산수리진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수리진도 -----

----- 국가유산수리의 -----
-----.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부진공정 만회대책) -----

---- 국가유산수리진도율 -----

-----.

제43조(수정 공정계획) -----

현장실정 또는 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수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수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관리) ① 감리원은 문화재수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제16조, 제18조 및 제29조의 2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② 감독관은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수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 국가유산수리 -----

제45조(안전관리) ① ----- 국가유산수리-----

② ----- 국가유산수리 -----

1. ~ 4. (현행과 같음)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문화재수리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동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⑨ 상주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문화재수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자문 등) 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문화재 원형의 고증, 양식, 문

③ -----
--- 국가유산수리 -----

-----.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 국가유산수리가 중지-----
국가유산수리가 중단된 -----

-----.

제49조(자문 등) ① -----

-----.

1. 국가유산 원형----- 국

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
에 관한 사항

2.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50조(설계변경 관리) ① 감리원
은 해당 문화재수리 실정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발주자는 사업환경의 변동,
기본계획의 조정, 관계전문가
자문에 따른 문화재수리 내용의
조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첨
부하여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설
계변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현지여
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
나 문화재수리비 절감 등의 사
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실
정보고서를 제출하면 접수 후 7
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
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기일 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자
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가유산수리-----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설계변경 관리) ① -----

----- 국가유산수리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수리 -----

-----.

③ -----

----- 국가유산수리비 -----

-----.

추진 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
요량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문화
재수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3조(업무조정회의) ① 발주자
는 문화재수리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 관계자간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
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하여
야 한다.

② (생략)

③ 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수리 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
는 문화재수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문화재수리 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문화재수리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 관계자
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④·⑤ (생략)

제54조(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별
지 제36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

리 추진 상 -----

----- 국가
유산수리 추진에 -----
-----.

제53조(업무조정회의) ① -----
-- 국가유산수리 시행-----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간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

-- 국가유산수리비 -----

2. 국가유산수리 -----

3. ----- 국가유산수리 시행-
-----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간-----

④·⑤ (현행과 같음)

제54조(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① -----

원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7호 서식의 감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문화재수리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② 발주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 이내에 소속 직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해당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5조(검사기간) ① 기성 또는

1. ~ 4. (현행과 같음)
5. -----
 ----- 국가유산수
리 -----

② -----

제55조(검사기간) ① -----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성부분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사진을 첨부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6조(기성 및 준공검사) ① (생략)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준공검사

가. ~ 마. (생략)

바.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감리원의 ‘문화재수리 완료 사전검토서’(별지 제42호 서식)를 포함한다]

사. (생략)

③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해

----- 국가
유산수리-----

②·③ (현행과 같음)

제56조(기성 및 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국가유산수리 -----

사. (현행과 같음)

③ -----

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기초부 지정, 석축 및 성곽의 뒷채움, 지붕 내부 등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해당 문화재수리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조서와 제33조에 따른 시공 확인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57조(불합격 문화재수리에 대한 재시행 명령) (생략)

제58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①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수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59조(예비준공검사) ①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수리 완료 30일 전에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

----- 국가유산수리 -----

-----.

제57조(불합격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재시행 명령) (현행과 같음)

제58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① -----
----- 국가유산수리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예비준공검사) ① -----
----- 국가유산수리 현장 -----

----- 국가유산수리 -----
----- 완료 -----

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준비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 문화재수리이거나 차수별 준공 등 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에 소속직원 또는 기술지원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1조(목적물 인계·인수)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문화재수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적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문화재수리 개요 등)
2. ~ 5. (생략)
- ② ~ ④ (생략)

제62조(현장문서 인계·인수) ①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목적물 인계·인수) ① -----

1. -----국가유산수리 -----
2. ~ 5.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현장문서 인계·인수) ①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감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③ (생략)

제63조(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①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완료 후 발주자와 수리업자간의 하자 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완료 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 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략)

국가유산수리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3조(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①

국가유산수리

②

국가유산수리

③ (현행과 같음)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u></p>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u>문화재수리</u>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p> <p>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감리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u>문화재감리업자</u>로서 해당 감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p> <p>2. “수리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u>문화재수리업자</u>로서 해당 <u>문화재수리</u>를 도급받</p>	<p><u>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u></p> <p>제1조(목적) -----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u>」----- ----- ----- ----- ----- ----- ----- <u>국</u> <u>가유산수리</u>에 ----- ----- ----- -----.</p> <p>제2조(정의) ----- ----- -----.</p> <p>1. ----- ----- <u>국가유산감리업자</u>----- ----- -----.</p> <p>2. ----- ----- <u>국가유산수리업자</u>로 서 해당 <u>국가유산수리</u>-----</p>

은 자(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실측설계업자”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서 해당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설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4. “감리원”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을 말한다.

5. “책임감리원”이란 영 제22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으로서 발주자와 체결된 감리계약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란 영 제22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해당 종류의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

3. -----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

4. -----
-----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감리원-----
--.

5. -----
----- 국가유산수리 -----

--.

6. -----
----- 국가유산수리 현장-----
----- 국가유산수리 기간 ----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
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감리
원을 말한다.

7. “기술지원자”란 책임감리원
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수리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8. “문화재수리관리관”이란 감
독 권한대행 등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
여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소속 직원을 말한다.

9. “현장대리인”이란 수리업자
가 지정하여 발주자에 통지한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책임감리원의 지
시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의
관리 및 문화재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설계도서”란 문화재수리시
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를 말한다.

11. “문화재수리계약문서”란 계
약서, 설계도서,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
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

-----.

7. -----
----- 국가유산수리
-----.

8.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이란 -

----- 국가유산수리에 ---

-----.

9.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수리 현장
의 --- 국가유산수리에 ----

-----.

10. ----- 국가유산수리시
방서-----

-----.

11.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란

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2. “감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지침 등 관련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13. “감리기간”이란 감리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수리업자 또는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문화재수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문화재수리기간을 포함한 감리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보고서 제출기한 60일을 포함한다.

14. “검토”란 수리업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발주자(문화재수리관리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리업자 제출서류, 현장실

--.

12. -----

----- . --
----- 국
가유산수리-----

-----.

13. -----

----- . -----
----- 국가유산수리기
간 -----
----- 국가유산수리기간 -----

----- 국
가유산수리보고서 -----
-----.

14. -----
----- 국가유
산수리와 관련된 발주자(국가
유산수리관리관)-----

정 등을 감리원이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문화재수리관리관 또는 수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확인”이란 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계약문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6. “검토·확인”이란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7. “지시”란 발주자가 문화재수리관리관에게, 문화재수리관리관이 수리업자(현장대리인)에게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감리원)에게, 감리업자가(감리원)가 수리업자(현장대리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5. ----- 국가유산수리관리관 -----

16. ----- 국가유산수리 -----

17. ----- 국가유산수리관리관 -----

다. 다만,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8.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19. “승인”이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문화재수리관리관, 감리원 또는 수리업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0. “조정”이란 설계, 문화재수

---. -----

-----.

18. -----

----- 국가유산수리-----

-----.

19. -----

----- 국가유산수리
관리관-----

-----.

20. ----- 국가유산

리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실측설계업자, 수리업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사항의 근거가 된다.

21. “실정보고”란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업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감리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자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22. “검사”란 문화재수리계약문서에 나타난 문화재수리 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리업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감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리업자가 시행한 문화재수리 결과 중

수리 -----

21. ----- 국가유산수리

22. ----- 국가유산수리계약
문서에 나타난 국가유산수리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감리원이 한다.

23. · 24. (생략)

25. “주요공정”이란 해당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공정으로, 제6조제1항의 합동 회의를 통해 결정된 공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책임감리로 시행되는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발주자·문화재수리관리관·감리업자·감리원 및 수리업자가 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발주자·감독관·감리업자·감리원·수리업자 등 문화재수리 관계자는 이 지침을 숙지하고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은 책임감리 및 문화재수리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발주자, 감리원, 수리업자의 기본임무)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

-----.

23. · 24. (현행과 같음)

25. ----- 국가유산수리-----

-----.

제3조(적용범위) ① -----
-----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발주자·국가유산수리관리관·감리업자·감리원-----

-----.

----- 국가유산수리 -----

-----.

② ----- 국가유산수리-----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발주자, 감리원, 수리업자의 기본임무) ① -----

다.

1.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의 계획 · 설계 · 발주 · 감리 · 문화재수리 · 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문화재수리 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 · 장비 · 비품 · 설비의 제공

나. 문화재수리 시행에 따른 기술지도단 등 자문위원 선정,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및 의사결정

다. 문화재수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과의 협의 및 허가 · 인가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치 또는 협력

라. (생략)

마. 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

--.

1. ----- 국가유산수리의 계획 · 설계 · 발주 · 감리 · 수리 · 사후평가-----

----- 국가유산수리 계약 -----

-----.

가. ----- 국가유산수리-----

나. 국가유산수리 -----

다. 국가유산수리 -----

라. (현행과 같음)

마. ----- 국가유산수리

일정 검토 및 조정 등 감리
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토록 조치

바.·사. (생략)

2. (생략)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문화재수리 착수 전 설
계도서 검토 및 완료 후 문화
재수리보고서의 검토·확인
등 사후관리를 감안하여 감리
에 필요한 적정 기간과 대가
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생략)

3.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성, 규
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
스트에 따라 관련 법령, 설계
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
로 시행되는지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4. (생략)

③ 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
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계약

일정 -----

바.·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국가유산수리 착수 ---
----- 국가
유산수리보고서-----

-----.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국가유산수리-----

-----.

4. (현행과 같음)

③ -----
-----.

1. ----- 국가유산수리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문화재수리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원으로 부터 재시행,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수리업자는 발주자와의 문화재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생략)

②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문화재수리계약문서, 감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수리업자의 의무와

문서-----
----- 국가유산수리방법-----

-----.

2. -----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 국가유산수리의 -----

-----.

2. -----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문화재수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리원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문화재수리에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목적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생략)
- ③ 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현장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고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자의 승인(긴급 사유

----- 국가유산수리계약조건 -----

3. -----
-- 국가유산수리 -----

4. (현행과 같음)
- ③ -----

1. ----- 국가유산수리 현장 (국가유산수리 -----

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생략)

4.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비 중 직접경비를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④ 기술지원자는 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 조사 분석 또는 주요 문화재수리 내용의 기술적 검토

2. 문화재 원형유지 검토

3.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문화재수리상세도면 검토

4. ~ 7. (생략)

8. 현장 문화재수리 시행 상태의 평가 및 지도

9.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상·하반기 각 1회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문화재수리관리관, 현장대리

-----.

2.·3. (현행과 같음)

4. -----

-----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

-----.

④ -----

-----.

1. -----
----- 국가유산수리 -----

2. 국가유산 -----

3. ----- 국가유산수리상세도면 -----

4. ~ 7. (현행과 같음)

8. --- 국가유산수리 -----

9. -----

----- 국가유산수리관리관 -----

인과 기술지원자 전원이 합동
으로 시행. 단, 반기별 합동 시
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문화재수리
시행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 확인 · 평가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

10.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발
주자가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
에 대한 검토

11. (생략)

제6조(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문화
재수리관리관의 업무범위) ①
발주자는 문화재수리 착수 및
감리 착수 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리업
자, 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원 등
문화재수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의 시행
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용지보상 지원, 민원해결
과 관련하여 설계자 및 수리업
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책임감리원에게 그 내용을

----- 국가유산수리
시행상태-----

10. 국가유산수리-----

11. (현행과 같음)

제6조(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국가
유산수리관리관의 업무범위) ①
----- 국가유산수리 착수 --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수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과 같이 사전 승인이 필요없는 감리원의 권한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함으로써 감리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문화재수리 착수 전에 책임감리원 및 수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⑥ ~ ⑧ (생략)

⑨ 발주자는 그가 발주한 문화재수리에 대한 품질·안전 확보 및 발주자의 재산상 손해 방지 등을 위하여, 관내 문화재수리 현장 간 교차 또는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검측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대상 목적물 및 공종에 대한 범위와 검측단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 국가유산수리-----

-----.

⑤ ----- 국가유산수리 -----

-----.

1. ~ 5.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 국가유산수리 현장 -----

----- 국가유산수리 현장 -----

-----.

⑩ 발주자는 문화재수리 특성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임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술자격 또는 유사경력을 갖춘 소속 직원을 문화재수리관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정·부책임자 또는 각 전문분야별로 다수의 문화재수리관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⑪ 문화재수리관리관은 문화재수리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주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 4. (생략)
5. 감리원이 수행할 수 없는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각종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를 해결하고, 특히 지역성 민원해결을 위한 합동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
6. 설계변경, 문화재수리기간 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 시 발주자로부터 검토·지시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 및 검토·보고
7. 기술지도 등 자문회의 지원 및 참석, 발주자 지시사항 전

⑩ ----- 국가유산수리 특성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 -----

-----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을 -----.

⑪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국가유산수리-----

1. 국가유산수리-----

2. ~ 4. (현행과 같음)

5. ----- 국가유산수리-----

6. ----- 국가유산수리기간 -----

7. -----

달 및 문화재수리 시행 상의
문제점 파악·보고

8.·9. (생략)

10. 문화재수리계약문서 및 감
리계약문에 따른 검사 완료
후 관계 서류의 인수

11. (생략)

⑫ 문화재수리관리관은 제11항
에 따른 업무, 책임감리 발주자
로서 감독 업무, 감리업자와 계
약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당
한 사유 없이 감리업자 및 감리
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
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⑬ 문화재수리관리관은 관계법
령 및 지침에 따라 감리원이 보
고하는 사항에 대해 걱정 여부
를 검토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설계변경(문화재수리 기간 연장
포함),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
은 사전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⑭ 문화재수리관리관은 감리원
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민원해
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원만하고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
다.

--- 국가유산수리 -----

8.·9. (현행과 같음)

10.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

11. (현행과 같음)

⑫ 국가유산수리관리관-----

⑬ 국가유산수리관리관-----

-----국가유산수리-----

⑭ 국가유산수리관리관-----

⑮ 문화재수리관리관은 문화재수리 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대한 사고가 발행하였을 때

2. 3. (생략)

⑯ 문화재수리 관리관은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각종 회의 등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⑰ 문화재수리관리관은 교체의 명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기구·자재 및 그 밖에 문화재수리와 관한 사항, 감리 과업수행과 관련된 서류 및 추진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문화재수리 및 감리 등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⑱ 문화재수리관리관은 문화재수리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법령

⑮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국가유산수리 -----

1. ----- 국
가유산수리 -----

2. 3. (현행과 같음)

⑯ 국가유산수리 관리관-----
국가유산수리와 -----
----- 국가유산수리 현장-----

⑰ 국가유산수리관리관-----

----- 국가유산수리와 -----

----- 국가유산수리 및 -----

⑱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국가유산수리 -----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문시간, 면담자, 현장실정 등
업무수행 사항을 별지 제42호서
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사업부서
의 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⑱ 문화재수리관리관은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지방
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
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
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⑳ 문화재수리관리관은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한 경우에는 기
성 및 준공검사조서에 입회자란
에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보고
및 기록 유지 사항은 제1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문화재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

제7조(행정업무) ① 감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및 기술
지원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
여야 하며,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수리의 전부

-----.

⑱ 국가유산수리관리관-----

-----.

⑳ 국가유산수리관리관-----

-----.

제2장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

제7조(행정업무) ① -----

-----.

----- 국가유산수리-----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 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감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리조직은 문화재수리 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감리원은 감리 착수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수리-----

-----.

④ ----- 국가유산수리 -----

-----.

⑤ (현행과 같음)

⑥ -----

발주자(문화재수리관리관)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 감리원은 설계도면, 문화재수리시방서, 산출내역서, 문화재수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과거 수리 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의 문화재수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조건과의 적합 여부 등 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문화재수리의 착수 이전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자는 주요구조부(가설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과 부합여부
2. ~ 4. (생략)
5. 설계도면, 문화재수리시방서,

-----(국가유산수리관리관)-----

-----.

제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 -----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산출내역서,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와 -----
-----.

② -----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

----- 국가유산수리의 -----
-----.

1. ----- 국가유산수리등-----
2. ~ 4. (현행과 같음)
5. ----- 국가유산수리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6.·7. (생략)

8. 문화재수리 시 예상 문제점
등

③·④ (생략)

제9조(설계도서 등의 관리) ① 감
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문화
재수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
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
당 문화재수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
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생략)

③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완료와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자에 반납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감리원은 문화재수리의 여건
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문화
재수리표준시방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재수리안내판 등의 설

6.·7. (현행과 같음)

8. 국가유산수리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설계도서 등의 관리) ① --
----- 국가유산수리 착수 -
----- 국가
유산수리계약문서 -----

--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수리 -----

-----.

④ ----- 국가유산수리의 --
----- 국가
유산수리표준시방서, 국가유산
수리 -----
-----.

제10조(국가유산수리안내판 등의

치) ① (생략)

② 감리원은 제1항의 안내판 제작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개요(문화재수리명, 문화재수리내용, 문화재수리기간)

2. 문화재수리 참여기관(발주자, 수리업자, 감리업자)

3. 문화재수리 관계자(감독관,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4. 참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성명, 자격명, 자격번호)

5. (생략)

제11조(착수신고서 검토) ① 감리원은 문화재수리가 착수된 경우에는 수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문화재수리 예정공정표

3. (생략)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1. 국가유산수리 개요(국가유산수리명, 국가유산수리내용, 국가유산수리기간)

2. 국가유산수리 -----

3. 국가유산수리 -----

4.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5. (현행과 같음)

제11조(착수신고서 검토) ① ----
--- 국가유산수리-----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수리 -----

3. (현행과 같음)

4. 문화재수리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문화재수리 전 사진

6.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및 자격증 사본

7. 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점검·교육 계획 등 해당 문화재수리의 안전관리 계획

8. 문화재수리기능자 투입 및 노무동원 계획서

9. ~ 11. (생략)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문화재수리 착수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문화재수리기간(착수~완료)

나. 문화재수리비 지급조건 및 방법(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문화재수리계약 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

4. 국가유산수리계약서 -----

5. 국가유산수리 ---

6.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7. -----

-- 국가유산수리-----
--

8.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9. ~ 11.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수리 -----
-----.

1. -----

가. 국가유산수리기간(착수~완료)

나. 국가유산수리비 -----

다. ----- 국가유산수리계약 문서-----

2. -----

가. 현장대리인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 등

나.·다. (생 략)

- 3. 문화재수리 예정공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문화재수리 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 4. 품질시험계획서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품질시험계획 및 검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검토)
- 5. 문화재수리 전 사진 : 문화재수리 대상 전경 및 세부현황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 6. (생 략)
- 7. 문화재수리기능자 투입 및 노무동원 계획서 : 문화재수리 계약조건, 공종 및 성격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 8. 치목·치석 등 자재 가공계획서 : 문화재수리계약문서에 따라 인력가공 또는 기계가공 등 자재 가공계획이 적정하게

3조 등

나.·다. (현행과 같음)

- 3. 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 --

국가유산수리 전·후간-----

- 4. -----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

- 5. 국가유산수리 전 -- 국가유산수리 대상 -----

- 6. (현행과 같음)
- 7.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국가유산수리 계약조건-----

- 8. -----
-----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작성되었는지 확인

제12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①·

② (생략)

③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
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문화재수리 범위, 방향 등을 표
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문화재
수리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⑤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기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
이 설치하도록 하고, 문화재수
리 완료 때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
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
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
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
시 설치한 기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문화재수리 추진
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

제12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수리 -----

-----.

④ -----

국가유산수리 범위-----

----- 국가유산
수리 전-----
-----.

1. ~ 3. (현행과 같음)

⑤ -----

----- 국가유산수
리 완료 -----
----- 국가유산수리
도중-----

-----.

1. ----- 국가유산수리 ---

이한 곳에 설치

2. 설치방법은 문화재수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제13조(확인측량 등의 실시)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착수 즉시 수리업자와 함께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확인측량 등을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해당 문화재수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 완료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2. ----- 국가유산수리기간

제13조(확인측량 등의 실시) -----
----- 국가유산수리 -----

1. -----

----- 국가유산수리 -----

2. 국가유산수리 -----

주변의 수준점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
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
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
시하여야 한다.

3. 4. (생략)

제14조(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①

감리원은 제13조에 따른 확인
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자에 그 결과를 보고
한 후 지시를 받아 해당 문화재
수리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
량 및 가수원점(TBM) 표고 확
인측량을 제외하고 해당 문화재
수리 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
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
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감리원은 제13조에 따른 확
인측량을 실시한 경우에는 확인
측량을 공동확인하고 수리업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 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
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
장대리인, 당초 설계업자(입회

-----.

3. 4. (현행과 같음)

제14조(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①

----- 국가유
산수리-----.

----- 국가유
산수리 -----

-----.

② -----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수리업자가 불법 하도급하는 것을 안 때에는 문화재수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①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착수와 동시에 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설시설물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인접 문화재 및 유구의 보호대책(목적물 내부에 위치한 문화재 및 유구의 관람 방안 또는 이동·보호조치 등을 포함한다)

2. 문화재수리용 도로

3. 수리용덧집, 가설사무소, 목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
가유산수리-----
-----.

제17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① ----- 국가유산수리 -----

-----.

1. ---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대책-----

국가유산 및 유구의 관람 ---

2. 국가유산수리용 -----

3. -----

채치목장, 가설창고, 숙소, 식당, 가설울타리, 휘장막, 우장막, 문화재수리안내판 등

-- 국가유산수리안내판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문화재수리용 전력, 용수, 전화

5. 국가유산수리용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감리원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② -----

--.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문화재수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감리원이 문화재수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문화재수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1. ----- 국가유산수리규모 -----

----- 국가유산수리 전구간 -----
----- 국가유산수리 중 -----
--

2. 가설시설물 설치로 인해 담장 등 인접 문화재 및 유구 등이 해체·변형 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되, 해체·변형이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여부 확인

2. -----
----- 국가유산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가설시설물이 문화재수리 중

4. ----- 국가유산수리 --

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5. ~ 7. (생략)

제18조(현지 여건조사) ①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문화재수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하여야 한다.

1. 인접 문화재 및 유구의 현황
2. ~ 9. (생략)

② 감리원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인접 문화재 및 유구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접 문화재 및 유구의 보호대책(목적물 내부에 위치한 문화재 및 유구의 관람방안 또는 이동·보호조치 등을 포함한다)
2. ~ 9. (생략)

제3장 문화재수리 시행단계

5. ~ 7. (현행과 같음)

제18조(현지 여건조사) ① -----
-- 국가유산수리 착수 -----
----- 국가유산수리 추진-----

-----.

1. --- 국가유산 -----
2. ~ 9.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 -----

-----.

1. ---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대책-----
국가유산 및 유구의 관람방안

2. ~ 9. (현행과 같음)

제3장 국가유산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

제19조(문화재원형의 확인) ① 감리원은 문화재가 원형으로 보존·계승될 수 있도록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조사된 고증자료, 양식, 옛 문헌, 문화재수리 기록, 재료의 진정성,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문화재원형의 확인을 위하여 고증관련 자문 및 검토사항에 대한 결과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① 감리원은 법 제38조제5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2호의 최종 감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간감리보고서(매월 작성하

감리업무

제19조(국가유산원형의 확인) ① ----- 국가유산이 -----
----- 국가유산수리와 -----
----- 국가유산수리 기록----- 국가유산수리의 -----
-----.

② ----- 국가유산원형-----

-----.

제20조(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① -----

-----.

1. -----

여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되,
감리만료일이 속하는 달은 만
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가. 문화재수리 및 감리 개요
(별지 제3호서식)

나.·다. (생략)

라. 주요공정별 문화재수리
현황(문화재수리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
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
함한다)(별지 제5호서식)

마. ~ 사. (생략)

아. 문화재수리 설계변경 현
황(별지 제9호서식)

자.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별지 제10호 서식)

차. 문화재수리 전후사진(별
지 제10호서식)

카. (생략)

2. 최종감리보고서(감리 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문화재수리 및 감리 개요
(별지 제13호서식)

나. (생략)

다. 문화재수리 추진실적의
종합(별지 제14호서식)

라. ~ 사. (생략)

가. 국가유산수리 -----

나.·다. (현행과 같음)

라. -----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
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마. ~ 사. (현행과 같음)

아. 국가유산수리 -----

자. 국가유산-----

차. 국가유산수리 -----

카. (현행과 같음)

2. -----

가. 국가유산수리 -----

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유산수리 -----

라. ~ 사. (현행과 같음)

아.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별지 제20호
서식)

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
재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
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별지 제21호서식)

차.·카. (생략)

②·③ (생략)

제21조(문화재수리업자 제출서류
의 검토)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
확인하며 접수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
내에 수리업자에게 문서로 보완
을 지시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해체실적보고서, 문화재수
리보고서의 중간성과물 및 최
종성과물

12.·13. (생략)

14. 그 밖에 문화재수리와 관련
되어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
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5. 문화재수리 원가계산서 상

아. 국가유산-----

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
가유산수리기능자 -----

차.·카.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국가유산수리업자 제출서
류의 검토) -----

1. ~ 10. (현행과 같음)

11. ----- 국가유산수
리보고서-----

12.·13. (현행과 같음)

14. ----- 국가유산수리-----

15. 국가유산수리 -----

의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
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6. · 17. (생략)

제22조(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①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업자의 기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16. · 17. (현행과 같음)

제22조(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①

----- 국가유산수리 -----

② ----- 국가유산수리 -----

③ ----- 국가유산수리 -----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발주자(문화재수리
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
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문화재수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수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
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25
호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
다. 경미한 민원처리 사항 중 중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
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문화재수
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
자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
리인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수리업자 대표자 및 본인에
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
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
여 발주자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유산수리
관리관)가-----

⑤ ----- 국가유산수리-----

제23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기능자 -----

1. 현장대리인 등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전문교육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문화재수리를 조잡하게 하거나 부실하게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문화재 또는 유구를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4. 5. (생략)
6.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재수리를 중단한 때
7. (생략)
8. 현장대리인 등이 해당 문화재수리 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문화재수리 중 사망 1

1.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2. -----

----- 국가유산수리 -----
3. -----
-----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 또는 -----

4. 5. (현행과 같음)
6. -----

----- 국가유산수리-----
7. (현행과 같음)
8. ----- 국가유산수리 -----

9. -----
----- 국가유산수리 -----

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
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
에 10인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건의
를 받은 발주자는 문화재수리관
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제1항의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
될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교체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의 감리원에게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감리원이 시정지
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
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감리원을 교체하도록 발주
자에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제3자 손해방지) ① 감리
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재수리
현장 인근상황을 수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해당 문
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

② -----
----- 국가유산수리
관리관-----

③ (현행과 같음)

④ ----- 국가유산수리-----

제24조(제3자 손해방지) ① -----
----- 국가유산수
리 현장 -----
----- 국
가유산수리와 -----

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수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시행 중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수리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손해를 배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수명사항의 처리)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리원이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업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을 해당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및 관련

-----.

1. ~ 5.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유산수리 -----

-----.

제25조(수명사항의 처리) ① -----
----- 국가유산수리 -----
-----.

1. ----- 국가유산수리 -----

2. -----
국가유산수리 -----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

3. (생략)

② 감리원은 문화재수리관리관 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관리관 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3. (생략)

제26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중별로 해당 문화재수리 착수 전부터 완료 때까지의 문화재수리 과정, 기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사진과 일자, 위치, 공중,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문화재수리 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문화재수리 기록 사진은 공중별, 문화재수리 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

3.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유산수리관리관

1. 국가유산수리관리관-----

2.·3. (현행과 같음)

제26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 --

----- 국가유산수리 착수 -
----- 국가유산수리 과정,-----

----- 국가유산수리 내용 -----

-----,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문화재수리 현황은 각 부위별로 해당 문화재수리 전·중·후 등 문화재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단청, 벽화, 묵서명, 특수한 맞춤·이음이나 구조, 특이한 부속 및 부착물 등은 특히 문화재수리 전 상세사진 촬영

3. 문화재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 타. (생략)

파. 해당 문화재수리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과정

하. (생략)

② 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수리업자로 하여금 디지털비디오 등으로 영상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 및 비디오 등은 디지털파일 등으로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문화재수리 완료 시 발주자

----.

1. ----- 국가유산수리 현황--
----- 국가유산수리 전·중·후 -- 국가유산수리 과정-----

2. -----

----- 국가유산수리 -----

3. 국가유산수리 -----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 국가유산수리 -----

-

하.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수리-----

-----.

③ -----

-- 국가유산수리 -----

에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를 보
관하여야 한다.

제27조(품질관리 (또는 시험) 계
획의 관리) ① 감리원은 수리업
자가 문화재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28조(품질시험·검사 요령) ①
(생략)

② 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
산업규격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 품질시험·검사
를 실시하여야 할 해당 문화재
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는
국·공립시험 기관 또는 국토교
통부장관 등에게 등록된 품질검
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⑥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해
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

-----.

제27조(품질관리 (또는 시험) 계
획의 관리) ① -----
---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품질시험·검사 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

-----.

③ 국가유산수리 품질시험·검
사----- 국가유
산수리의 -----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국가유산수리-----

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서식)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6. (생략)
- 7. 문화재수리기능자 등 인력투입계획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 8. ~ 12. (생략)

③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시공상세도 승인) ① (생략)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완료 시 발주자에 보고하여

-----.

제29조(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1. ~ 6. (현행과 같음)
- 7.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8. ~ 12.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수리 -----

-----.

제30조(시공상세도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야 한다.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실측설계업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생략)
2. 문화재 원형의 변화 여부
3.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4. ~ 7. (생략)

③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안정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분야 기술지원자(기술지원자가 없는 분야의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수리의 조건에 따라 감리원과 수리업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 7.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 -----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4. ~ 7. (현행과 같음)

③ -----

1. ~ 7. (현행과 같음)

④ (생략)

제31조(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투입예정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기술자등의 명단’이라 한다)를 제출받아 수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작업계획 공중,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 일일 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2조(시공 확인)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시공 확인 시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중을 반드시 확인

3·4. (생략)

② (생략)

③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의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①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시공 확인) ① -----

1. (현행과 같음)

2. ----- 국가유산수리-----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수리-----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3조에서 정한 검측 업무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3조(검측업무) ①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수리업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문화재수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수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 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이 경우,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검측업무) ① -----

----- 국
가유산수리-----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국가유산수리-----

-----.

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문화재수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 7. (생략)

④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 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수리업자가 배치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점검하여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감리원의 확인 후 그 결과를 수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생략)

⑤ 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지방서, 문화재수리법령, 동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

2. -----
국가유산수리 -----

--

3. ~ 7. (현행과 같음)

④ -----

-----.

1.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

2. (현행과 같음)

⑤ -----
----- 국가유산수리법령 -----

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35조(기술검토의견서) ①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중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문화재수리계획 및 공법 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발주자가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6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 ⑤ (생략)
⑥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인증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2. ~ 5. (생략)

⑦ (생략)

제37조(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기술검토의견서) ① -----
---- 국가유산수리 중 -----

국가유산수리계획 -----

-----.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국가유산수리법령 -----

2. ~ 5.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

원은 수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시공과정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시행 및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행 : 시공된 문화재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행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중지 : 시공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 부분중지

(1)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

(2)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

----- 국가유산수리 -----

----- 매장유
산을 -----

② -----

1. ----- 국가유산수
리 -----

2. ----- 국가유산수리 -----

가. -----

(1) 매장유산이 -----

(2) 국가유산 -----

을 때

(3) ~ (7) (생략)

나. 전면중지

(1) 문화재의 원형이 훼손되었을 때

(2) 수리업자가 고의로 문화재수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문화재수리의 부실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화재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3) (생략)

(4)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해당 문화재수리 전체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5)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해당 문화재수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3) ~ (7) (현행과 같음)

나. -----

(1) 국가유산-----

(2) -----
국가유산수리의 추진-----
- 국가유산수리의 부실 -----

- 국가유산수리를 -----

(3) (현행과 같음)

(4) -----

- 국가유산수리 --

(5) -----

- 국가유산수리----

③·④ (생략)

⑤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 4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문화재수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40조(공정관리) ①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가 정해진 문화재수리기간 내에 지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리업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업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국가유산수리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40조(공정관리) ① -----
-- 국가유산수리가 정해진 국가유산수리기간 -----

-----.

② ----- 국가유산수리

-----.

1. -----
-- 국가유산수리-----

2. (현행과 같음)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 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하되 복잡한 공종의 문화재수리 또는 감리원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③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수리업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계약 문화재수리기간 준수 여부
4. ~ 7. (생략)
8. 문화재수리 현장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9. ~ 12. (생략)

제41조(문화재수리진도 관리) ① (생략)

②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문화재수리진도를 확

3. -----

----- 국가유산수리 조건-----

-- 국가유산수리 또는 -----

③ ----- 국가유산수리-----

1. 2. (현행과 같음)

3. --- 국가유산수리기간 ----

4. ~ 7. (현행과 같음)

8. 국가유산수리 -----

9. ~ 12. (현행과 같음)

제41조(국가유산수리진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수리진도-----

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해당 문화재수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수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다음 각 목에 대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문화재수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생략)

2. 문화재수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분석

3. (생략)

4. 그 밖에 문화재수리 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

제42조(부진공정 만회대책) ① 감리원은 문화재수리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 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수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

----- 국가유산수리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국가유산수리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수리 -----

3. (현행과 같음)

4. ----- 국가유산수리 -----

제42조(부진공정 만회대책) ① -----
----- 국가유산수리진도율 -----

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제41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3조(수정 공정계획) ① 감리원은 현장실정 또는 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수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5조(안전관리) ① 감리원은 문화재수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제16조, 제18조 및 제29조의 2 등 관련 규정에

-----.

② -----

----- 국가유산수리 -----

-----.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수정 공정계획) ① -----

----- 국가유산수리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안전관리) ① ----- 국가유산수리 -----

따른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② 책임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수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문화재수리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⑨ 책임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문화재수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

-----.

② ----- 국가유산수리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 국가유산수리 -----

-----.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 국가유산수리 -----
리가 중지 -----
국가유산수리가 중단된 -----

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 (중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⑩ 문화재수리관리관은 감리원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원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자문 등) ① 감독관 또는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문화재 원형의 고증, 양식,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 5. (생략)
- ② ~ ④ (생략)

제50조(설계변경 관리) ①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실정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⑩ 국가유산수리관리관-----

제49조(자문 등) ① -----

1. 국가유산 원형----- 국가유산수리-----
2. ~ 5.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설계변경 관리) ① -----
----- 국가유산수리 -----

1. ~ 3. (생략)

② 발주자는 사업환경의 변경, 기본계획의 조정, 관계전문가 자문에 따른 문화재수리 내용의 조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문화재수리비 절감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실정보고서를 제출하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⑩ (생략)

⑪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

1. ~ 3.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수리 -----

③ -----

----- 국가유산수리비 -----

④ ~ ⑩ (현행과 같음)

⑪ -----

리를 지체함으로써 수리업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문화재수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1조(설계변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①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문화재수리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원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수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도 문화재수리 추진 상 필요한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문화재수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 국가유산수리 -----

-----.

제51조(설계변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① -----

----- 국가유산수리의 -----
----- 국가유산수리비 -----

-----.

② -----

----- 국가유산수리 추진 상 -----

-----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

조치하여야 한다.

제53조(업무조정회의) ① 발주자는 문화재수리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 관계자간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수리 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문화재수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문화재수리 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문화재수리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 관계자 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④·⑤ (생략)

제54조(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감리조서와 다

-----.

제53조(업무조정회의) ① -----

-- 국가유산수리 시행-----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간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

-- 국가유산수리비 -----

2. 국가유산수리 -----

3. ----- 국가유산수리 시행-----

-----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간-----

④·⑤ (현행과 같음)

제54조(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① -----

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감리업자 대표자는 각종 설
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
함된 문화재수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
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
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
다.

⑥ 발주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
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
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자가 계약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
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4
3호서식을 작성하여 확인하여
야 하며, 필요 시 해당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
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55조(검사기간) ①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
다)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
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문화
재수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국가유산수리-----

-----.

⑥ -----

----- 국가유산

-----.

⑦·⑧ (현행과 같음)

제55조(검사기간) ① -----

----- 국가

유산수리-----

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59조(예비준공검사) ① 감리원
은 문화재수리 현장에 주요공사
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문화재수리 완료 45일 전
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
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 문화재수리이거나 차수
별 준공 동일 경우에는 발주자
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예
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
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입회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61조(목적물 인계·인수) ① 감
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문화재수리의 예비준공검사(부
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예비준공검사) ① -----
-- 국가유산수리 현장-----

---- 국가유산수리 완료 ----

---- 국가유산수리-----

② -----

----- 국가유
산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목적물 인계·인수) ① --

국가유산수리-----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적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문화재수리 개요 등)
2. ~ 5. (생략)
- ② ~ ⑦ (생략)

제62조(문화재수리보고서 검토·확인)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문화재수리보고서 초안을 해당 문화재수리 완료일까지 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재수리보고서를 보완하고,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해당 문화재수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발주자, 수

1. -----국가유산수리 -----
2. ~ 5. (현행과 같음)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2조(국가유산수리보고서 검토·확인) ① -----

----- 국가유산수리보고서 -----
----- 국가유산수리 완료일-----

② -----

국가유산수리보고서-----

국가유산수리 완료일-----

③ -----

국가유산수리보고서-----

리업자 및 감리원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한 감리대가는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문화재수리보고서를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현장문서 인계·인수) ①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감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③ (생략)

제64조(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①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완료 후 발주자와 수리업자 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완료 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

-----.

-----.

④ -----
국가유산수리보고서-----

-----.

제63조(현장문서 인계·인수) ① -----
국가유산수리-----

-----.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① -----
국가유산수리 -----

-----.

② -----
국가유산수리 -----

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6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발주자의 지도 감독 및 문화재수리관리관의 업무 범위: 2022년 1월 1일
2. ~ 4.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규제의 재검토) -----

-----.

1. -----
----- 국가유산수리관리관 -----

2. ~ 4. (현행과 같음)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u></p> <p>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u>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u>(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5. "인증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라 한다)은 종합심사를 통해 심의·판정 및 인증제 사후관리를 하는 <u>문화재</u> 또는 <u>교육</u>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6. "인증조사위원"(이하 "조사위원"이라 한다)은 요건 및 현장심사, 인증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u>문화재</u> 또는 <u>교육</u> 분야 	<p style="text-align: center;"><u>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u></p> <p>제1조(목적) ----- -----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 ----- <u>문화유산교육</u> ----- -----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5. ----- ----- <u>문화유산</u> ----- -----. 6. ----- ----- ----- <u>문화유산</u> -----

전문가를 말한다.

7. (생략)

제3조(인증제 운영기관) ① 문화재청장은 효율적으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을 지정한다.

②·③ (생략)

제4조(인증심의위원회) ① 인증제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재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 ④ (생략)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문화재청장은 추천 및 공모 등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조사위원을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 또는 교육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 또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업무에 전문

-----.

7. (현행과 같음)

제3조(인증제 운영기관) ① -----
----- 문화유산
교육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인증심의위원회) ① -----

-- 문화유산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

-----.

1. -----
-- 문화유산 -----

2. 문화유산 -----

3. ----- 문화유산교육 -----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③ (생략)

제9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의 4서식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요건심사) ① 조사위원은 요건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 심사표를 작성하고, 심사결과를 적합, 미흡으로 판정한다.

② (생략)

제14조(현장심사) ① (생략)

② 조사위원은 현장심사 후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장 심사표를 작성한다.

제15조(종합심사) ① 심의위원회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를 작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인증신청) ① -----

----- 문화유산교육 프
로그램 인증신청서-----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요건심사) ① -----

문화유산교육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현장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문화유산교육 -----
-----.

제15조(종합심사) ① -----

----- 문화유산교
육 -----

성한다.

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를 작성한다.

제17조(인증서 발급) 법 제22조의 6제3항 및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는 자에게 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참가확인서 발급)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행기관 또는 단체의 장 명의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4조(기타사항)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이 세칙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

② -----

----- 문화유산교육 -----

-----.

제17조(인증서 발급) -----

----- 문화유산교육 -----
-----.

제21조(참가확인서 발급) -----

----- 문화유산교육 -----
-----.

제24조(기타사항) 문화유산교육 -----

-----.

제25조(재검토기한) -----

----- 이 세칙 -----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u></p>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u>문화재감리업자</u>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u>문화재수리의 감리</u>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상주감리”란 법 14조제1항에 따른 <u>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u>상주문화재감리원</u>을 배치하여 해당 <u>문화재수리</u>에 대해 일반 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p> <p>2. “비상주감리”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u>문화재감리업자</u>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u>비상주문화재감리원</u>을 배치하여 해당 <u>문화재수리</u>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u></p> <p>제1조(목적) -----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u>」----- ----- ----- <u>국가유산감리업자</u> ----- <u>국가유산수리의</u> ----- -----.</p> <p>제2조(정의) ----- -----.</p> <p>1. ----- ----- <u>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u>상주국가유산감리원</u>----- -- <u>국가유산수리</u>에 ----- -----.</p> <p>2. ----- ----- <u>국가유산감리업자</u> ----- ----- <u>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u>----- ----- <u>국가유산수리</u>----- -----.</p>

3. “감리원”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을 말한다.

4.·5. (생략)

6. “수리비요율방식”이란 문화재수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7.·8. (생략)

9. “문화재수리비”란 발주자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수리비를 말한다.

10.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3. -----
-----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감리원-----
--.

4.·5. (현행과 같음)

6. ----- 국가유산수리비-----

--.

7.·8. (현행과 같음)

9. “국가유산수리비”란 -----

-----.

10. -----
-----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

-----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

제3조(적용) -----
----- 국가유산감리업자-----

적용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생략)
 2. 해당 문화재수리의 설계변경으로 문화재수리 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문화재수리 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며, 문화재수리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문화재수리비는 당초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3. 4. (생략)
 5. 수리비요율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 경우로 해당 문화재수리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기간(문화재수리 중지기간은 제외한다)이 당초 계약기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된 경우
 6. 7. (생략)
- ② 발주자는 감리 계약 시 총 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서 등에 명시된 문화재수리

-----.

제5조(대가의 조정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으로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수리 계약금액 변동분 -----

국가유산수리 계약금액이 --
----- 국가유산수리비-----

-----.
 3. 4. (현행과 같음)
 5. -----
-----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기간(국가유산수리 -----

 6. 7. (현행과 같음)
- ② -----

----- 국가유산수리

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경우에는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① 해당 문화재수리 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 도입으로 문화재수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대가 중 직접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금액 조정할 수 없다.

② (생략)

제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① (생략)

② 발주자는 해당 문화재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총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하여야 한다.

- 해당 문화재수리의 내용 및 진척상황, 연도별 문화재수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문화재수리 중지기간 등 문화재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문화재수리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 1인 이상이

-----.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① ---
국가유산수리 내용-----
----- 국가유산수리비-----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수리의 -----
----- 국가유산수리비 -----

----- 국가유산수리 중지기간 -- 국가유산수리
가 -----
-----.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문화재수리의 경우,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총감리원수를 추가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가. ~ 라. (생략)

③ 발주자는 문화재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감리원수의 범위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조정된 감리원의 수가 영 제 22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2. 신기술·특수공법이 포함된 문화재수리
3. 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

2. 국가유산수리 예정가격-----
-----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

-----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

가. ~ 라.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수리-----

-----.

1. -----
국가유산수리
2. -----
국가유산수리
3. -----

필요가 있는 문화재수리

4. 중요문화재(지정문화재 중 국보, 보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수리

제10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등 감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 2에 따르되 발주자가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12조(기술료) 기술료는 문화재감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한다.

제13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

----- 국가유산수리

4. 중요유산(지정유산 -----

----- 국가유산수리

제10조(직접경비) -----

----- 국가유산수리-----
-----.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술료) ----- 국가유산감리업자-----

-----.

제13조(추가업무비용) -----

-----.

만, 제2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생략)
2. 문화재위원, 실측설계기술자, 전문기술자 등에 의한 자문 또는 위탁
3. 4. (생략)
5.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된 경우의 추가업무(책임감리의 경우에 한함)
6. (생략)

제15조(요율의 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 발주자는 감리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문화재수리 현장이 도서지역, 산간벽지 등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곳에 위치한 경우
2. 3. (생략)
4.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위원-----

3. 4. (현행과 같음)
5. -----
-- 국가유산수리보고서-----

6. (현행과 같음)

제15조(요율의 조정) -----

-----.

1. 국가유산수리 -----

2. 3. (현행과 같음)
4. ----- 국가유산수리 -----

--

제16조(추가업무비용) -----

용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
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
만, 제2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
로 지급할 수 있다.

1. (생략)
2. 문화재위원, 실측설계기술자,
전문기술자 등에 의한 자문
또는 위탁
3. ~ 5. (생략)

제17조(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
을 때의 요율) 문화재수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_1 - \frac{(x-x_2)(y_1-y_2)}{(x_1-x_2)}$$

* x : 해당 문화재수리비,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해당 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22조(기술료) 기술료는 문화재
감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
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
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
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
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부터 40퍼센트까지로 한다.

제23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
용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위원-----

3. ~ 5. (현행과 같음)

제17조(국가유산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국가유산수리
비-----

$$y = y_1 - \frac{(x-x_2)(y_1-y_2)}{(x_1-x_2)}$$

* x : 해당 국가유산수리비,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해당 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22조(기술료) ----- 국가유산
감리업자-----

제23조(추가업무비용) -----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
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
만, 제2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
로 지급할 수 있다.

1. (생략)
2. 문화재위원, 실측설계기술자,
전문기술자 등에 의한 자문
또는 위탁
- 3.·4. (생략)
5.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된 경우의 추가업
무(책임감리의 경우에 한함)
6. (생략)

-----.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위원-----

- 3.·4. (현행과 같음)
5. -----
-- 국가유산수리보고서-----

6. (현행과 같음)

**문화재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문화재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u></p> <p>1. 수탁기관 : <u>문화재수리협회</u> (회장 : 김상임)</p> <p>- 소재지 : <u>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47 서광빌딩 6층 602</u></p> <p>2. 위탁업무의 내용</p> <p>○ 법 제13조의2에 따른 <u>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u>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의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p> <p>○ 법 제14조의2에 따른 <u>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의</u> 평가·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p> <p>○ 법 제14조의3에 따른 <u>문화재수리업자등에</u> 관한 정보와 <u>문화재수리 관련</u> 정보의 관리·제공 및 <u>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u> 구축·운영</p> <p>○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u>문화재수리</u> 보고서 및 감리 보</p>	<p><u>국가유산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u></p> <p>1. ----- <u>국가유산수리협회</u> (회장 : 여인환)</p> <p>- 소재지 : <u>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43 로얄타워 7층</u></p> <p>2. -----</p> <p>----- <u>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u> -----</p> <p>-----</p> <p>----- <u>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u> -----</p> <p>-----</p> <p>----- <u>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u> -----</p> <p><u>국가유산수리 관련</u> -----</p> <p>----- <u>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u> -----</p> <p>----- <u>국</u> <u>가유산수리</u> -----</p>

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
----------------------	-------------

**문화재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문화재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u></p> <p>1. 고 시 명 : <u>문화재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u></p> <p>2. 고시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등의 발급 수수료</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수수료</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u></p>	<p style="text-align: center;"><u>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u></p> <p>1. ----- <u>국가유산수리</u> ---- ----- --</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u>」 제13조의2에 따른 <u>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u> -----</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u>」 제14조의2에 따른 <u>국가유산수리</u> ----- -----</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u>」 제14조의3에 따른 <u>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u></p>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문화재수리 관련 정보 제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없음</td> </tr> </tbody> </table>	구 분	수수료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 제공	없음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없음</td> </tr> </tbody> </table>	구 분	수수료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	없음
구 분	수수료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 제공	없음								
구 분	수수료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	없음								

10. 문화재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문화재수리 보고서 등의</u> <u>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u> <u>위탁기관 지정</u></p> <p>1. 수탁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 진흥재단 (<u>이사장 : 이상해</u>)</p> <p>2. 위탁업무의 내용</p> <p style="padding-left: 2em;">○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u>문</u> <u>화재수리</u> 보고서 및 감리 보 고서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u>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등의</u> <u>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u> <u>위탁기관 지정</u></p> <p>1. ----- ----- (<u>이사장 : 김창준</u>)</p> <p>2. ----- ----- <u>국</u> <u>가유산수리</u> ----- ----- --</p>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u></p>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u>문화재 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문화재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u>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u>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문화재수리 설계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u>한다.</p> <p>② <u>문화재수리 설계는 문화재 보수·정비·복원 및 손상방지 등을 위한 설계로서 보수설계·정비설계·복원설계로 구분</u>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문화재실측설계업자</u>”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u>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u></p> <p>제1조(목적) -----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u>」----- ----- <u>국가유산 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u>----- -----.</p> <p>제2조(적용범위) ① ----- ----- <u>국가유산 실측설계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u> ----- --.</p> <p>② <u>국가유산수리 설계는 국가유산</u> ----- ----- ----- --.</p> <p>제3조(용어의 정의)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u>”란 ----- -----.

3. “문화재수리”라 함은 법 제2 조제1호에 규정한 문화재수리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보수설계”란 해당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유지·보수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수리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5. “정비설계”란 해당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 주변정비, 유구정비, 마을정비, 관리 및 활용 관련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6. “복원설계”란 해당 문화재를 복원 기준연대의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7. ~ 9. (생략)

10. “총예정금액”이라 함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제7조(업무범위) 공사비요율방식

3.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를 -----.

4. ----- 국가유산의 -----
----- 국가유산수리공사-----
-----.

5. ----- 국가유산의 ----- 국가유산 주변정비-----

-----.

6. ----- 국가유산을 -----

-----.

7. ~ 9. (현행과 같음)

10. -----
-----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

-----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제7조(업무범위) -----

을 적용하는 문화재수리 설계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제8조(설계업무) ①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호 “고증 및 현황조사 업무”에서 고증조사 업무는 문화재의 시대, 가치, 내용 등을 고문헌과 대상 건물, 기타 자료 등을 기초로 실증하여 밝혀내는 조사 업무이며, 현황조사 업무는 문화재 수리 및 기초조사를 위하여 문화재 주변현황, 진입도로, 배수관계, 문화재의 퇴락정도, 보수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이다. 고증 및 현황조사 업무의 조사항목은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2]를 참조한다.

③ 제7조제2호 “실측 업무”란

----- 국가유산수리 -----
-----.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설계업무) 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

국가유산의 시대-----

-- 국가유산 수리 -----
---- 국가유산 주변현황-----
----- 국가유산의 퇴락정도-----

-----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

③ -----

문화재 수리를 위하여 문화재 주변 배치를 비롯한 대상 문화재의 평면, 기단부, 축부, 지붕부의 기본 치수를 조사·실측하고(기본실측), 수리 범위 및 중요 부재 중 시공에 필요한 부분의 치수·기법 등을 상세하게 조사·실측(상세실측)하는 업무를 말하며, 실측 업무의 조사항목은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3]을 참조한다.

④ 제7조제3호 “설계도서 작성 업무”란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고증조사 관련자료,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사진첩 등 공사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하며, 설계도서의 작성 항목은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1]을 참조한다.

⑤ (생략)

제12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등의 노

국가유산 수리----- 국가유산 주변 ----- 국가유산의 -----

---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④ ----- 국가유산수리와 -----

-----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직접인건비) ① -----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

②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등의

임단가는 해당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등의 급료 및 제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기술자(건설 및 기타)의 노임가격으로 산정한다.

③ (생략)

제13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생략)

1. ~ 4. (생략)
5.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6. ~ 10. (생략)

②·③ (생략)

제15조(기술료) 기술료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노임단가-----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등의 급료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급·배수-----

6.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기술료)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u></p>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문화재수리 즉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p> <p>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기준은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발주처의 위탁을 받아 문화재수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단, 동산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② 문화재수리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도서 변경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p> <p>③ (생략)</p> <p>제3조(설계의 구분) <u>문화재수리</u></p>	<p><u>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u></p>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p> <p>제2조(적용 범위) ① ----- <u>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u>----- ----- <u>국가유산수리</u> ----- ----- ----- <u>동산문화유산</u> ----- ----- ② <u>국가유산수리공사</u> ----- ----- -----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설계의 구분) <u>국가유산수리</u></p>

설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수리”라 함은 법 제2조 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재수리 설계”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유지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자기책임 하에(실측설계사보 등 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재수리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란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고증조사 관련 자료,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사진첩 등의 도서를 말한다.
4. “문화재수리 설계업무”는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고증 및 현황조사’, ‘실측’, ‘설계도서 작성’, ‘그 밖의 업무’의 네 영역으로 구분된다(이는 현대건축

-----.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용어의 정의) -----

-----.

1. “국가유산수리”-----
-----.
2. “국가유산수리 설계”란 국가유산-----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3.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수리와

-----.
4.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는 국가유산 -----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에서 구분하는 계획·중간·
실시설계 세 단계의 ‘건축설계
업무’를 통합한 업무량을 말한
다.).

5. “보수설계”란 해당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유지·보수 및 활
용을 위하여 문화재수리공사
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
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6. “정비설계”란 해당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문
화재 주변정비, 유구정비, 마
을정비, 관리 및 활용 관련 건
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7. “복원설계”란 해당 문화재를
복원 기준연대의 모습으로 회
복하는데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8. “고증조사”란 문화재의 시대
· 가치· 특성 등을 사료와 대
상 건물의 건축특징(구조, 양
식, 재료 등), 기타 자료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9. “현황조사”란 문화재수리 및
기초조사를 위하여 문화재 주
변현황, 진입도로, 배수관계,

5. ----- 국가유산
의 -----
----- 국가유산수리공
사-----
-----.

6. ----- 국가유산
의 ----- 국
가유산 주변정비-----

-----.

7. ----- 국가유산
을 -----

-----.

8. ----- 국가유산-----

-----.

9. -----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
주변현황-----

문화재의 퇴락정도, 보수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기본실측”이란 문화재수리의 기본도면 작성을 위하여 해당 문화재 구역을 비롯하여 대상 문화재의 평면, 기단부, 축부, 지붕부의 기본 치수 등을 조사하는 실측업무를 말한다.

11. “상세실측”이란 해당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부분의 상세도면 작성을 위하여 수리 범위 및 중요 부재의 치수, 기법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실측업무를 말한다.

제5조(설계도서 작성 시 공통사항) ① 설계도서는 「문화재수리규범」을 준수하여 작성토록 한다.

문화재 수리규범

1. 원래의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2. 원래의 사용재료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3. 전통기법으로 수리한다.
4. 재료의 대체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4.1 문화재를 그대로 둘 경우, 붕괴·소멸되어 새로운 재료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 4.2 보강 없이는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
5. 문화재가 지닌 특성을 간직한 채 전체적으로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리대상물은 수리하기 전의 상태와 수리 후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수리절차와 처리 방

국가유산의 -----

-----.

10. -----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 구역-----
-- 국가유산의 -----

-----.

11. ----- 국가유산수리-----

-----.

제5조(설계도서 작성 시 공통사항) ① ----- 「국가유산수리규범」-----
-----.

국가유산 수리규범

1. 원래의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2. 원래의 사용재료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3. 전통기법으로 수리한다.
4. 재료의 대체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4.1 국가유산을 그대로 둘 경우, 붕괴·소멸되어 새로운 재료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 4.2 보강 없이는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
5. 국가유산이 지닌 특성을 간직한 채 전체적으로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리대상물은 수리하기 전의 상태와 수리 후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수리절차와 처리 방

법 등 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고 서로 남긴다.

- 7. 문화재 수리내용을 모두 기록 보존하고, 문화재 를 파손시키거나 변형하지 않도록 한다.
- 8. 수리는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한다.
- 9. 모든 수리는 원형보존의 원칙을 준수하되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문화재수리의 실측은 기본실측을 토대로 하며, 수리 범위 및 주요 부재 가운데 시공에 필요한 부분은 상세실측을 한다.

⑤ 설계도서 작성 시 문화재유형별 유의사항과 관련지침은 [별표4]에 따른다.

⑥ ~ ⑨ (생략)

⑩ 수리공사 시 발생한 ‘재사용 불가능 부재’ 가운데 문화재로서의 특성과 기법이 반영된 주요 부재의 선정과 이전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부재선정, 운반 등 관련 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⑪ 문화재수리보고서 작성 및 발간,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기술한다.

⑫ 목조건물의 해체·지붕보수(경미한 기와 고르기 제외), 기타 특수한 경우의 문화재 보수

법 등 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고 서로 남긴다.

- 7. 국가유산 수리내용을 모두 기록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파손시키거나 변형하지 않도록 한다.
- 8. 수리는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한다.
- 9. 모든 수리는 원형보존의 원칙을 준수하되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유산수리-----

-----.

⑤ ----- 국가유산유형별 -----
-----.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 국가유산으-----

-----.

⑪ 국가유산수리보고서-----

-----.

⑫ ----- 국가유산 -----

시 가설 비계 또는 수리용 덧집을 설치하고, 그 규모는 공사규모, 내용, 중량물 취급정도에 따라 담당원과 상의 하에 결정하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가. 풍압 및 설 하중 등의 안전성, 작업의 편리성, 문화재 손상방지

나. (생략)

⑬ ~ ⑮ (생략)

⑯ 문화재 방재설비 설치 시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 지침」의 방재설비별 사업시행기준에 맞게 설계한다.

⑰ (생략)

⑱ 문화재안내판 설치 시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은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의 기준에 맞춰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⑲ 문화재보수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라 공사안내판에는 참여자(기능자 포함)를 기재한다.

가. -----
----- 국가유산 -----

나. (현행과 같음)

⑬ ~ ⑮ (현행과 같음)

⑯ 국가유산 방재설비 -----
「국가유산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 지침」-----
-----.

⑰ (현행과 같음)

⑱ 국가유산안내판 설치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국가유산안내판 가이드라인-----
--- 국가유산의 -----

---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

⑲ 국가유산보수공사 -----

-----.

제6조(설계설명서 작성) ①·②
(생략)

③ 연혁에는 해당 문화재 창건 및 중건년도, 관련 인물, 전설 등의 관련 사항과 보수정비 이력(연도, 보수범위, 보수내용)을 기술한다.

④ 환경, 지형, 면적, 배수관계, 건물배치 현황 등의 주변 현황과 보수대상 문화재의 구조, 보존상태, 수리 부위 및 원인 등의 보수대상 현황을 기술한다.

⑤·⑥ (생략)

제7조(공사시방서 작성) ① 공사시방서는 문화재청 제정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칙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상황,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특기시방서는 「현판 제작 특기시방서 작성 지침」과 같이 해당 문화재수리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사안에 작성토록 한다.

②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

제6조(설계설명서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 -----

-----.

④ -----

----- 국가유산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공사시방서 작성) ① -----
-----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

----- 국가유산수리 -----
-----.

----- 국가유산수리 -----
-----.

②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

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③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와 해당 문화재에 적용된 기법
· 기술 등의 수리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문화재의 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발주처
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다.

④ 문화재유형별 공사시방서 작
성 항목은 [별표5]와 같다.

⑤ (생략)

⑥ 공사시방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가. 해당 문화재수리 공정에
필요한 기법과 기술 등 시
공에 관한 사항

나.·다. (생략)

라. 해당 문화재수리에 필요
한 시험, 검사 등에 관한
사항(필요 시 견본이나 견
본시공에 관한 사항 포함)

마. ~ 사. (생략)

제8조(예정공정표 작성) ① 예정
공정표에는 해당 문화재수리공
사의 주요 공종에 투입되는 작
업량을 기입하며, 공기와 사업
진도율을 제시한다.

제10조(수량산출서 작성) ① (생

-----.

③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
서」-- 국가유산에 -----

----- 국가유산의 -----
-----.

④ 국가유산유형별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가. -- 국가유산수리 -----

나.·다. (현행과 같음)

라. -- 국가유산수리-----

마. ~ 사. (현행과 같음)

제8조(예정공정표 작성) ① ----
----- 국가유산수리
공사-----

-----.

제10조(수량산출서 작성) ① (현

략)

② 수량의 계산, 재료의 할증, 단위수량 등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문화재수리표준품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실적 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등 정부기관 준용 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적용 근거를 명시한다.

④·⑤ (생략)

제11조(설계도면 구성) ① (생략)

② 기본도면은 표지, 도면목록표, 설계개요, 가설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천장평면도(양시도), 가구구조평면도, 지붕평면도(와복도)로 구성된다. 단, 문화재 유형에 따라 도면의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⑦ 여러 공정이 복합된 문화재 수리의 경우 하나의 도면에 도시하지 말고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도하도록 한다.

⑧·⑨ (생략)

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

③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설계도면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국가유산 -----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국가유산수리-----

-----.

⑧·⑨ (현행과 같음)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u> <u>적용대상 문화재수리</u></p> <p>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u>문화재수리</u></p> <p>가. 「<u>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u>」 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u>문화재수리</u> 중 다음에 해당하는 <u>문화재수리</u></p> <p>○ 「<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u>문화재수리</u></p> <p>○ 「<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u>문화재수리</u></p> <p>나. ‘가’외의 <u>문화재수리</u>로서 발주자가 「<u>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u>」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p>	<p><u>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u> <u>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u></p> <p>1. ----- ----- ----- <u>국가유산수리</u></p> <p>가. 「<u>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u>」 제4조----- ----- <u>국가유산수리</u> 중 -- 해당하는 <u>국가유산수리</u></p> <p>--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 -- ----- ---- <u>이상의 국가유산수리</u></p> <p>--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 -- ----- <u>이상의 국가유산수리</u></p> <p>나. ----- <u>국가유산수리</u>로서 발주자가 「<u>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u>」-----</p>

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재수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
는 2등급인 문화재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재수
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15
억 원 이상의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문화재수리

나. ‘가’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종
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
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재수리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2. -----

-- 국가유산수리

가.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4조-

----- 국가유산수리
중 -- 해당하는 국가유산
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나. ----- 국가유산수리로
서 발주자가 「국가유산수
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u> <u>심사 기준</u></p>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u>」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u>문화재수리</u>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p>	<p><u>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u> <u>심사 기준</u></p> <p>제1조(목적) -----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u>」 -----</p> <p>-----</p> <p>-----</p> <p>-----</p> <p>-----</p> <p>-----</p> <p>-----</p> <p>-----</p> <p>-----</p> <p>제2조(정의) -----</p> <p>-----</p> <p>1. -----</p> <p>----- <u>국가유산수리</u> -----</p> <p>-----</p> <p>-----</p> <p>-----</p> <p>-----</p> <p>-----</p> <p>-----</p> <p>-----</p>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
은 제외한다.

2.·3. (생략)

4. “발주자”라 함은 당해 문화재
수리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문화
재수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5
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등에 관
한 사항을 알린 경우에는 「문
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5조의
하도급심사대상 문화재수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
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2. (생략)

제5조(하도급심사대상 문화재수
리) 발주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

2.·3. (현행과 같음)

4. ----- 국가유
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
-----.
----- 국가
유산수리-----
-----.

제4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 -----

----- 「국
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

-----.

② -----

----- 국가유산수리-----

-----.

1.·2. (현행과 같음)

제5조(하도급심사대상 국가유산
수리)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 (생략)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심사 항목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감리자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문화재수리의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 ~ ③ (생략)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률」 -----

-----.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수리-----

-----.

제8조(감리자등의 의견수렴) ---

----- 국가유산수리-----

--.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국가유산수리 결과-----

국가유산수리의 -----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 추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 추가</u></p> <p>1. 고 시 명 : <u>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 추가</u></p> <p>2. 고시사항 가. <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국가무형문화 재 종목과 이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종 류</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33%;">국가무형문화재 종목</th> <th style="width: 33%;">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종류</th> <th style="width: 33%;">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단청장, 불화장</td> <td>모사공</td> <td></td> </tr> </tbody> </table> <p>나. <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시·도무형문 화재 종목과 이에 해당하 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종류</u></p>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비고	단청장, 불화장	모사공		<p style="text-align: center;"><u>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추가</u></p> <p>1. ----- <u>국가유산수리기능 자 ----- 무형유산 -- -----</u></p> <p>2. ----- 가.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 호 자목에 따른 국가무형 유산 종목과 이에 해당하 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 격 종류</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33%;">국가무형유산 종목</th> <th style="width: 33%;">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th> <th style="width: 33%;">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단청장, 불화장</td> <td>모사공</td> <td></td> </tr> </tbody> </table> <p>나.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 호 다목에 따른 시·도무 형유산 종목과 이에 해당 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u></p>	국가무형유산 종목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비고	단청장, 불화장	모사공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비고											
단청장, 불화장	모사공												
국가무형유산 종목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비고											
단청장, 불화장	모사공												

시·도	시·도무형문화재 종목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비고
서울특별시	단청장	모사공	
부산광역시	불화장		
인천광역시	단청장		
대전광역시	단청장		
광주광역시	탱화장		
경기도	단청장		
경기도	불화장		
충청북도	단청장		
전라북도	단청장		
전라북도	탱화장		
경상북도	불화장		

시·도	시·도무형유산 종목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비고
서울특별시	단청장	모사공	
부산광역시	불화장		
인천광역시	단청장		
대전광역시	단청장		
광주광역시	탱화장		
경기도	단청장		
경기도	불화장		
충청북도	단청장		
전라북도	단청장		
전라북도	탱화장		
경상북도	불화장		

3. 연락처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가. (생략)

나. 전 화 : 042-481-4865 /

팩스 : 042-481-4879

다. (생략)

3. -----

--

가. (현행과 같음)

나. ----- 042-481-4871 -----

다. (현행과 같음)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u></p> <p>1. 인정대상 : <u>문화재수리기술자</u> 가 보유한 자격 분야와 관련 하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한 다음의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 략) <p>2. 인정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대상자인 <u>문화재수리 기술자가</u>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교육실적 직접 신고 ※ 신고 내용별 증빙서류 등 신고방법 및 인정절차의 세부 사항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따로 정하여 <u>문화재수리종합 정보시스템(www.chis.or.kr)</u> 을 통해 안내함. 	<p style="text-align: center;"><u>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u></p> <p>1. ----- <u>국가유산수리기술 자</u>-----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p>2. ----- ----- <u>국가유산수 리기술자가</u> ----- ----- ----- ----- <u>국가유산수리중 합정보시스템(www.chis.or.k r)</u>을 -----.</p>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u></p>		<p><u>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u></p>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u>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 <u>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u>----- ----- -----.</p>		
<p>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 ----- -----.</p>		
<p>1. “<u>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u>”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p>		<p>1. “<u>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u>”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3. “<u>문화재수리업자등</u>”이란 <u>문화재수리등을 업으로 하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전문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u></p>		<p>3. “<u>국가유산수리업자등</u>”이란 <u>국가유산수리등을 업으로 하는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u></p>		

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를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법 제56조제 2항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접수, 경력관리 및 경력증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및 임시지정문화재

나. 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영 제2조에 해당하는 것

6. “문화재수리등”이란 법 제2조제1호, 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문화

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를 말한다.

4.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5. “국가유산수리”란 -----

-----.

가. 지정유산(무형유산-----
----- 임시지정유산

나. 지정유산(임시지정유산-----

6. “국가유산수리등”이란 -----

----- 국가유산수리, -----
-----.

제3조(적용범위) ----- 국가유

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경력, 학력, 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규칙 제5조의4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

산수리 등-----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

제4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

- 1.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할 수 있다.

1의2. 제1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1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 다만, 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3. ~ 5. (생략)

6. 문화재수리등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 자격 종목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7. 문화재수리등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행정 제재사항 관련 서류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서류라 함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세부 경력내용서 및 별표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생략)

-----.

1의2.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3. ~ 5. (현행과 같음)

6. 국가유산수리등 -----

7. 국가유산수리등 -----

② -----

----- 국

가유산수리기술자등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인정)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세부적인 경력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변경신고) 규칙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에 제4조에 따른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 절차) ①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의 기재사항 오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제출한 경력등 확인서와 그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하기 위해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에게 사실의 확인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제5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인정)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제6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변경신고)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

제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 절차) ①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

②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제8조의2(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착오 및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경력인정 면접심사)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동일한 경력 인정 건에 대하여 3회 이상 면접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④ (생략)

제10조(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① 법 제13조의2 및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경력증 및 경력등 확인증명서(이하 “경력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증의 경우 : 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 신청서 및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cm× 4.5cm)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경력인정 면접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① -----

1.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장

2. 경력등 확인증명서의 경우 :
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신청서

② 경력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우편, 방문 또는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경력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 받은 경력증을 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기존에 발급 받은 경력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경력 증명서 발급) ①·② (생략)

③ 수탁기관은 경력증 발급시 규칙 별지 제6호의10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대

--

2.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② -----
-----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④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

제11조(경력 증명서 발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2조(경력 신고자료의 보관 등)

① 수탁기관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자료(인터넷 온라인 접수 자료 포함)를 백업 서버 등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경력 증명서의 보관 등)

① 수탁기관은 신청자가 수령하지 않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 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기한이 경과한 후 폐기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수탁기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반납받은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4조(경력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력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5조(경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경력 신고자료의 보관 등)

①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경력 증명서의 보관 등)

①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1. 2.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

제14조(경력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경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탁기관은 문화재수
리기술자등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력관
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 ⑥ (생략)

운영) ① ----- 국가유산수
리기술자등 -----

-----.

② ~ ⑥ (현행과 같음)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u></p>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u>문화재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u>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u>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장 <u>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u></p> <p>제2조(처리기관) 법 제14조에 따라 <u>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처리한</u></p>	<p><u>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u></p> <p>제1조(목적) -----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u>」----- ----- ----- ----- <u>국가유산수리업 등을</u> ----- ----- --- <u>국가유산수리업 등의</u> ---- ----- --.</p> <p>제2장 <u>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u></p> <p>제2조(처리기관) ----- -- <u>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u>----- ----- ----- -----</p>

다.

제3조(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문화재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업종의 문화재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1개를 폐업 또는 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 표 7의 각호의 같은 업종을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본다.

제4조(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한다)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한

--.

제3조(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
-- 국가유산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할 -----

----- 국가유산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한 -----

-----.

제4조(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 ----- 국가유산수리업 -----
-----.

-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다.

② 기술능력 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재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자본금의 적격여부 확인)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업진단서상의 진단의견과 기업진단서의 유효기간(제출일 전 30일 이내 발급)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6조(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① 영 제12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자본금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발급기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재수리협회” 또는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은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

---.

② -----
-----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
능자 -----

-----.

제5조(자본금의 적격여부 확인) -
----- 국
가유산수리업등-----

-----.

제6조(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①

----- “국가유산수리
협회” -----

4조에 따른 공제조합(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서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처리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인·양도인의 확인서를 상속인·합병법인·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1. 상속으로 인한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의 이전
2. 합병으로 인한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의 이전
3.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가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규칙 제11조 6항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생략)

제7조(용자의 제한) 발급기관은

-----국가유산
수리업-----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1. ----- 국가유산수리
업등-----
2. ----- 국가유산수리
업등-----
3. 국가유산수리업등-----
----- 국가유산수리업등-----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용자의 제한) -----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용자를 하는 경우, 문화재수리업등이 제공하는 담보물, 예치금 또는 출자금에서 용자금을 뺀 금액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확인서 발급기관의 의무 등)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문화재수리업등이 제공하는 담보물, 예치금 또는 출자금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료를 즉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생략)

제9조(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사

국가유산수리업등을 -----
----- 국가
유산수리업등이 -----

-----.

제8조(확인서 발급기관의 의무 등)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수리업등-----

-----.

3. -----

----- 국
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
산수리업-----

-----.

4. (현행과 같음)
제9조(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 ----- 국
가유산수리업등-----

무실의 적격여부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무실의 범위

1.·2. (생략)

3. 위의 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건물 등 문화재수리업등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요건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 다. (생략)

4.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의 사무실은 문화재수리업등의 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5. (생략)

6. 사무실은 다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문화재수리업등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

① -----

1.·2. (현행과 같음)

3. -----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요건-----

-----.

가. ~ 다. (현행과 같음)

4.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영위-----
-----.

5. (현행과 같음)

6.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사무실-----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영위-----

-----.

②·③ (생략)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기업진단

제10조(적용범위) ① 이 기업진단은 영 제12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생략)

제11조(정의) 기업진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점업자산”이라 함은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생략)
6.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문화재수리업등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희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제15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 ~ ③ (생략)

④ 진단자는 별지 제3호서식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 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기업진단

제10조(적용범위) ① -----
----- 국가유산수리업등-----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국가유산수리업등 -----
-----.

5. (현행과 같음)

6. ----- 국가유산수리업등-----

-----.

제15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5. 문화재수리업등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⑦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재고자산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2. (생략)

⑧ ~ ⑪ (생략)

제21조(실질자본금의 평가 등) ① (생략)

② 겸업자본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2. 문화재수리업등과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을 구분계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계리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3. 문화재수리업등과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을 구분계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

5. 국가유산수리업등-----

--.

⑦ -----
-----.

1. ----- 국가유산수리업-----

-----.

2. (현행과 같음)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21조(실질자본금의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수리업등과 국가유산수리업등 -----

----- 국
가유산수리업등 이외의 사업
과 -----.

3. 국가유산수리업등과 국가유산수리업등 -----

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 목 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가. 문화재수리업등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나. 문화재수리업등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다.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제4장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

제24조(처리기관) 법 제14조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제출한 변경신고서는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시·도지사가 처리한다.

제25조(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 규칙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류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

-----.

-----.

가. 국가유산수리업등-----

나. 국가유산수리업등-----

다. 국가유산수리업등 -----

제4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변경신고

제24조(처리기관) -----
--- 국가유산수리업자 -----

-----.

제25조(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 -

--.

- 1. ----- 국가유산수리업등-----
----- 국가유산수리업등-----

게 교부하여야 한다.

2. 3. (생략)

4. 위 2호의 경우 변경전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는 변경신고에 필요
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
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2일 이내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6조(기존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처리) ① 법 부칙 제4조에
의거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 따
라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로 분
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
측·설계업자 또는 실측·감리
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
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
리업자로 본다.

② 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또는 실측·감
리업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른 등
록요건에 적합하도록 규칙 제6
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
다.

-----.

2. 3. (현행과 같음)

4. -----

-- 국가유산수리업등-----

-----.

제26조(기존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처리) <삭 제>

<삭 제>

③ 시·도지사는 2항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는 규칙 제8조 및 본 지침 제25조의 의거 처리한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수첩을 재발급한다.

제5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합병, 상속, 폐업신고

제27조(처리기관) 법 제14조제4항, 제17조, 제20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제출한 양도, 합병, 상속, 폐업신고서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처리한다.

제28조(처리방법) ①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시·도지사는 양수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삭 제>

제5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 합병, 상속, 폐업신고

제27조(처리기관) -----

----- 국가유산수리업자 -----

제28조(처리방법) ①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

② -----
----- 국가유산수리업-----.

⑤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영
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
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
서,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문
화재수리업자가 양도신고, 합병
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
와 같이 처리한다.

1.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가.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 확인 및 청
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를 결
정한 후 처리한다.

나.·다. (생략)

2. 문화재수리업등의 합병

제29조(폐업신고의 처리방법) ①
(생략)

②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영
업정지, 등록취소 등이 객관적
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
서,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문
화재수리업체가 문화재수리업
등록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문화재
수리업자등이 “1호”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

⑤ -----

----- 국
가유산수리업자-----

-----.

1. 국가유산수리업등-----

가. 국가유산수리업등 -----

-----.

나.·다.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수리업등-----

제29조(폐업신고의 처리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
가유산수리업체가 국가유산수
리업등록-----
-----.

1. (현행과 같음)

2. ----- 국가유
산수리업자등-----

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 3.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업자들이 “1호”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 기간 중에 폐업신고 불가

제6장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등

제3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방법 등) 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수리 착수 전에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자에게 현장배치확인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2부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단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발주자에

--.

- 3. ----- 국가유산수리업자등 -----

제6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등

제3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방법 등) --

--.

- 1.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현장-----

게 확인 받은 현장배치확인표의 사본을 착공서류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현장배치확인표의 확인란에 담당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현장배치확인표 1부를 문화재수리술자에게 교부한다.

3.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를 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확인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착수와 동시에 수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4.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항상 현장배치확인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 국가유산수리의 -----

----- 국가유산수리술자 -----
-----.

3.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

4.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수리와 -----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문화재청 무형문화재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u>	<u>문화재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u>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재청 소관 <u>무형문화재</u> 관련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 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무형유산</u> ----- ----- ----- ----- -----.</p>
<p>제2조(위임사업) 문화재청 소관 보조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무형문화재</u> 전승자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 <u>무형문화재</u>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기타 <u>무형문화재</u>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업 	<p>제2조(위임사업)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무형유산</u> ----- ----- 2. --- <u>무형유산</u> ----- ----- 3. --- <u>무형유산</u> ----- -----
<p>제3조(위임사무) 문화재청 보조금사업 중 무형문화재와 소관 이외의 <u>무형문화재</u>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p>	<p>제3조(위임사무) ----- ----- --- <u>무형유산</u> <u>관련</u> ----- ----- ----- -----</p>

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국립무
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

1. ~ 7.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u></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p> <p>1. 문화재 명칭 : 2. 문화재 위치 : 3. 문화재수리 설계 내용 및 기간 ○ 설계 내용 : ○ 설계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5. 대금의 지급 가. 선금금 :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일금 원정(₩) 나. 가성금 : (1) ()월 1회 (2) 용역수행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다. 과업내용 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 혹은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대금을 조정하고 경하여진 지급일에 따라 지급 6. 계약이행보증금 : 일금 원정(₩) 7. 지체상금율 :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8.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 9. 기타 특약사항 : 발주자와 수급인은 물임의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물임서류 : 1.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 일반조건 1부 2.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특약 시) 붙.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50%;">발주자</th> <th style="width: 50%;">수급인</th> </tr> <tr> <td>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td> <td>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td> </tr> <tr> <td>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td> <td>사업자등록번호:</td> </tr> <tr> <td>주 소 :</td> <td>주 소 :</td> </tr> <tr> <td>전화 / Fax :</td> <td>전화 / Fax :</td> </tr> </table> </p></div>	발주자	수급인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주 소 :	전화 / Fax :	전화 / Fax :	<p style="text-align: center;"><u>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u></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p> <p>1. 국가유산 명칭 : 2. 국가유산 위치 : 3. 국가유산수리 설계 내용 및 기간 ○ 설계 내용 : ○ 설계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5. 대금의 지급 가. 선금금 :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일금 원정(₩) 나. 가성금 : (1) ()월 1회 (2) 용역수행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다. 과업내용 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 혹은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대금을 조정하고 경하여진 지급일에 따라 지급 6. 계약이행보증금 : 일금 원정(₩) 7. 지체상금율 :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8.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 9. 기타 특약사항 : 발주자와 수급인은 물임의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물임서류 : 1.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계약 일반조건 1부 2.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특약 시) 붙.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50%;">발주자</th> <th style="width: 50%;">수급인</th> </tr> <tr> <td>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td> <td>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td> </tr> <tr> <td>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td> <td>사업자등록번호:</td> </tr> <tr> <td>주 소 :</td> <td>주 소 :</td> </tr> <tr> <td>전화 / Fax :</td> <td>전화 / Fax :</td> </tr> </table> </p></div>	발주자	수급인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주 소 :	전화 / Fax :	전화 / Fax :
발주자	수급인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주 소 :																				
전화 / Fax :	전화 / Fax :																				
발주자	수급인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주 소 :																				
전화 / Fax :	전화 / Fax :																				
<p style="text-align: center;"><u>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 일반조건</u></p> <p>제1조(총칙) 이 계약은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u>문화재실측설계업자</u>(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u>문화재수리 설계업무</u>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p>	<p style="text-align: center;"><u>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 일반조건</u></p> <p>제1조(총칙) ----- --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u>」----- ----- <u>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u>----- ----- <u>국가유산수리</u> -----.</p> <p>제2조(정의) -----</p>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수리”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재수리 설계”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유지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자기책임 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재수리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란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고증조사 관련 자료,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사진첩 등의 서류를 말한다.

4. (생략)

5. “문화재실측설계업”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6.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7. (생략)

제3조(법령의 준수) 발주자와 수급인은 문화재수리의 시행 및

-----.

1. “국가유산수리”-----.

2. “국가유산수리 설계”란 국가유산-----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3.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수리와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이란 -

6.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

7. (현행과 같음)

제3조(법령의 준수) -----
----- 국가유산수리의 -----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서,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 일반조건,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 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생략)

제5조(문화재수리 설계 내용 및 기간) ①·② (생략)

제6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문화재수리 설계업무의 범위”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② (생략)

제7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는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문화재수리 설계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설계대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

제4조(계약문서) ① -----
----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계약서--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계약 일반조건-----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계약 특수조건---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국가유산수리 설계 내용 및 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계약의 범위 등) ① -----
-----국가유산수리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② -----
----- 국가유산수리 -----
-----.

③ ----- 국가유산수리 -----

③ (생략)

제11조(착수보고) ①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설계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1. 착수신고서 |
| 2. 문화재수리 설계 예정공정표 |
| 3. 제작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참여기술자 명부, 보안각서 |
| 4.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

② · ③ (생략)

제12조(용역기간) ① 문화재수리 설계 착수일과 완료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설계 착수일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현장조사 일자를 착수일로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용역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4조(건축재료의 선정 등)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문화재수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축재료의 품명 및 규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설계도서의 작성·제출) ①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착수보고) ① -----
----- 국가유산수리 -----

-----.

- | |
|--------------------------------------|
| 1. 착수신고서 |
| 2. 국가유산수리 설계 예정공정표 |
| 3. 제작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참여기술자 명부, 보안각서 |
| 4.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용역기간) ① 국가유산수리 -----
-----.

② ----- 국가유산수리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건축재료의 선정 등) -----
----- 국가유산수리 -----

-----.

제15조(설계도서의 작성·제출)

수급인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② ~ ④ (생략)

제17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①·② (생략)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문화재수리 설계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0조(발주자의 계약해제·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문화재수리 설계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기일 내에 문화재수리 설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

① -----
-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조사·확인하고 국가유산수리 -----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발주자의 계약해제·해지)

① -----
----- 해제·해지-----.

1. ~ 3. (현행과 같음)

4. -----
----- 국가유산수리 -----

5. -----
----- 국가유산수리 -----

6. -----

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문화재수리 설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생략)

② ~ ⑤ (생략)

제21조(수급인의 계약해제·해지)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생략)

2. 발주자가 계약 당시 제시한 문화재수리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수급인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3.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22조(손해배상) ① (생략)

②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설계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생략)

제23조(수급인의 면책사유) 수급

----- 국가유산수리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수급인의 계약해제·해지)

① -----

해제·해지-----.

1. (현행과 같음)

2. -----
국가유산수리 -----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수리 -----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수급인의 면책사유) -----

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발주자가 임의로 문화재수리 설계업무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설계도서가 완료된 후 문화재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등이 개·폐되어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 및 문서가 못쓰게 된 경우

3. (생략)

제24조(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발주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수급인은 문화재수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재수리 설계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설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설계업무 중단 시의 대가 지불)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문화재수리 설계업무의 전

-----.

1. ----- 국가유산수리 -----

2. ----- 국가유산관계법령 -----

3. (현행과 같음)

제24조(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

----- 국가유산수리 -----
-----.

② ----- 국가유산수리 -----

-----.

제25조(설계업무 중단 시의 대가 지불) ① -----
--- 국가유산수리 -----

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문화재수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 한다.

③ (생략)

제28조(심의 및 자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제외한 문화재수리 설계 시에는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

② -----
국가유산수리 -----

----- 정산·환불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심의 및 자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산수리를 제외한 국가유산수리 -----

-----.

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를 도급받는 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 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문화재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설계도서”라 함은 문화재수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생략)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문화재수리 도급계약서, 문화재수리 도급계약 일반조건, 문화재수리 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

-----.

3. -----
국가유산수리-----
-----.

4. -----
-- 국가유산수리-----
-----.

5. -----
-- 국가유산수리-----
-----.

6. ----- 국가유산수리시방서-----

-----.

7. -----

규격·수량·단위 -----
-----.

8. (현행과 같음)

제3조(계약문서) ① -----
국가유산수리 도급계약서,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계약특수조건-----

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생략)

제4조(계약보증금) ① 수급인은 문화재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 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발행 보증서

2. ~ 4. (생략)

④ (생략)

제6조(연대보증인의 자격)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계약보증금) ① -----
국가유산수리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 국가유산수리협회 ----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연대보증인의 자격) ① ----

-----.

1. (현행과 같음)

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문화재수리 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수급인은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발주자가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문화재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관리, 기타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착수신고) ① 수급인은 계

----- 국가유산수리 수행-----

-----.

제8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
----- 국가유산수리의 착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의 종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② -----

-----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수리의 -----
-----.

제9조(착수신고) ① -----

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배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지정서
2. 문화재수리 예정공정표
3. 문화재수리비 산출내역서(단,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생략)

②·③ (생략)

제10조(수리기간) ① 문화재수리 착수일과 완료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착수일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현장인수일자를 착수일로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수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완료일은 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완성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완료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완

----- 국가유산수리-----

1. 국가유산수리 등-----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2. 국가유산수리 -----

3. 국가유산수리비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리기간) ① 국가유산수리 -----

② ----- 국가유산수리 -----

③ ----- 국가유산수리-----

료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자재의 검사등) ① 문화재수리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발주자가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사용 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④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발주자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문화재수리나 완료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문화재수리는 발주자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문화재수리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자재의 검사등) ① 국가유산수리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유산수리

⑤ 국가유산수리나

국가유산수리는

⑥ 국가유산수리

제13조(지급자재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문화재수리 예정공정표에 따른 문화재수리 일절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지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문화재수리 현장으로 한다.

②·③ (생략)

④ 수급인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문화재수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자재 등의 지급지연으로 문화재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수급인과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3조(지급자재와 대여품) ① --

----- 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 국가유산수리
일절-----

---- 국가유산수리 현장-----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국가유
산수리-----

-----.

⑤ ----- 국가
유산수리-----

-----.

⑥ (현행과 같음)

⑦ 수급인은 문화재수리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은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생략)

②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근로자의 보호)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및 고용보험등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응급조치) ① (생략)

② 발주자는 재해방지 기타 문

⑦ ----- 국가유산수리 -----

-----.

제14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산수리 -----

-----.

제15조(근로자의 보호) ① -----
----- 국가유산수리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응급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문화재수리가 발주자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문화재수리 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발주자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문화재수리 사업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문화재수리의 단가는

-----.

② -----
----- 국가유산수리 -----

-----.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 국가유산수리 현장 -----

----- 국가유산수리에 -----

-----.

② -----
-- 국가유산수리 -----

-----.

1. ----- 국가유산수리 -----

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문화재수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제20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문화재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제23조(기성부분금) ① (생략)

② 기성부분은 제2조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진척율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④ (생략)

제24조(부분사용) ① 발주자는 문화재수리 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동의를 얻어 문화재수리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국가유산수리 -----

-----.

② -----

----- 국가유산수리 -----
-----.

제23조(기성부분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수리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부분사용) ① -----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 인도전 -----

----- 국가유산수리 목적물의 전부 -----
-----.

수리 현장을 정리하고 문화재수리 대금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문화재수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폐기물의 처리 등) 수급인은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완료기한 내에 문화재수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을

산수리 현장----- 국가유산수리 대금-----
-----.

② -----

----- 국가유산수리 -----
-----.

③ ----- 국가유산수리 -----

-----.

제27조(폐기물의 처리 등) -----
-- 국가유산수리 -----

-----.

제28조(지체상금) ① -----
----- 국가유산수리 -----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6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지급되는 문화재수리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29조(하자담보) ① 수급인은 문화재수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 2이상 100분의 1이하를 완료검사 후 그 문화재수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완료검사를 끝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해당 문화재수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③ -----

국가유산수리 -----

제29조(하자담보) ① ----- 국가유산수리의 하자보수-----

----- 국가유산수리의 대가-----

② -----

-----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수리 -----

③ (현행과 같음)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문화재수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기일 내에 문화재수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문화재수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생략)

② (생략)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수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문화재수리용 시설·장비 등을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생략)

-----.

1. -----

----- 국가유산수리 -----

2. -----

----- 국가유산수리 -----

3. -----

----- 국가유산수리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수리
용 -----
-----.

2. (현행과 같음)

제33조(수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된 때
2.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문화재수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수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적정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생략)

제34조(계약해제시의 처리) 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문화재수리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5조(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발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제33조(수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

1. 국가유산수리 -----

2. -----
----- 국가유산수리-----

3. -----

----- 국가유산수리-----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계약해제시의 처리) ① --

----- 국가유산수리 -----
-----.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

은 문화재수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8조(법령의 준수) 발주자와 수급인은 이 문화재수리의 시행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수리-----

-----.

제38조(법령의 준수) -----
----- 국가유산수리의 -----
----- 「국
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제1조(목적) ----- 「국가유	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의3 -----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	-----	-----	-----
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	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	-----	-----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같다.				
1. "전통재료"란 「문화재보호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	1.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화재(무형문화재, 동물[그 서식	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	-----	-----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	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	-----	-----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형상은	제외한다)의 제작·건축 또는	-----	-----	-----
보수·수리 과정에서 정당하게	기여한 재료로서 그 종류는 별	-----	-----	-----
표1과 같다.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문화재수리업자등"이란 「문	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5.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	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
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	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	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		

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법 제56조제2항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6조(실태조사 방법) ① (생략)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분석하는 등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조(실태조사 내용) ① (생략)

② 수탁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규격별 현황
2.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별 산지

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법 제56조제2항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6조(실태조사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수리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국가유산수리-----

2. ----- 국가유산수리-----

· 제작방법 등 현황

3.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재
료별 예상 수요량

제10조(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①
수탁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 실태조
사 결과를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
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필요한 전통재료를 원활하
게 공급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
리업자등에게 전통재료 생산자
·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2조(수급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문화재수리종합정
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3. 국가유산수리

제10조(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①

----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
템-----.

② ----- 국가유산수리업
자등 -----
----- 국가유산
수리업자등에게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수급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가유산수리종합정
보시스템-----.